

#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공 주(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강희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최유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발 간 사

서울시는 1995년 민선1기 출범과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앞서 자체적으로 여성기금을 조성한 선례이자, 다른 지방정부들에 여성기금 설치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2011년에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통한 성평등 촉진”을 목표로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곧이어 여성발전기금의 명칭도 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 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역사와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인식, 그리고 제도 변화 속에서 기금의 구체적 위상과 기금 사업 운영의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서울시 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포함하여 지난 20여 년간 민간의 자율적 사업 기획과 수행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으나, 기금사업 참여 주체와 주제의 다각화, 공모 이외의 다양한 사업 수행 방식 등 중장기적으로 재고해야 할 사안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기금사업 운영의 경험을 공유해 주신 활동가 분들, 성평등 의제 확산 방안과 기금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자문과 조언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리며, 연구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연구가 성평등기금이 시민의 지지와 참여에 기반하여 서울시 성평등 수준 제고에 기여하는 주요 사업으로 성장해 가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9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 Contents

## I 서론 \_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7
3. 연구 추진 체계 .....	9
4.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사업 검토 .....	10
1) 기금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 정책 수요 .....	12
2) 기금의 방향성과 성격 .....	14
3) “여성” 분야 지방보조금 사업 검토 .....	16

## II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역사와 현황 \_ 27

1. 성평등기금의 역사 .....	29
1) 기금명칭의 변화: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성평등의 의미 .....	30
2) 서울시 성평등기금 조성의 역사 .....	37
2.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 현황 .....	42
1) 1998년~2011년까지 기금 사업 운영 현황 .....	43
2) 2012년~2018년까지 기금 사업 운영 현황 .....	49
3)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의 변화: 2015~2018년 사업 주제 분석 .....	52
4) 25개 자치구의 관련 기금 현황 .....	59

- 3. 성평등기금 사업 수행 체계 .....66
  - 1)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 체계 .....66
  - 2)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총괄 담당자의 내부평가 .....69
- 4. 요약 및 시사점 .....74

## Ⅲ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운영평가 및 정책 수요 분석 \_ 77

- 1. 조사 개요 .....79
  - 1) 조사 참여자의 특성 .....80
  - 2) 주요 조사 내용 .....83
- 2.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운영평가 .....84
  - 1) 단체 및 활동가 지원을 통한 성평등 가치 구현 .....84
  - 2) 사업 참여를 통한 성평등 의식 강화와 활동의 확장 .....93
  - 3) 성평등 의식의 사회적 확산: 참여와 제안의 활성화 .....96
  - 4)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특성 .....98
- 3.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103
  - 1) 행정 간소화와 예산 자율성 강화 .....103
  - 2) 거버넌스: 동등한 협력 관계 유지 .....114
  - 3) 질적 평가 강화와 성과의 대중적 확산 .....117
  - 4) 기금 운영의 중장기 계획과 특화사업 지원 .....121
- 4. 요약 및 시사점 .....128

**IV**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 개선방안 \_ 133

- 1. 기본 운영 방향 .....135
  - 1)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목표 설정 .....137
  - 2) 기획공모 분야 신설 및 중장기 특화사업 지정 .....138
  - 3) 심사기준 보완 .....142
- 2. 행정업무처리 과정 개선 및 예산 자율성 강화 .....146
  - 1) 행정업무처리 과정 개선 .....147
  - 2) 예산편성 자율성 강화 .....148
- 3. 단체 역량강화 지원 개선방안 .....150
  - 1) 기금 사업 실무책임자 인건비 지급 .....150
  - 2) 단체별 맞춤형 지원과 연결망 강화 .....153
  - 3) 기금 사업 홍보 협력 강화 .....155
- 4. 평가 개선방안 및 우수사례 확산 .....156
  - 1) 평가 개선방안 .....156
  - 2) 우수사례 확산 .....157

참고문헌 \_ 159

Abstract \_ 164

## 표 목차

표 I-1	연구 방법 및 내용	8
표 I-2	연구 추진 체계	9
표 I-3	기금 성과분석 지표	11
표 I-4	지방보조금의 분류	16
표 I-5	민간보조의 분류	17
표 I-6	2019년 서울시 지방보조금사업 - 여성가족정책실 운영 사업	19
표 I-7	A자치구 지방보조금사업 - 여성 관련 부서 사업 (2018년)	23
표 II-1	조례 개정 등에 따른 기금의 용도 정의 변화	36
표 II-2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1단계 조성 현황 (1996~1999년)	39
표 II-3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2단계 조성 현황 (2000~2007년)	40
표 II-4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 (2008~2012년)	40
표 II-5	서울시 성평등기금조성 현황 (2013~2018년)	41
표 II-6	1998~2019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공모방식 및 평가 기관 현황	43
표 II-7	1998~2002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 현황	43
표 II-8	2003~2006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 현황	45
표 II-9	2007~2011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 현황	46
표 II-10	2002~2011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공모 분야별 주제	47
표 II-11	2012~2018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및 성평등기금 사업 지원 현황	50
표 II-12	2012~2019년 기금 사업 공모 분야별 주제	51
표 II-13	2015~2018년 기금 사업 세부 주제별 지원 내역	53
표 II-14	2015~2018년 기금 사업 세부 주제별 지원 사업 참여집단	55
표 II-15	2015~2018년 기금 사업 주제별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경험	56
표 II-16	2015~2018년 기금 사업 지속 참여 현황	58
표 II-17	25개 자치구의 성평등기금 관련 조례 제정 현황	59
표 II-18	25개 자치구의 성평등기금 관련 주요 내용 및 특성	61
표 II-19	서울시 자치구 (양)성평등기금 조성 규모	63
표 II-20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기금 관련 주요 조항 및 내용	66
표 II-21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및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 절차	68



【 표 II-22 】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평가기준	69
【 표 II-23 】	2015~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총괄 담당자의 내부평가	70
【 표 II-24 】	2018년 대비 2019년의 사업 지원 및 평가 체계 변화	74
【 표 II-25 】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예산 지출 개선의 과제 (2018년)	75
【 표 III-1 】	조사개요	80
【 표 III-2 】	기금 사업 담당자 면접 조사 참여자 특성	82
【 표 III-3 】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여자 특성	82
【 표 III-4 】	2019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사업 계획	102
【 표 III-5 】	2019년 예산편성 항목별 지출한도액	106
【 표 III-6 】	예산편성 및 지출 불가 항목	107
【 표 III-7 】	2019년 강사료 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111
【 표 III-8 】	평가지표별 배점 비교 (2016~2018년)	118
【 표 III-9 】	<사례 B-1>이 제안한 사업 평가지표	119
【 표 IV-1 】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변경안 (1)	140
【 표 IV-2 】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변경안 (2)	141
【 표 IV-3 】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변경안 (3)	142
【 표 IV-4 】	2019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심사 등급 및 배점 항목	144
【 표 IV-5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151
【 표 IV-6 】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152
【 표 IV-7 】	서울시의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비 구성	153

## 그림 목차

■ 그림 IV-1 ■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의 3단계 목표 (가안) .....	138
-------------	--------------------------------	-----

## 연구요약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의 전환한 기금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
  - 서울시는 1995년 민선1기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여성발전기금 60억을 조성함
  - 1996년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1998년 1차 기금 지원 사업 집행
  - 기금 지원 사업이 20여 년간 지속되고, 2016년에 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의 변화 있었음에도 매년 기금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있어 왔으나, 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이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성과를 확인하고, 운영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 있음

### □ 연구 방법 및 내용

- 연구방법: ① 기존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기금의 역사와 사업 운영현황을 분석, ② 기금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 조사를 통해 기금 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검토, ③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기금 운영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 선행연구 및 “여성” 분야 지방보조금 사업 검토
  - 타지방정부의 기금 관련 연구에서 ① 기금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 정책 수요: 기금 사업의 차별성 부족(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사업 선정), 사업의 다각화, 단체 교육과 컨설팅, 모니터링, 전문 평가체계 구축 등 제안
  - ② 기금의 방향과 성격: 기금의 목적을 분명히 할 것, 새로운 사업 콘텐츠

개발,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원 방안,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 등의 필요성 강조하면서 서울시의 사업추진이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평가

- “여성” 분야 지방보조금 사업 검토: 정부 주도의 사업 구성, 혹은 구체적인 운영에서 민간의 전문성이 행정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거나 확장될 가능성 제한적임. 또한 자치구의 여성관련 부서의 보조금 사업은 사업의 다수가 보육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격은 성평등기금 사업과는 차이가 있음

## □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역사와 현황

### ○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역사

【 표 1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양)성평등기금의 역사

중앙정부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9조에 의거해 기금 설치</li> <li>- 1998년 지원 사업 첫 집행</li> <li>- 2015년 7월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 개정</li> <li>- 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으로 개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년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해 중앙정부보다 앞서 기금 설치하고,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li> <li>- 1998년 지원 사업 첫 집행</li> <li>- 1999년 7월에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하며, 제4장에 기금 설치 명기</li> <li>- 2012년 7월에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li> <li>- 2016년에 “성평등기금”으로 개칭</li> </ul>

- 기금의 목적: ① 설치 당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복지사업 지원”, ② 「여성발전기본조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③ 「성평등 기본 조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변화
- 초기부터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해 논의
- 기금조성: 1999년까지 100억 원, 2007년까지 200억 원 조성해 현재 240억

원대 유지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규모는 점진적 증가(2018년 기준 9억5천만 원, 사업당 평균 1천9백만 원)

- 기금 존치 기한 설정: 2012년에 처음 설정, 2022년까지 한차례 연장됨

○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운영 현황

- 공모방식 및 평가 기관: 사업 수행기관을 서울시에서 전문 평가기관으로 전환하고, 공모방식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변경

【 표 2 】 1998~2019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공모방식 및 평가 기관 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가 기관	서울시 직접수행						숙대아시아 여성연구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모 방식	지정공모			지정공모 + 자유공모									지정공모		지정+자유							

- 1998년~2011년까지 기금 사업 운영: 1998년~2007년: 연평균 64.6개 사업(평균 약 1천만 원) 지원 → 2011년: 50개 사업(평균 1천5백만 원) 지원
- 지정공모 주제는 초기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변화: 매년 새로운 주제(성매매피해, 여성 정치세력화 등) 포함
- 2012년~2018년까지 기금 사업 운영: 2012년~2017년: 연평균 61.7개 사업(평균 약 1천5백만 원) 지원 → 2018년: 38개 사업(평균 1천9백만 원) 지원
-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화: “여성발전”의 패러다임을 “성평등” 관점에서의 전환을 의미하며, 사업의 대상과 주제 다양화(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난민 등 포괄, 일본군성노예제 주제 선정 등 포괄)
- 25개 자치구의 관련 기금 현황: 24개 자치구 조례에 (양)성평등기금 조성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실현, 복지사업 등 기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기금 지원 사업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은 구도 있음

## □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운영평가 및 정책 수요 분석

-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성과: ① 단체와 활동가 지원을 통한 성평등 가치 구현에 이바지, ② 사업에 참여한 단체회원 및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 강화와 활동영역 확장에 도움, ③ 성평등 의식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음
-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강점: ① 사업 진행과정에서 민과 관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원활한 소통 가능, ② 참여하는 단체의 기획과 고유성을 지키며 사업 진행 가능(새롭고 선도적인 성평등 의제를 발굴), ③ 소규모 단체의 접근성 보장, ④ 적절한 지원 규모 등을 들 수 있음
-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① 사업의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계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② 예산의 자율성을 강화(내부 인건비 및 강사료 규정 완화), ③ 민과 관이 동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저작권 서울시에 귀속 문제 개선), ④ 사업성과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강화하고, 대중적으로 확산하려는 노력 필요, ⑤ 기금 운영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목표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차별성을 강화 등을 들고 있음

## □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 개선방안

- 기본 운영 방향: 성평등기금 사업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어 옴. 성평등 의제를 중심으로 민과 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임
  - 서울시 전역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선도적인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 주체의 측면에서 성 불평등의 교차성 문제를 고려하고,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유도
  -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목표 설정: 거버넌스의 의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해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여 유기적

으로 사업 운영

- 서울시의 성평등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조사를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경제활동, 시간사용, 가사분담 등 주요 영역에서 성평등은 어느 정도나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목표 수립. (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성평등정책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
- [그림 1]은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의 3단계 목표를 ‘가안’으로 제시한 것임. 1단계는 여성발전기금, 2단계는 현 단계이며, 3단계는 향후 지향해야할 단계로 설정함

▮ 그림 1 ▮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의 3단계 목표 (가안)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의 성평등 요소 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기반 구축	서울 곳곳 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주요 주체 성비 (여성 비율 50% 이상)	주요 참여 주체의 성인지 감수성	주요 참여주체의 거버넌스 확장성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연계성	주체의 성평등성 (주요 성평등정책 연계)	성평등정책 선도성
사업 효과의 구체성 및 성장가능성	사업 효과의 일반성 (시민 전반 대상)	성평등 이슈의 교차성

- 단계별 목표에 맞춰 지정공모 주제를 제시하고, 자유공모 주제는 참여 단체가 새로운 의제·활동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완전히 열린 형태로 제시. 또한 단년도 사업은 공모 과정을 현행보다 앞당겨, 사업기간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바람직함
- 기획 공모분야 신설: 다양하고 새로운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서울시의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가 협의해 매3년마다 신설(및 재지정)을 검토
- [표 3]과 같이 세 가지 기획공모 분야를 제안함

【 표 3 】 기획공모 분야 제안

공모명	목적	신청자격
청년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청년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성장을 도모</li> <li>- 새로운 운동방식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혹은 신청자 본인이 만39세 이하이며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li> <li>- 성평등 의제를 중심으로 3개월 이상 활동한 3명 이상의 모임 (*조례개정 필요)1)</li> <li>- 등록된 법인(단체) 등은 지원 불가</li> </ul>
풀뿌리 연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 지원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풀뿌리 단체나, 단체가 위치한 자치구에서 (양)성평등 기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풀뿌리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 사업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의 서로 다른 자치구에 위치한 2개 이상의 풀뿌리 단체 연단체</li> <li>- 한 단체만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면 신청가능</li> </ul>
함께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의제를 공유하는 역사가 오래된 비영리단체와 신규 모임이나 단체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소재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구성</li> <li>- 한 단체만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면 신청가능</li> </ul>

- 특화사업 지정을 통한 ‘중장기 사업’ 추진: 기금 사업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는 위원회의 재검토를 통해 ‘특화사업’으로 지정하여 최대 3년, 연간 5천만 원까지 집중 지원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
- 기금 지원 사업 내용을 견인하고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심사기준 보완: ① 성인지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 선정, ② 사업 선정과 평가 사이의 유기성(환류) 강화, ③ 단계별 평가방식 도입 등을 보완

○ 행정처리 업무 개선 및 예산 자율성 강화

- ‘서울시의 위드우리(withWoori) 보조금관리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 행정처리 업무의 부담 경감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 ‘성평등기금 용도’ 중 제2항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의 제30조의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 (1안)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혹은 → (2안)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시 거주자 1인 이상을 대표로 하는 3인 이상의 모임’ 등으로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가능하다면, 회계업무처리를 세무회계법인 등에서 대리해 처리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고려. 서울시가 세무회계법인(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회계기업이나 한국여성세무사회 서울지부 등)과 협약을 맺어 기금 사업의 회계업무를 해당법인에 맡기고, 기금 사업 참여단체는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
- 성평등 증진을 위한 새로운 의제와 활동방식이 가능하도록 예산 자율성 강화할 필요 있음. 주요 항목별 예산인 연구개발비나 홍보비 등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제한하게 되면, 기금 사업관련 활동에서 참여 단체의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확실적인 사업들로 채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다만, 심사과정과 예산조정에서의 협의과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 있음)

○ 단체 역량강화 지원 개선

- 실무책임자 인건비 지급 고려: 현재 기금 사업은 대부분 기존의 활동가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되고 있음. 또한 인건비 지급은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표방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2019)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기금의 “예산편성 시에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9년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지원 사업’과 ‘세대균형 프로젝트’ 등 여러 민관협력 사업에서도 활동비나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단체별 맞춤형 지원과 연결망 강화: ① 젠더워크숍은 기초와 심화로 나누어 진행. 기초 강좌에는 신규 참여단체나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서비스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사업의 성인지성을 견인, ② ‘공모분야별 모임’ 강화하여 멘토링 방식으로 단체 간 협력 도모, ③ 실무역량강화교육에서는 세무회계교육과 홍보교육 강화, ④ 사전 자문 내실화를 통해 사업의 성인지성 견인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의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어야 함)

- 기금 사업 홍보 협력 강화: 서울시의 뉴스레터인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나 재단의 뉴스레터인 ‘젠더레터’ 등에 기금 사업이나 행사를 알리는 내용이나 배너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 평가지표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 ‘단체간 협업’ 항목 추가하여, 기금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연결망과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참여단체 발굴 및 기금 사업의 확장성 강화
- 사업의 내용과 사회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평가를 도입: 다년간 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기금 사업에 참여한 것이 단체와 담당자에게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 냈는지 살펴보고 사회적인 영향력 측정
- 주요 성과나 우수사례에 대해 대중적으로 확산하여, 성평등기금에 대한 관심과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노력 필요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거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짧은 영상물로 구성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홍보, 「서울여성백서」에 포함)

# I

##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추진 체계
4.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사업 검토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95년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95년 여성계 10대 뉴스' 중 하나로 서울시의 여성발전기금 60억 조성을 선정하였다. 당시 서울시가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기금으로 60억을 책정한 것은 지방정부가 여성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고,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sup>2)</sup>

서울시는 1995년 민선1기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였다.<sup>3)</sup> 1996년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였고, 2년 후인 1998년에 1차 사업을 집행하였다.

이후 곧바로 서울시 기금 전반에 대한 검토(서울연구원, 1999) 안에서 여성발

---

2) 한국여성민우회는 간행물 “함께 가는 여성”(1996년 1월호)에서 당시 10대 뉴스로 “1.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개최 및 한국여성운동의 조직적 참여, 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3. 할당제 도입-정치할당제와 고용할당제, 4. 남녀고용평등의 달, 5. 근로자 파견법 입법을 유보시킴, 6. 보육 및 학교급식 예산 확보, 7. 성희롱 항소심 패소, 8.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60억 책정, 9.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참여확대 10대 과제 선정, 10.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민간위로금으로 해결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무산시킴”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의 위상과 그에 대한 세간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3)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1996년 5월 20일 서울시 조례 제3304호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조-9조)를 공포하고 기금 관련 전반을 규정하였다.

전기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그 주요 내용은 여성발전기금이 적립금인 동시에 한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1개 사업 당 지원액이 평균 570만 원으로 많은 여성단체 및 사업에 걸쳐 있어 지원 사업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기금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연도별 중점 지원 사업을 설정하는 방안과 지원 사업내용을 선별하여 한도 내에서 대규모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객관적인 선정 기준의 마련, 동일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다른 기금 등에서 중복 지원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관련부서와의 상호 협조 필요성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기금 사업 운영이 궤도에 오르기 전 단계에서 일반기금 사업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외부인의 평가라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서울시를 선례로 타 지방정부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던<sup>4)</sup> 당시 현실에 비추어 다소 성급한 진단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애초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되었던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은 1999년 7월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시행과 함께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4장을 통해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함”을 명기하게 된다. 또한 2011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되고, 2016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개칭되었으나, 이것이 기금의 성격이나 운영에서 어떠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하지 못한 채 기금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sup>5)</sup>

더욱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출발하여 2019년 현재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기금은 2003년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평가이후 폐지논의가 일기 시작하였으며, 지방정부 중 경상남도(2015년), 성남시(2018년), 충

4) 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1996.11.16.)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오정례 의원의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여성발전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관련 발언

5) 반면 서울시보다 뒤늦게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해 온 경기도(2009년과 2015년), 인천(2017년), 부산(2016년) 등의 지방정부에서는 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염두에 둔 연구를 수행하고, 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에 기반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시(2017년)에서는 이미 기금이 폐지된 바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 폐지 논의와 일부 지방정부의 기금 폐지는 서울시 성평등기금에 대한 발전적 논의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외부적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기금 사업이 진행된 지난 20여 년 동안, 기금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발전방안 등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따라서 기금 사업 참여자나 운영자 등 당사자 관점에서 개별 사업이 아닌 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내부적인 성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 이어진 20여 년간 서울시 기금 사업의 역사와 운영현황을 분석해, 성평등기금의 존재 의의를 시민 일반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한다.<sup>6)</sup> 변화하는 정책 현실에 비추어 성평등기금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기금 사업 운영의 개선방안 마련에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한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부터 2019년 시점까지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쌓아온 역사를 돌아보고, 기금 사업의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중앙정부보다도 한발 앞서 기금을 조성하고, 공모를 통해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위상에 비추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분석이 미진했다. 이에 초기 여성단체, 여성운동계 등의 기대 속에 탄생한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금 사업을 수행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 명칭에 걸맞는 방향으로 성평등기금의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이 갖는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6) 기금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재정적인 측면에 관한 것과 다른 하나는 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후자에 관한 것으로, 성평등기금으로 이루어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양성평등기금 폐지 논의와 일부 지방정부의 기금 폐지에는 성평등기금 사업이 일반사업 예산과 큰 차별성 없이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 성평등기금에 의해 운영된 사업의 성격과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일반 예산 사업과의 차별성을 구체화하여 기금 예산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더불어 성평등정책을 위해 할당되는 일반 예산의 부족 문제로 인해 성평등기금이 출발했다는 점에서 성평등정책 일반 예산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셋째,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사업이 중앙정부, 자치구의 양성평등기금과의 사이에서 지향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자치구 차원의 기금 중 다수는 “양성평등기금”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금 사업은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적 사업으로, 서울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수의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서울에는 전국단위 활동을 하는 단체, 풀뿌리 단위 활동 단체 등 다양한 층위의 단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성평등기금 사업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기금 사업 사이에서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가는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 차원의 성평등 이슈,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공간 안에서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 폐지 논의가 발생한 초기부터 여성발전기금의 존치를 주장했던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남녀평등문화와 빈곤, 소수자, 비정규직 문제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되고 있는 지역의 여성발전기금은 지역의 여성단체에 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여성부의 여성발전기금은 존재 자체로서 상징성이 있다는 점, 여성정책의 약화를 유도하는 기금 폐지 의견이 결코 혁신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여성정책의 발전을 후퇴시키고 지역의 여성단체 활동을 약화시킨다는 점 등이다.<sup>7)</sup>



아직까지는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던 적은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만이 지속해서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에만 의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이 연구의 목적이 기금 폐지 논의로부터의 방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쌓아온 역사를 시민과 공유하고, 기금 지원 사업의 보다 나은 운영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서울시 성평등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사업의 방향성을 제고한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설치·운영되어 온 역사를 짚어보고, 나아가 기금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이해하고, 성평등정책 안에서 기금 지원 사업이 어떠한 역할을 해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우선 기존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1995년 기금 책정에서부터 2019년까지 기금의 역사를 분석한다. 특히 기금의 조성 규모,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행정자료에 근거하여 기금 사업의 전반을 정리한다.

기금 지원 사업의 성과, 문제점이나 한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기금 사업 참여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금 사업 참여자 집단은 크게 기존에 참여 경험이 있으나 2019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단위, 다년간 지속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위, 최근 2~3년 내에 처음으로 기금 사업에 참여한 단위, 성평등기금과 함께 여타 기금 사업을 함께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단위의 사업 담당자로 구성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기금이나 유사 민간 기금 등과의 비교를 통해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성과와 부족한 점, 특성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해 갈 것이다.

성평등기금이라는 현재의 명칭에 부합하는 기금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전문가 집단은 서울시의 성평등기금은

---

7) 임현선 (2005.05.13.), 「여성계 “여성발전기금 살리자”」, 『여성신문』

용위원회 및 성평등위원회 위원, 기금 사업 평가 및 자문 참여 전문가, 여성학 및 성평등정책 전문가, 유사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여성발전”에서 “성평등”으로의 명칭 변화가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명실상부한 기금의 위상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 기금 사업의 선정 기준이나 지원 기간의 다각화 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이 연구가 서울시 성평등기금에 초점을 둔 연구이기는 하나, 중앙정부의 양성평등기금이나 지자체의 양성평등기금과의 관계를 역시 고려할 예정이다.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중앙정부나 지자체 기금과의 연계성을 가지면서도,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기금 사업 담당자 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1-1 연구 방법 및 내용

구분	분석대상	분석내용
성평등기금의 역사 분석을 위한 문헌 연구	-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및 기금 전반에 대한 관련 연구
	- 여성단체 등 관련 1차 자료 - 서울시 관련 행정자료 등	-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역사와 의의 -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성격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현황 분석	- 성평등기금 사업 참여자 면접	- 성평등기금 사업의 장단점 · 기금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건 · 여타 기금과의 차별성 · 성평등기금이 갖는 한계
	- 성평등기금 관련 사업 운영자	-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의 현황
성평등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분석	- 성평등기금 · 성평등정책 전문가	- 서울시 성평등정책과 성평등기금의 관계 설정 - 기금 사업 운영 개선 필요성 및 정책 수요
	- 전문가 자문	- 성평등기금의 중장기 방향성 검토 - 기금 사업 확장 및 내실화 과제 발굴

이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구성되는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론과 추진 체계를 소개하고, 관련 선

행연구 분석을 통해 이 연구가 추구하는 바를 분명히 제시한다.

II장에서는 1996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책정에서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기금 운영의 역사를 검토하고, 자치구의 기금 현황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특성을 파악한다.

III장에서는 기금 지원 사업 참여자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 사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기금의 향후 방향성, 기금 사업의 확장과 내실화를 위한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해 정책 개선방안과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IV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기금 지원 사업의 차별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 3. 연구 추진 체계

이 연구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2】 연구 추진 체계

단 계		주요 내용		
1단계	계 획 설 계	▶ 시행계획	- 연구목적, 내용, 대상, 추진방법 등 계획 수립	연구방향 설정 및 주요 연구내용 도출
		▶ 착수자문회의	- 학계 및 단체 전문가, 관련 연구자, 서울시 담당자, 재단 내부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 연구방법 타당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등	
2단계	자 료 분 석	▶ 기금의 역사	- 기금 설치 배경, 특성, 법적 근거, 변화 내용 등 검토	성평등기금 역사와 운영 현황 분석 및 평가
		▶ 기금 운영 현황	- 서울시 기금 운용 현황 및 추이 분석·평가 · 기금 조성 규모, 사업현황 등	
		▶ 기금 사업 특성 및 변화추이	- 서울시 기금사업의 방향성, 수행 체계, 성과 등에 대한 분석·평가	

단 계		주요 내용		
3단계	조 사	▶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관련 의견 조사</li> <li>- 사업 참여 단위 관계자</li> <li>- 유사 사업 및 기금사업 담당자</li> <li>- 기금 및 성평등 전문가</li> <li>- 기금 방향성, 기금사업 운영 실태, 기금사업 수요 및 개선방안 등</li> </ul>	기금 방향성 제시, 기금사업 운영평가 및 정책수요 분석
4단계	정 책 방 안 도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자문</li> <li>▶ 정책개선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방향성 도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li> <li>- 정책 개선방안 및 추진과제 발굴</li> </ul>	정책 개선방안 및 전략 도출
5단계	결 과 보 고	▶ 결과보고서작성	- 연구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제출

#### 4.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사업 검토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타지방정부의 성평등기금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기금의 주요한 성과로 여성단체의 재정적 열악함을 보완해 사업수행의 가능성을 확장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기금 사업이 지역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의미와 지자체와 여성단체의 거버넌스(governance)로써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여성 의제를 발굴하는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성향숙, 2014, 2016; 홍미영·조한나, 2016)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라 기금의 성과를 단체의 활성화와 역량강화, 지역의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실현 기여”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양성평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sup>8)</sup> 응답자의 41.4%가 여성발전기금이 기관이나 단체의 활성화와 역량강화에 기여한 정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1.0%는 여성발전기금이 부산지역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정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sup>9)</sup>

8) 조사대상은 부산지역에 소재한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유과 기관·단체와 기금수혜를 받은 기관·단체 300명을 표집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 지방기금과 같이 여성발전기금, 성평등기금도 존폐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설치 목적의 중복성, 타기금과 사업 내용의 중복성, 일반 예산사업과의 유사성 문제와, 둘째, 운영의 비효율성을 들고 있다. 즉,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독자적 기금으로 존치되었다는 사실은 기금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성향숙, 2016)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 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때 평가에 사용되는 세부 분석 지표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다만 이러한 평가기준은 기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하고, 재정적 운용의 측면에서만 평가한다는 한계가 있다.

【표 1-3】 기금 성과분석 지표

분야	지표항목
기금정비(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정비비율(30점)</li> <li>• 일몰제 적용률(10점)</li> </ul>
기금운용의 건전성(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회수채권의 비율(15점)</li> <li>• 타회계 의존률(5점)</li> <li>•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20점)</li> </ul>
기금운용의 효율성(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5점)</li> <li>• 정상적 경비 비율(5점)</li> </ul>
가점(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1~3점)</li> <li>•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li> </ul>

출처: 행정안전부 (2017),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2016년 회계연도)』.

9) 여성발전기금이 기관·단체의 활성화와 역량강화에 기여한 정도에 대하여 ‘약간 기여함’과 ‘매우 기여함’ 41.4%, ‘보통’ 32%, ‘별로 기여하지 않음’과 ‘전혀 기여하지 않음’ 26.6%, 여성발전기금이 기관·단체의 활성화와 역량강화에 기여한 정도에 대하여는 ‘약간 기여함’과 ‘매우 기여함’ 51.0%, ‘보통’ 33.7%, ‘별로 기여하지 않음’과 ‘전혀 기여하지 않음’ 15.3%로 응답되었다.

이 연구는 기금의 재정적 운용 측면에 대한 성과 분석이 아니라, 사업 운영차원에서의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짚어보고, 기금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 사업 운영 성과 측면에서는 매년 기금사업 수행 단체를 평가하는 체계가 있으나, 개별 사업 수행에 한정된 평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성평등기금 운영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up>10)</sup>

특히 서울시는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에 앞서서 기금의 설치를 약속하고,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한 반면, 서울시는 성평등기금으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되어 온 사업들이 성평등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한 바를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중앙정부의 양성평등기금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서울시의 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기금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 정책 수요

기금 사업 운영과 수행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된 연구(박재규·장정순, 2009; 안태윤·김람회, 2015; 홍미영·조한나, 2016; 윤연숙·홍미리, 2017)에서 제시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금 사업의 차별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여성가족정책부서의 일반예산 사업을 비롯하여 비슷한 성격의 업무수행 기관단체의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2003년 기획예산처의 기금 사업 평가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다음으로는 성평등(양성평등) 정책 방향과 기금 사업 분야 및 사업 내용이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사업이

---

10) 초저금리 시대 진입 및 장기화로 이자수익금 감소,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등의 기금의 재정적 차원에서의 운용에 대한 성과 분석은 별도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선정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근거가 되는 법이 바뀌었으나, 그에 따른 기금 사업 변화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업 추진과정 분석에서는 사업 심의, 선정, 진행, 평가를 중심으로 대략 네 가지 의견이 제안되고 있다. 첫째, 사업 심의와 선정 차원에서, ‘양성평등’ 관련 전문가의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심사 시 세부적인 판단기준이나 구체적인 고려 사항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들 간 점수의 편차가 크다는 점, 평가결과가 반영된 사업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등을 함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둘째, 사업의 다각화 필요성도 지적된다. 진행과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기금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으며, 참여단체에서 지원액을 높여달라는 요구와 현행 1년 단위사업 외에 2~3년 단위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셋째, 진행과정의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단체 교육과 컨설팅, 모니터링 등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넷째, 평가차원에서 전문평가단 구성과 같은 전문적인 평가체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여성발전기금(양성평등기금)의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박재규·장정순, 2009; 안태윤·김랍희, 2015; 홍미영·조한나, 2016; 윤연숙·홍미리, 2017)은 주로 사업추진 체계와 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운영추진 단계의 개선책으로 선정심사기준과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윤연숙·홍미리, 2017). 다른 한편으로 기금 사업 수행절차의 개선방안도 일부 구체화되고 있다. 선정심사 기준 체계화 및 외부 전문가 위탁, 사업과정에서 컨설팅 지원 강화, 평가지표 개선 등이 그에 해당한다(박재규·장정순, 2009; 안태윤·김랍희, 2015). 운영 시스템 마련과 전문평가단을 활용한 평가 등 기금사업 운영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윤연숙·홍미리, 2017)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사업추진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탁을 통한 사업운영 지원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 체계 등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해당 지방정부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심사기준을 세워 사업을 선정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고 있다.

## 2) 기금의 방향성과 성격

기금 사업의 운영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혹은 성평등) 기금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방향성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윤현숙·홍미리, 2017). 이는 양성평등 또는 성평등 실현에 대한 합의된 상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이 “성평등 실현”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다면, 그에 기초하여 사업운영이나 수행체계의 타당성과 적합성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금의 방향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윤연숙·홍미리, 2017)에서는 우선 기금의 목적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여성 권익증진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희석되고, 사업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등 실무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사업 콘텐츠 개발,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원 방안,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운용방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기금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직성을 벗어나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운용 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은 사회정책분야 기금의 성격이 강하다(홍미영·조한나, 2016)<sup>11)</sup>고 할 수 있다.

---

11) 해당연구에서는 기금의 성격을 크게 사회정책분야와 경제정책분야로 볼 수 있는데, 사회정책분야 기금의 특성을 상징적이고, 잔여적 복지의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성평등기금을 사회정책분야 기금으로 본다고 해도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사업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기금이 현재 방식과 같이 선별적 대상에 대한 보충적 복지 지원의 의미가 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성격의 사업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방식이 지속된다면 그에 대한 특별한 성과나 투명성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이라는 회계의 성격과 (양)성평등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비전과 미션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기금 조성 and 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금 사업의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유사 중복 사업은 선정을 최소화하고, 일반회계사업과 기금 사업의 통합, 개선 준비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홍미영·조한나, 2016). 기금 사업을 추진해 온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각 단위별 전문성을 고려해 특화사업을 위탁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회안전망과 직결되는 사업의 안정적 지원방식을 검토할 필요성 등에 대해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는 양성평등기금의 재정 운용전략 차원이 아닌, 기금 조성 and 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성평등 실현이라는 기금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 역시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조성 and 운영, 성과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평등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기금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지는 연구의 첫 단계에서 검토될 내용이다. 둘째, 기금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금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기금 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본 주체들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성평등기금 운영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

즉 취약계층 등 선별적 대상에 대한 보충적 복지지원의 의미가 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성격의 사업이므로 보다 안정적인 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기금은 일시적으로 조성했다가 폐지될 수도 있으므로 이같이 보충적 복지지원이나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사업들은 기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 3) “여성” 분야 지방보조금 사업 검토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갖는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금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부 사업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기금 관련 선행 연구(홍미영 외, 2016)에서는 부산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의 상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충당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 28.3%,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11.1%을 꼽고 있다. 이에 성평등기금 사업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과 어떠한 연계성과 차별성 안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도 이 연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보조사업의 절차, 세부내용 등을 정하여 일관된 보조사업 체계 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거버넌스 체계로 보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지방보조금은 “서울특별시(이하‘시’)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치구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함”으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결국 서울시의 정책의지나 판단이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방식의 사업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방보조금은 대상, 내용, 성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류된다.

【 표 1-4 】 지방보조금의 분류

구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li> <li>•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li> </ul>
내용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li> <li>•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li> </ul>
성격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액보조 : 보조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조</li> <li>• 정률보조 : 보조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원</li> </ul>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8), 『20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계획』.

대상별로 보았을 때 민간보조가 성평등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내용별로는 사업수행자의 사업 경비 지급이라는 면에서 경상보조 사업과 유사하며, 성격별로는 성평등기금은 정액보조나 정률보조 등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차이가 있다.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공공단체 보조<sup>12)</sup>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민간보조는 다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전재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로 총 8개로 분류된다.<sup>13)</sup> 여기에서 성평등기금의 사업 수행 단체와 겹칠 수 있는 부분은 민간보조 중에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한되며, 일부 사회복지사업 보조 또한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서울시의 민간 보조사업은 10개 분야<sup>14)</sup>로 구성되어 있다.

【 표 1-5 】 민간보조의 분류

구분	지방보조금 중 민간보조의 분류
민간경상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이(단체,법인,개인)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li> <li>※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li> <li>-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li> </ul>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li> <li>※ 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li> <li>※ 지원범위는 위 법령에 따라 지원기준과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li> </ul>

12)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구성된다.

13) 이 중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인 운수업계 보조금은 성평등기금과는 참여단위가 명백히 차이가 있는 만큼 논외로 한다.

14) 10개 분야와 소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복지(복지본부), 여성(여성가족정책실), 경제일자리(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문화관광(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시립미술관, 한강사업본부), 도시안전(비상기획관, 안전총괄본부, 도시계획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보건(시민건강국), 교통(도시교통본부), 환경(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건축지역개발(도시공간개선단,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행정·교육(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보기획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구 분	지방보조금 중 민간보조의 분류
	※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
민간행사 사업보조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금지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 -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
사회복지 사업보조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기재하고, 단체 해산 시 환수내용 기재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비를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8), 『20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계획』의 [붙임 3]

서울시에서 “여성”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는 여성가족정책실이다. 2019년 상반기 성평등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1-6 】 2019년 서울시 지방보조금사업 - 여성가족정책실 운영 사업

사업/공모명	사업내용	신청자격
마을 속 성평등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과 어린이 청소년의 연계활동을 통한 성평등문화 조성</li> <li>- 성인지 인권 감수성이 높은 성평등한 학교 환경 구축</li> <li>-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문화사업 운영</li> <li>- 권역별 코디네이터 배치 및 성인지 인권 활동가 양성</li> <li>- 성인지 인권 활동 사업 민관 협의체 개최</li> </ul>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젠더 거버넌스 구성 및 선포대회 개최</li> <li>- 현장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실시</li> <li>- 성인지 현장 활동 환류/ 평가 등</li> </ul>	서울시 소재 여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행정자치부 예규 제 54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의 손상된 치료·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012년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용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시설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 학생(초등학교 고학년 주대상)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권 교육 실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인권 교육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기관(강사인력풀을 갖춰야 함)*학교 성인권 사업의 경우 3차시 이상 체험형 교육 실시(체험관 또는 체험버스 등)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장애청소년 및 그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성 인권교육 실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성 인권 교육을 수행 관리할 역량이 있는 기관(강사인력풀을 갖춰야 함)
일본군위안부기록물관리사업(기록물관리, 홍보프로그램운영)	- 사업내용: 일본군'위안부'기록물 관리사업 및 아카이브 운영, 기억의 터 문화해석 프로그램 운영, 미래세대 교육사업,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과 홍보 사업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 법인, 재단, 사회적 기업 등

사업/공모명	사업내용	신청자격
	- 보조사업자: 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등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운영,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사업	- 대학생 대상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등 -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민간단체
공공기관 비상용생리대지원 (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생리대 배치 확산)	- 공공기관 200개소 비상용 생리대 배치 - 공공 및 민간기관 비상용생리대 비치 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등	서울시 소재 청소년, 여성 관련 사업 운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운영	- 미혼모부에게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수행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우선 선정
한부모가족 희망밥상 나눔프로그램 (시민참여)	- 한부모가족 자조모임을 통해 반찬 나눔 및 자립역량강화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수행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우선 선정
살리GO살리GO프로젝트 한부모가정의 학업지원(시민참여)	- 학업이 중단된 저소득 한부모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반 운영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수행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우선 선정
2019 다문화가족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운영기관 선정	- 소수언어결혼이민자 대상 통번역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단체 또는 법인
2019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 운영자 모집	- 결혼이민자 등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등 서비스 제공	비영리단체(법인)
2019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 다문화가족대상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단체(법인)
2019 다문화가족지원 지역특성화사업 운영기관 선정	-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단체(법인)
2019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여성의 임신, 출산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법인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외국인자녀 방문학습 지원 - 아동 방문학습(180 ~ 200백만원) 및 청소년 학습 멘토링(20 ~ 40백만원) 지원	서울 경인지역에 주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로서 방문학습 전문성을 갖추거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최소 1년 이상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사업/공모명	사업내용	신청자격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 사업	- 학부모진학설명회, 1:1진학상담, 진로탐색 워크숍 등 다문화가족 맞춤형 진로 진학정보 제공 - 진로 및 진학 분야별 각1개 전문단체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서울지역에 주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로서 방문학습 전문성을 갖추거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최소 1년 이상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활용 능력 증진을 위한 이주배경 부모의 모국어교육지원 - 3개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교육 지원	서울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로서 방문학습 전문성을 갖추거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최소 1년 이상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 사업	- 외국인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쉼터 운영 등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단단체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	-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역사문화, 사회체험 및 문화체육활동 등 지원 사업 - 한국어교육, 역사탐방, 문화예술체험, 직업체험, 체육 및 기타 활동 분야 등으로 구성 운영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서울을 주사무소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출처: 서울특별시 (2019e), 『2019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현황』.

주: 2019.02.09. 기준 현황

위와 같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운영하는 “여성” 분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구성을 통해 볼 때 그 성격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교정 사업,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사업비 매칭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서울시가 꼭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민간보조금을 빌어 민간이 대행하는 성격을 지닌다.

둘째, 일본군위안부기록물 관리는 애초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되었던 사업이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중앙정부가 위안부 연구 관련 예산을 끊거나 삭감하자 서울시가 관련 연구팀에 예산을 지원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 서울시가 민간보조금으로 중앙정부의 역할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마을 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장애청소년 성인권 교육, 안심 서울 성평등 캠퍼스 운영,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경우 특정 시점<sup>15)</sup>에 발표된 서울시의 정책 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이다. 한편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 과제로<sup>16)</sup> 서울시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다.

넷째, 한부모가족 희망밥상 나눔 프로그램, 살리GO살리GO프로젝트 한부모가족의 학업지원은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협치 사업이다. 더불어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또한 2018년까지 협치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운영기관 선정 또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제안 사안으로 협치 사업의 성격을 띤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이주민 관련 사업은 모두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된 일상 업무로 볼 수 있다.<sup>17)</sup>

여성 분야 민간보조금 사업은 서울시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사업들을 실현해 나가고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의 구성이나 구체적인 운영에서 민간의 전문성이 행정을 지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처럼 민간의 전문성에 행정이 의존하는 구조 하에서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거나, 전문성이 확장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 민간의 전문성에 기대어 수행된다고 할 때 그 전문성에 대한 서울시의 기여분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고려하면, 성평등기금의 역할이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서울시 “여성” 분야 지방보조금 사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명시적으로 “성평등”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3개 사업 중 폭력피해여성 지원<sup>18)</sup>이

---

15) 2018년 3월 발표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2018)에 포함된 정책 사업이다.

16) 공공기관 비상용생리대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공포에 따라 2018년 10월 8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17) 다문화가족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운영의 경우, 2016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정책제안 사항을 서울시가 사업화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취업중점 기관 운영은 서울시 추진 계획에 의해 201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18) 1996년에서 2019년에 이르기까지 조례가 규정하는 성평등기금 용도의 변화는 요보호 여성의 복지 증진 및 발생 예방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조례에서 삭제되었다고 해서 해당 정책 사업이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으로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



나 한부모 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은 일종의 복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성평등 가치 지향 사업은 마을 속 성평등학교 만들기,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의 두 사업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는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사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자치구 사업에도 시비가 투여되는데, 여성 관련 부서 사업의 다수는 보육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방보조금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나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분류된다. 성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여성단체 등이 참여할 여지가 있는 사업은 분류상 민간 보조 사업에 국한된다. 다만 그 조차도 가족 관련 복지나 서울시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관련 사업 중 여성 안전·사회참여 확대 지원의 경우는 전액 구비로 수행되고 있다. 2018년 민간경상보조 사업 구성의 예를 한 자치구의 사례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9)</sup>

【 표 1-7 】 A자치구 지방보조금사업 - 여성 관련 부서 사업 (2018년)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국비	시비	구비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458,500			2,458,500
0~2세 보육료(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28,857,411	13,012,808	11,133,180	4,711,423
누리과정보육료(시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0,008,021		10,008,021	
방과후 보육료(시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27,751		21,923	5,828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0,663,032	2,960,668	5,612,592	2,089,772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22,158	3,102	16,387	2,669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2,275,905	688,028	1,123,781	464,096
만3-5세아 담임수당 지원(시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3,186,899		3,186,899	

직하며, 실제 폭력피해여성 지원 사업은 지방 보조금 사업으로 수행 되고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

19) 서울시 문서공개 사이트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5994135> (2019.08.21. 접속)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국비	시비	구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961,934	107,609	1,016,140	838,185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102,694	30,808	50,320	21,566
보육사업비(시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4,787,550		2,534,003	2,253,547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시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1,443,028		973,609	469,419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시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126,000		58,000	68,000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시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000		0	3,000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시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1,001,007		1,001,007	
1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시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35,060		17,200	17,860
클로버 부모교육 운영(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0	4,000	8,000	8,000
보육교사 연수비 지원(시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28,600		28,600	
시간제보육 운영(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347,283	160,000	80,000	107,283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시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128,700		48,000	80,700
영유아플라자 운영(시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225,707		130,211	95,496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시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13,000		13,000	
어린이집 환경개선(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9,500	29,000	14,500	16,000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50,000		350,000	
여성안전·사회참여 확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50,000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시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9,765		9,765	
여성안심 행복마을 운영(시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10,000	
아이돌봄 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1,122,474	311,938	463,173	347,36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6,172		6,172	

사업의 수행 주체가 겹치거나, 사업의 내용이 성평등기금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고 예견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자치구 단위에서는 가족이나 보육 분야 사업으로 대부분 채워지고 있다. 지방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갖는 중요한 의미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자율적 연계 기능” 유지(김성주, 2018)에 있다고 볼 때,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이 정부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협치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행정부서를 운영의 주체로 하는 사업 구조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담은 사업이 지방보조금 사업을 통해 실현되기 쉽지 않음은 서울시와 자치구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한편으로 일부 성평등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방보조금을 통해 수행된다고 해도 그것은 지방정부의 정책 사업에 국한되어 민간의 자율적이고 실험적인 성평등 가치 실현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단체가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조금 사업 안에서 여성단체가 참여할 여지도 크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이나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성평등 기본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기금의 첫 번째 용도는 관련 조례를 통해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에서 출발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것은 다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 사업” 지원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보조금 사업과 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성평등기금의 역사와 현황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사업과 성평등기금 사업이 갖는 차별화 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 II

##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역사와 현황

1. 성평등기금의 역사
2. 성평등기금 운영 현황
3. 성평등기금 사업 수행 체계
4. 요약 및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I

##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역사와 현황

### 1. 성평등기금의 역사

중앙정부의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금”에서 출발하여 “양성평등기금”으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면, 서울시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출발하여 “성평등기금”으로 개칭되면서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길을 가고 있다. 물론 명칭의 차이만으로도 두 기금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기금의 목적에 상관없이 용어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기대를 만들어 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여성부<sup>20)</sup>(2009)는 2000년까지는 공모를 통해 여성단체사업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였으며, 2001년까지는 기금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sup>21)</sup> 또한 2001년에 독립적인 여성정책 담당 부서인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발전기금의 폐지가 국회상임위원회 중 특히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김경희, 2005). 2003년에는 당시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 평가이후 여성발전기금 폐지가 보다 본격적으로 공론화

20) 2009년 당시에는 ‘여성부’였으나, 2010년에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었다.

21) 2001년에는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중점을 두고 관련분야의 사업을 선정·지원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여성의 권익증진 및 차별개선을 위한 사업 부문에 중점을 두어 해당 분야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되기에 이른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이 전액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조성되는 점에 근거하여, 굳이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이전에, 여성발전기금은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중앙정부 자원에서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여성부의 탄생이 오히려 “여성발전기금”의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김경희, 2005).

한 편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여성발전기금 폐지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보다는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폐지 논의의 여파로 지방정부의 여성발전기금까지 영향을 받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우려가 표명되기도 하였다.<sup>22)</sup> 중앙정부 여성발전기금의 존재 자체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여성문제와 여성단체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중앙정부의 기금 폐지가 지방정부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우려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1996년 여성발전기금에서 출발한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2019년 시점에 이르기까지 걸어 온 역사를 중앙정부의 양성평등기금이 1996년 이래 밟아 온 길과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기금과 서울시 기금이 어떠한 연계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1) 기금명칭의 변화: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성평등의 의미

「여성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은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공포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본법에서는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으로 성평등을 지향하는 국정운영과 입법화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배은경, 2016).

22) [성명서] 대한YWCA 연합회 외, ‘여성발전기금 존치를 위한 여성단체들의 입장’ (2005.05.01.)



법의 제정과 함께 법의 목적<sup>23)</sup>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법에서는 제29조를 통해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였다.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이 실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사업의 실행에 구체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1995년이 되어서야 제정된 법과 기금 명칭으로서의 “여성발전”은 이미 성평등정책을 향한 세계적 흐름에 뒤쳐진 감이 없지 않았다.

UN에서는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제1차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때 UN에서 제시한 여성정책 접근법은 ‘발전 속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WID) 접근으로 볼 수 있다. WID 접근은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발원조가 현지 여성을 경제 발전에서 소외시키고 주변화 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여성을 생산적 소득 활동에 통합시키고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발전의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여성을 기존 체계에 동등하게 포함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통합 전략으로 불리기도 한다(유정미, 2010: 113-114).

WID 접근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철학에 입각하여 여성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것을 강조했지만, 여성이 위치하고 활동하는 사회적·정치적 구조를 간과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라이, 2014: 122). 물론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 설치의 계기를 제공하는 등 일정 정도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전담 기구들은 예산과 권한이 적어 실질적인 권력행사가 제한되었고 주류 기구로부터 고립·주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마경희, 2010: 79).

WID 접근의 이러한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 GAD) 접근이다. GAD 접근은 ‘여성문제’의 초점을 ‘여성’이 아닌 ‘젠더관계’에 맞추는 관점을 취한다. 성 불평등은 여성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으로 차지한 차별적 지위와 역할, 불균등하게 분배된 자원 등 구조화된 성별 권력 관

23)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

계에 기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마경희, 2010: 79)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98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이미 그간의 WID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GAD 접근의 성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1995년 한국에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WID 관점의 여성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배은경, 2016). 기본법 제정 이후 균등한 기회를 통한 여성의 개발 차원에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개인의 발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성주류화 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성정책에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본법 개정에 대한 주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결국 2015년 7월에 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되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금도 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으로 개칭되었다.

한 편 서울시의 여성발전기금은 애초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설치되었다. 이후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달리 서울시의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되었다.<sup>24)</sup> 기금의 명칭이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 개칭되기 이전에, 기금의 목적이 조례 개정과 함께 변화했다. 1996년 설치 당시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는 기금의 목적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복지사업 지원”로 명시하였고, 이후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명시한 바 있다. 「성평등 기본조례」에서는 기금의 목적을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설치의 의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24) 서울시의 「여성발전기본조례」는 1999년 7월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조례의 제4장(31조~33조)에 여성발전기금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중앙정부의 기본법 개정 이전인 2012년 7월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되었으며, 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전면개정이 제18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해 현재 자동 폐기된 상태로, 향후 법 개정시기가 불투명하다”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성평등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타 시도 및 자치구에 여성관련 법률 제·개정 모형을 제시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례명 개정은 경기도가 2009년 4월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했음에 비추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2000년대 초부터 여성계, 국회와 정부의 여성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 ‘여성발전’이라는 명칭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남녀평등’, ‘양성평등’, ‘성평등’이라는 용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쟁투가 벌어졌다(배은경, 2016: 37). 여성정책의 시혜적인 패러다임은 민주화 이후 이미 약화되거나 사라졌고, 1990년대를 지나면서 WID 접근과 발전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다. 여성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이 GAD와 성주류화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상황에서 법안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도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정권 교체 과정과 입법화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 조직편제에 대한 논란, 성평등의 목표 혹은 ‘여성정책’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논쟁은 오히려 엉뚱한 문구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법 개정 운동에 관여하지 않은 여성(운동)계의 관심이 법의 이름이 ‘성평등’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양성평등’이 되어야 할 것인가로 축소된 경향이 있었다(배은경, 2016).

사회적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 사이에서 어떠한 개념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심화되었다. 서울시에서도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던 움직임이 있었다.<sup>25)</sup> 또한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

25) 여성가족부는 2016년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기본조례」 중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개정을 요청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로구가 입법예고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의 조항을 문제삼기 위한 기독교 단체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구로구 조례안은 생물학적 성 이외에 ‘사회적 성’을 차별하는 것도 성차별이라고 규정했다.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통적인 성관념이 깨져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진다고 보수·기독교 단체 회원들은 주장했다. 구로구는 결국 이들의 압력에 굴복해 조례안의 해당 조항에서 ‘사회적 성’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배장현 (2015.08.14), 「양성평등 조례안, 지자체 곳곳서 ‘몸살」, 『경향신문』 (2019.07.08. 접속).

다른 한편으로 [성명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2015.08.13), [의견서] 대전여성단체연합 외,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 (2015.08.24.), [의견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2015.09.04) 등 여성가족부의 태도를 규탄하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시의 경우, 정책 집행부 차원에서 2015년 12월 서울시가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는 기록(여성정책담당관-20652호, 2015.11.30.)이 있다.

회에서 발표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에서는 개정안에서 제시한 ‘성평등’의 뜻이 상위법에서의 ‘양성평등’과 같다면 되도록 상위법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울시 의도대로 법 용어와 동일한 뜻을 지님을 설명하고 싶은 경우라면 이를 명확하게 정의규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발표일인 2017년 12월 20일에는 시민 세력 간에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둘러싼 용어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보수 기독교 세력은 각각 집회를 열어 정책용어로 ‘성평등’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거나, ‘성평등’ 용어의 퇴출을 촉구했다.<sup>26)</sup> 이어 2018년 4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에서도 유사한 용어 논쟁이 이어졌다. 여성계에서는 정부가 2014년 5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양성평등’을 정책용어로 채택하였으며, 성평등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불평등한 젠더관계의 변혁보다는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대립구도는 이론적 구도가 아니라, 여성운동과 성 소수자 운동 대(對) 보수 개신교 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혐오 세력 때문에 일차적으로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이진옥, 2018: 185)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용어의 함의나 영향에 대해 여성가족부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라

26) 2018년 12월 20일, 청사 앞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 세력은 “성평등은 성소수자도 평등하게 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라며 ‘성평등’ 용어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서울 세종로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일까 우려된다”라며 “차별과 배제 없는 ‘성평등’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정연 (2018.04.07.),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대립하는 개념일까: "보수세력의 '양성평등' 은 기존 양성평등 개념 벗어난 차별과 혐오”, 『프레시안』).

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 사용이 보수기독교 타협과 동성에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기금과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다. 기금을 어떠한 용도로 누가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양성평등”과 “성평등” 사이의 용어 선택에 따른 논쟁이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의 근거인 법 명칭에서 비롯된 사업의 범위, 참여자 등의 문제는 여성발전기금 시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법 개정을 “여성” 의제를 “성평등”이나 “젠더” 의제로의 확장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단순히 사업 참여자에 “남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애초 기금의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 문제가 되었다.<sup>27)</sup>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에 참여한 단체에게 “남성 참여를 늘리든지, 사업 규모를 줄이라”고 하거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남성 포함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매해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주관해온 여성단체에게는 “양성평등 행사를 여성단체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논리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행사계획에 명시된 ‘여성의 정치세력화’ 문구에서 ‘여성’을 다른 단어로 수정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시 성평등기금으로의 변화가 2012년 7월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 시행되었다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조례명의 변화가 기금 명칭이나 용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지는 아래 [표 II-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7) 법 시행으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성별이분법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이 기계적으로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공직사회의 관점이 정책 집행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여성단체를 배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 큰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이하나, 2016.06.22., 「[양성평등기본법 1년] “남자 더 뽑으라” 강요가 양성평등인가」, 『여성신문』).

【 표 II-1 】 조례 개정 등에 따른 기금의 용도 정의 변화

구분	기금의 용도
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 1996.5.20. (여성발전기금)	1.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2. 여성지도자 및 여성의 교육·국내외 연수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포럼 등 행사 4. 요보호여성의 복지 증진 및 발생 예방 5.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성발전기본조례 2012.3.15 (여성발전기금)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개정 2008. 09. 30)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08. 09. 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30)
성평등 기본조례 2012.7.30. (여성발전기금)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 사업 2. 제29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성평등 기본조례 2016.09.29. (성평등기금)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 사업 2. 제29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성평등 기본조례 2019.05.16. (성평등기금)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고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개칭됨에 따라, 그 다음 해

인 2016년 9월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은 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의 변화가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였는지는 조례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다만 2012년 7월 조례명의 개정이 기금명칭의 변경을 불러온 것은 아니나, 기금 용도에는 일부 변화를 가져왔다. 그 후 2019년 5월 「성평등 기본조례」에 이르기까지 기금의 용도 규정에는 변화가 없다. 결국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운영과 관련한 과제는 기금의 명칭에 걸맞는 용도의 설정을 통해 그 효과성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서울시 성평등기금 조성의 역사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전신인 여성발전기금은 1995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조순 시장의 기금 설치 약속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199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성평등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sup>28)</sup> 이와 관련하여 당시 서울시청에 재직했던 담당 공무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기도 했다.

“제가 여성개발 담당관으로 일할 때였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잘 때면 으레 복지 분야 예산을 삭감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 시장님께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기금에서 이자가 나오면 예산을 안 줘도 일할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하시더군요. 당시로서는 중앙부처보다 더 큰 액수인 100억 원이라는 기금을 마련해주셨어요. 그 기금으로 여성계와 많은 일을 해냈고, 조 시장님은 1997년 여성계가 주는 디딤돌 상을 받았죠.”<sup>29)</sup>

1997년 6월 우리나라 여성공무원 사상 처음으로 1급 공무원에 임용되어 화제

28) 당시 디딤돌상은 5분야에 시상되었는데,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서울대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으로 한국 사회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이슈화 한 장본인, 우조교, 2.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정책을 강화한 서울시 조순 시장, 3.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로 ‘매맞는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인 의제로 접근, 가정폭력문제를 사회화한 이민용 감독, 4. 대부분 여성노동자로 구성된 회사의 비정규직 확산을 규제하는 노사합의를 이끈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동조합, LG화재 노동조합, 5.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한 피해자에게 실형선고의 1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강완구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

29) 당시 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은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과는 기금 설치 배경과 날짜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서울시의 기금 설치가 중앙정부보다 앞섰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한경심, 2011.03.01.), 「인물초대석: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월간중앙』)

가 되었던 서울시여성정책보좌관의 정년퇴임을 알리는 기사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 기사 자료를 통해 1997년에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규모가 60억에 달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씨는 시장 직속인 여성정책보좌관으로 1년여 동안 있으면서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서울여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발전기금 60억 원을 조성하는 등 여성문제 해결에 남다른 정열을 기울였다.”<sup>30)</sup>

서울시 기금전반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연구(김지옥·윤봉희, 1999)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이 1996년에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sup>31)</sup> 1999년 운용규모를 110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성격을 사업관리기금으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적립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운용한다 는 점에서 사실 상 적립성 기금으로 분류하였다.<sup>32)</sup>

기금 관련 조례에서 기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비영리공익단체 또는 법인이나 서울시장, 구청장이 추천하는 여성단체로 하였다. 지원 사업은 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② 관련 법인 및 단체(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18조 규정)가 수행하는 사업, ③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④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시에 서는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두었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시 기획예 산실장과 여성정책관으로 규정하였다. 위원은 ① 서울시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 국장, ②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며,

30) 유하룡 (1997.06.25.), 「“지금 떠나는 것은 또다른 출발을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매일경제』

31) 1996년 5월 2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조-9조)는 기금 관련 전반을 규정하였 으며,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여성발전기금의 근거 조례로 기능하였다(서울특별 시장, 1996).

32) 앞서 밝힌 바 있듯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133조와 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여성의 건전한 시민운 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여 여성정책 개발 및 지원향상을 모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9년 기준 여성정책관실에서 관리하였다.



주요 심의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운용 및 결산,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은 그 출발에서부터 체계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규모는 82억5백 만 원으로 수익률이 19.2%였던 것으로 나타난다.<sup>33)</sup> 여성발전기금은 1998년까지 조성된 80억 원과 1999년도 시출연금 12억 원 등이 합쳐져 1단계 조성 마지막 년도인 1999년에는 1백억 원 이상이 조성된다. 1996년 기금 설치에서부터 1999년까지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규모와 관련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2】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1단계 조성 현황 (1996~1999년)<sup>34)</sup>

(단위: 천원, %)

구분	민선1기		민선2기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총 조성액	서울시 출연금	1,000,000	5,000,000	2,000,000	1,200,000
	운용수입금	32,750	98,250	734,202	2,311,624
	소계	1,032,750	5,098,250	2,734,202	3,511,624
사용액	경상 사업비			550,377	615,878
	기금관리비	-	-	-	-
	소계	-	-	550,377	615,878
순 조성액	1,032,750	5,098,250	2,183,825	2,895,746	
누계	1,032,750	6,131,000	8,314,825	11,210,571	

지역의 여성정책에 관한 정부 보고서(공선영 외, 2008)<sup>35)</sup>의 분석에 의하면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은 1단계인 1999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였고, 2단계인 2007년도까지 추가 기금 조성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하여 총 200억 원을 조성한 것

33) 적립금 및 기타 이자수입은 734백 만 원, 미수수익증가는 844백 만 원, 해당년도 이자발생 수익의 합계는 1,578백 만 원이다(김지욱·윤봉희, 1999).

34) 조성액은 전입금과 이자, 기타수입을 합산한 금액이며, 사용액은 사업비와 기본경비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한다. 이하 기금 조성 현황은 ‘서울시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출처: [http://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budget/data\\_budget/data\\_fund\\_budget-n2](http://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budget/data_budget/data_fund_budget-n2) (2019.07.08. 접속)).

35) 2008년 여성부에서 펴낸 보고서로 『건국 60년 지방여성정책연구 지역여성정책의 성과 및 전망』 중 서울시 부분은 당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연숙 연구평가팀장이 작성하였다.

으로 볼 수 있다.

【표 II-3】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2단계 조성 현황 (2000~2007년)

(단위: 천원, %)

구분	민선2기			민선3기			민선4기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조성액	서울시 출연금	-	-	-	-	3,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운용수입금	930,281	779,824	608,516	520,267	528,843	558,512	678,286	854,728
	기타 수입	-	48,994	27,629	18,065	24,612	8,624	25,299	21,223
	소계	930,281	828,817	636,145	538,332	3,553,455	3,567,136	2,703,585	2,875,951
사용액	경상 사업비 (고유목적사업비)	630,952	651,481	744,134	914,679	762,764	739,420	841,982	747,773
	물건비(인력운영, 기타경비)	-	-	-	-	-	-	13,188	9,593
	기금 관리비 (기타)	-	11,470	5,059	31,585	37,429	28,073	-	-
	소계	630,952	662,951	749,193	946,264	800,193	767,493	855,170	757,366
순 조성액	299,329	165,866	-113,048	-407,932	2,753,262	2,799,643	1,848,415	2,118,585	
누계	11,509,900	11,675,766	11,562,718	11,154,786	13,908,048	16,707,690	18,556,105	20,674,690	

출연금과 이자수익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추가로 투입되는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운영되었다. 그 결과 2002년과 2003년에 순 조성액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에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30억씩,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0억씩을 투입하여 기금 조성 2단계까지의 목표액인 200억을 초과달성하였다.

【표 II-4】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 (2008~2012년)

(단위: 천원, %)

구분	민선4기		민선5기 전반		민선5기 후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조성액	서울시 출연금	3,250,000	-	-	-	1,000,000
	운용수입금	1,248,911	910,759	884,170	985,850	961,540
	기타 수입	44	268	269	1,069	5,436
	소계	4,498,955	911,027	884,439	986,919	1,966,976

구분	민선4기		민선5기 전반		민선5기 후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 용 액	경상 사업비 (고유목적사업비)	768,647	857,226	1,008,510	905,579	1,880,987
	물건비(인력운영, 기타경비)	9,593	11,750	18,068	7,674	70,142
	기금 관리비 (기타)	-	-	-	-	-
	소계	778,240	868,976	1,026,578	913,253	1,951,129
순 조성액	3,720,715	42,051	-142,139	73,666	15,847	
누계	24,395,405	24,437,456	24,295,317	24,368,983	24,384,830	

2007년 이래 연말 기금 조성액은 200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순 조성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금 지원 사업의 규모는 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지원 사업에 10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이자 수익인 운용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 표 II-5 】 서울시 성평등기금조성 현황 (2013~2018년)

(단위: 천원, %)

구분	민선5기 후반		민선6기		민선7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조 성 액	서울시 출연금	-	500,000	-	300,000	600,000	600,000
	운용수입금	734,650	634,211	515,523	400,229	361,302	336,833
	기타 수입	1,734	1,023	-	-	-	-
	소계	736,384	1,135,234	515,523	700,229	961,302	936,833
사 용 액	경상 사업비 (고유목적사업비)	803,796	1,136,807	598,288	704,910	950,000	930,000
	물건비(인력운영, 기타경비)	45,967	41,491	40,637	14,160	20,000	20,000
	기금 관리비 (기타)	-	-	-	-	-	-
	소계	849,763	1,178,298	638,925	719,070	970,000	950,000
순 조성액	-113,379	-43,064	-123,402	-18,841	-8,698	-13,167	
누계	24,271,451	24,228,387	24,104,985	24,068,144	24,059,446	24,046,279	

기금 조성과 관련한 조례의 큰 변화는 2012년 12월 31일 개정(2013년 1월 1일 시행)으로 발생했다. 당시까지 조례에 명기되지 않았던 기금의 존치 기한이 등장한 것이다. 「성평등 기본조례」 제38조의 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 내용을 신설한 이유로는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 도모”를 들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존속기한 연장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 21일 「성평등 기본조례」 제39조 2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기금 존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였다. 그러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성격을 한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 현황

‘성평등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금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성평등기금이 갖는 독자적 목적성이나 사업 내용의 고유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남는 문제는 성평등기금을 둘러싼 논의 중에서 일반회계 의존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이에 현재까지 수행되어 온 기금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가고자 한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및 성평등기금 운영의 두드러진 특징은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던 방식에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한 수행으로 전환하고, 공모방식을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나누는 등 계속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 표 II-6 】 1998~2019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공모방식 및 평가 기관 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가 기관	서울시 직접수행						숙대아시아 여성연구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모 방식	지정공모		지정공모 +자유공모						지정공모			지정+자유										

이 장에서는 기금 운영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금 지원 사업의 현황을 서울시정 기수별로 나누어 봄으로써 시정 전반의 기초가 기금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sup>36)</sup>

### 1) 1998년~2011년까지 기금 사업 운영 현황

기금 조성의 측면에서 서울시가 2단계로 설정한 2007년까지 여성발전기금은 총 542개 단체, 646개 사업에 67억6천2백 만 원을 지원하여, 연평균 64.6개 사업에 단위 사업 당 약 1천 만 원을 지원하였다(공선영 외, 2008). 1998년부터 시작된 지원 사업을 민선 시정 기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민선2기인 2002년까지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 현황은 아래 [표 II-7]과 같다.

【 표 II-7 】 1998~2002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

연도별 지원현황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계	지원액 (천원)	636,613	507,806	644,419	613,000	575,000
	사업수	117	98	44	44	50
	단체수	69	59	33	32	50
	사업별 평균지원액	5,441	5,182	14,614	13,932	11,500
자유 공모	지원액	636,613	507,806	644,419	613,000	385,000
	사업수	117	98	44	44	37
	단체수	69	59	33	32	37
	사업별 평균지원액	5,441	5,182	14,614	13,932	10,405

36) 통상 지방선거가 6월에 실시되고, 기금사업 선정 시기가 상반기임을 감안해 사업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연도별 지원현황		1998	1999	2000	2001	2002
지정 공모	지원액	-	-	-	-	190,000
	사업수	-	-	-	-	13
	단체수	-	-	-	-	13
	사업별 평균지원액	-	-	-	-	14,615

2002년부터 달라진 점은 그 이전까지 자유공모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를 병행하여 실시했다는 점이다. 초기에 지정공모 사업의 주요 주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여성 및 가족을 대상(성매매, 여성노인, 요보호 가정, 여성권의 증진, 건전가족 등)으로 하거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었고, 자유공모 사업의 주요 주제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남녀평등, 여성의 참여, 건강, 복지 등이었다.<sup>37)</sup>

초기에는 사업에 지원한 단체 수 대비 사업의 개수가 많아, 단체 당 수행 사업 개수가 1998년과 1999년에는 1.7개였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1.4개 이하로 떨어져 단체 당 평균 사업 수가 하나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업별 평균 지원액이 1998년과 1999년에는 5백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평균 1천4백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을 평가하였는데,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에 당시의 신문기사 등을 통해 초기 기금 운영 상황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 1999년 서울시의 세입·세출내역을 검토한 시의회 의견서에 따르면, 여성발전기금이 61개 단체에게 기금을 지원했으며 이들 단체 중엔 사업 내용이 유명무실한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38)</sup>

2000년도 사업은 1999년 12월에 모집 공고를 내고,<sup>39)</sup> 2000년 2월에 기금 지원

37) 이해경·도영선 (2011), 『2010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38) 지원 단체 수는 강창동(2000.06.20., 「서울시 예산 방만 운용. 시의회, 초과집행등 부적절 사례 40건 지적」, 『한국경제』)의 기사와 기존 보고서(2010년 이래 여성발전기금 사업 평가 결과보고서)의 59개와 차이가 있다. 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자료를 보면 서울모자의 집(1998-1999)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한국정신대원구소(1998)의 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기관 공무원 및 활동가 교육 실시 등이 초기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수행되었다.

39) 1999년 12월 9일부터 23일까지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2000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하였다. 당시 공모사업은 여성단체 자원사업과 시가 지정한 사업지원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여성단체 지원 사업은 서울시

사업을 선정하였다. 여성의 전화와 성폭력상담소 공동 진행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등 44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기금 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는 5백만 원에서부터 5천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아 여성의 정보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남녀평등 촉진 등을 주제로 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2000년 주요 지원 사업에는 ①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의 ‘10대 여성의 성산업 유입예방을 위한 영상물 제작’, ② 지속가능개발 네트워크 한국본부의 ‘여성 장애인을 위한 사이버 직업학교 운영’, ③ 책 읽는 마을의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어머니 자원교사 양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sup>40)</sup>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민선3기 동안의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된 기금 사업의 현황은 다음의 [표 II-8]과 같다. 총 지원액은 2003년에 9억 원이었으나, 2004년부터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별 평균지원액 역시 2003년에 약 1천5백만 원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1천2백만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자유공모 사업은 2005년을 제외하고 서른 개 전후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지정공모 사업은 2003년에 23개에서 2006년에 33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 표 II-8 】 2003~2006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

연도별 지원현황		2003	2004	2005	2006
총계	지원액(천원)	900,000	753,000	690,000	747,540
	사업수	57	57	53	64
	단체수	58	58	54	64
	사업별 평균지원액	15,789	13,211	13,019	11,680
자유 공모	지원액	500,000	265,000	223,000	330,540
	사업수	34	32	24	32
	단체수	35	33	25	32
	사업별 평균지원액	14,706	8,281	9,292	10,329
지정 공모	지원액	400,000	488,000	467,000	417,000
	사업수	23	25	30	33
	단체수	23	25	30	33
	사업별 평균지원액	17,391	19,520	15,567	12,636

주소를 둔 여성단체나 전국단위 단체의 시 지부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다(양준영, 1999.12.08., 「여성발전기금 지원 공모: 서울시」, 『한국경제』)

40) 경수현 (2000.02.22.),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44개 사업 확정」, 『한국경제』

이 시기의 지정공모 사업의 주제는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2003년에는 성매매예방, 소규모자생조직 활성화, 여성 정치세력화, 2004년에는 여성의 노년기 설계, 2005년에는 여성과 문화, 2006년과 2007년에는 여성일자리창출, 출산장려 등 매년 새로운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민선4기와 5기 전반은 시장이 바뀌지 않은 동일한 성격의 지방 정부였음을 감안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한 범주에서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총 지원액은 2007년과 2008년에는 7억5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 9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후 감소하여 2011년에는 다시 7억5천만 원 정도가 되었다. 지원하는 단체수도 해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단체별 평균지원액은 2011년에는 평균 1천5백만 원이 되었다.

【 표 II-9 】 2007~2011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 현황<sup>41)</sup>

(단위: 천원, 개)

연도별 지원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지원액(천원)	750,000	773,000	916,000	869,000	757,000
	단체수	60	56	55	60	50
	단체별 평균지원액	12,500	13,804	16,655	14,483	15,140
자유 공모	지원액	315,000	190,000	317,000	297,000	-
	단체수	29	20	25	27	-
	단체별 평균지원액	10,862	9,500	12,680	11,000	-
지정 공모	지원액	435,000	583,000	599,000	572,000	757,000
	단체수	31	36	30	33	50
	단체별 평균지원액	14,032	16,194	19,967	17,333	15,140

민선시정의 기수가 바뀐 2007년 단체의 유형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여성단체가 35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복지·문화·종교·교육 등 기타단체가 19개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직능 단체와 여성관련 연구소가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공선영 외, 2008).

2008년도부터 서울시의 여행(여성행복)프로젝트를 지정공모 주제로 제시하였는

41) 지원 사업 수와 단체 수가 일치하므로 단체 수만 표기하였다.



데, 이는 민간단체 사업 수행을 통한 사업 확산을 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유공모 분야는 2008년도까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주제로 공모하였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다문화가정, 건강가정 등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주제가 추가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2년 단위의 다년도 사업도 공모가 가능하다는 점을<sup>42)</sup> 강조하였으며, 특히 2010년도는 단체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기타 여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주제로 하여 참여단체의 범위를 넓혔다.

2011년도에는 자유공모와 지정공모 분야를 나누지 않고 지정 7개 분야를 주제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주제는 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녹색생활 실천사업, 남녀평등 촉진사업,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사업,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저출산 대응 사업, 장애여성 등 소외계층 권익시장 및 복지지원 사업, 기타 여성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성격을 나누어 볼 수 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제시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사업의 주제는 다음의 [표 II-10]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II-10】 2002~2011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공모 분야별 주제

연도	지정공모 분야	자유공모 분야	비고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관련 역사·문화찾기 프로그램 개발</li> <li>• 건전가정 육성사업 프로그램 개발</li> <li>• 요보호가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li> <li>•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평등 촉진</li> <li>•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li> <li>• 여성복지증진</li> <li>• 기타 여성과 시정발전</li> </ul>	민선 2기 후반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관련 문화 콘텐츠</li> <li>• 가족친화제도개발 및 활성화</li> <li>• 여성권익보호 및 성매매예방관련</li> <li>• 소규모자생조직 활성화</li> <li>• 여성 정치세력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li> <li>• 남녀평등 촉진</li> <li>• 여성복지증진</li> <li>• 여성 건강증진</li> <li>• 기타 여성과 시정발전</li> </ul>	민선 3기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예방문화 정착</li> <li>• 건전가정 육성</li> <li>• 여성의 노년기 설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li> <li>• 남녀평등 촉진</li> <li>• 여성복지증진</li> <li>• 여성 건강증진</li> <li>• 기타 여성과 시정발전</li> </ul>	

42)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08. 12. 11.), 「서울시, 2009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모」, 『뉴스와이어』

연도	지정공모 분야	자유공모 분야	비고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매매 예방문화 정착</li> <li>건강가정 육성</li> <li>여성의 노년기 설계</li> <li>여성과 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사회참여 확대</li> <li>남녀평등 촉진</li> <li>여성복지증진</li> <li>여성 건강증진</li> <li>기타 여성과 시정발전</li> </ul>	민선 4기~5기 전반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일자리 창출</li> <li>출산장려</li> <li>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li> <li>건강가정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사회참여 확대</li> <li>남녀평등 촉진</li> <li>여성복지증진</li> <li>여성 문화</li> <li>여성의 노년기 설계</li> <li>기타 여성과 시정발전</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li> <li>출산장려</li> <li>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li> <li>건강가정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사회참여 확대</li> <li>남녀평등 촉진</li> <li>여성복지증진</li> <li>여성 문화</li> <li>여성의 노년기 설계</li> <li>기타 여성과 시정발전</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행(여성행복)프로젝트</li> <li>저출산대책</li> <li>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예방</li> <li>가족관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사회참여 확대</li> <li>여성 문화·복지</li> <li>여성의 노년기 설계</li> <li>기타 여성과 시정발전</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행프로젝트</li> <li>일자리갯기</li> <li>저출산극복</li> <li>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예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정지원</li> <li>건강가정육성</li> <li>문화·복지·건강증진</li> <li>사회참여확대</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행프로젝트</li> <li>여성일자리</li> <li>저출산 극복</li> <li>소외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복지·건강증진, 남녀 평등</li> <li>여성의 생애주기</li> <li>단체 고유의 특성</li> <li>기타 여성 발전</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li> <li>녹색생활 실천사업</li> <li>남녀평등 촉진사업</li> <li>여성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사업</li> <li>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저출산 대응 사업</li> <li>장애여성 등 소외계층 권익시장 및 복지지원 사업</li> <li>기타 여성발전에 기여하는 사업</li> </ul>	×	

자유공모 주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2007년까지 연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남녀평등 촉진’ 주제가 빠졌다는 점이다. 그 후 ‘남녀평등의 촉진’ 주제는 2011년에 지정 공모 분야로 다시 등장하였고, 2008년 남녀평등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이 등장한 공모 주제는 여행(여성행복) 프로젝트였다. 또한 2006년 지정공모 분야 주제로 처음 등장한 출산 장려는 2011년까지 저출산 대응 등의 주제로 계속해서 포함되었다.

## 2) 2012년~2018년까지 기금 사업 운영 현황

서울시는 2011년 10월 중간 선거를 통해 시정 전반의 기조가 변화되는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기조는 2019년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성평등기금의 운영에 대한 연구에서 시정의 변화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기금 사업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금 사업에 대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과의 연관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민선4기 시절 이미 시책 사업 연관 분야가 지정공모의 주제로 제시되는 등 서울시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기금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은 1998년 기금 사업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의 단체인 109개 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2년에는 상반기에 기금 규모를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여 총 90개 단체에 15억5천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20개 단체에 2억 4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이는 통상 연간 한 차례 사업 공모가 이루어지던 기존의 관행과 달라진 점이다.<sup>43)</sup>

2018년까지의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사업의 총 규모는 매년 10억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단체 당 평균 지원액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천5백만 원 내외에 불과했다. 2018년에는 선정 사업 수를 대폭 줄이면서, 단체 당 평균 지원액이 증가하여 약 1천9백만 원을 넘었다. 공모분야별로는 자유공모 분야 보다는 지정공모 분야의 평균 지원액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43) 김민혜 (2012.08.06.), 「서울시, 하반기 ‘여성발전기금’ 추가지원한다」, 『은퇴한국』

【 표 II-11 】 2012~2018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및 성평등기금 사업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개)

연도별 지원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지원액(천원)	1,779,370	814,468	996,771	598,646	695,400	840,537	748,851
	단체수	109	69	74	44	44	54	38
	단체별 평균지원액	16,324	11,804	13,469	13,303	15,804	15,605	19,707
자유 공모	지원액	-	-	360,797	168,086	97,600	117,300	126,802
	단체수	-	-	24	12	5	7	7
	단체별 평균지원액	-	-	15,033	14,007	19,520	16,757	18,115
지정 공모	지원액	1,779,370	814,468	635,974	430,560	597,800	723,237	622,049
	단체수	109	69	50	33	39	47	31
	단체별 평균지원액	16,324	11,804	12,719	13,047	15,328	15,388	20,066

2012년 서울시는 기금 사업을 확대하면서 보도 자료<sup>44)</sup>를 통해 마을 단위 풀뿌리 여성단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 깊숙이 여성정책이 확산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금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사업경력이 적거나 소규모인 여성단체들이 자치구나 공신력 있는 단체, 법인, 기업 등의 추천을 받을 경우 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 사업평가 우수 사업은 2013년부터 다년도 사업으로 인정해 지속적인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13년, 2014년, 2015년의 공모 분야 주제에서 풀뿌리 단위 사업이 제외되었고, 이러한 특성이 지속되지는 못했다. 또한 공모분야에서 2015년까지는 양성평등, 남녀평등, 성평등을 혼용해서 사용하던 관행이 2016년 이후부터는 ‘성평등’으로 일관되게 표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44)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2. 01. 02.),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2배 이상 확대... 17억 7천만 원 지원」

【 표 II-12 】 2012~2019년 기금 사업 공모 분야별 주제

연도	지정공모 분야	자유공모 분야	비고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 촉진</li> <li>• 여성 사회참여 확대</li> <li>• 여성 안전</li> <li>• 취약계층 여성복지</li> <li>• 신생 여성단체 지원</li> <li>• 풀뿌리 여성단체 협력사업지원</li> <li>• 실질적 성평등실현</li> <li>• 여성일터 환경개선</li> <li>• 여성 건강돌보기</li> <li>• 여성폭력 제로</li> <li>• 취약계층 지원</li> </ul>	×	여성발전기금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 성평등 실현</li> <li>• 여성 사회참여 확대</li> <li>• 여성 안전 및 건강 돌보기</li> <li>• 취약계층 여성복지 향상</li> </ul>	×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 남녀평등 실현</li> <li>• 여성 안전 및 건강 돌보기</li> <li>• 일·가정 양립</li> <li>• 취약계층 여성복지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경제·정치·사회활동 참여 지원 등 여성발전에 기여</li> <li>• 공유(share)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 성평등 실현</li> <li>• 여성 안전 및 건강 돌보기</li> <li>• 일·가정 양립 및 여성사회 참여 확대</li> <li>• 취약계층 여성복지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역량 개발을 통한 경제·사회 참여 및 재진입 확대</li> <li>• 노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li> <li>• 여성 활동가 양성</li> <li>• 기업 문화 개선</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 성평등 실현</li> <li>•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li> <li>• 일·가정 양립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li> <li>• 취약계층여성 역량 강화</li> <li>• 경제분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경제사회 참여 및 재진입 확대</li> <li>• 여성 리더십 강화</li> <li>• 여성 기업 활성화</li> <li>• 풀뿌리 여성주의 인식 확대</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li> <li>•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li> <li>• 일·가정 양립 확대</li> <li>•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li> <li>•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뿌리 지도자 발굴 및 지역 성평 등 인식 확산</li> <li>• 여성의 대안적 삶 공유</li> <li>•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li> <li>• 여성지도자 양성</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li> <li>•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li> <li>• 일·가정 양립 확대</li> <li>•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li> <li>•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뿌리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여성발전 기여</li> <li>• 여성 지도자 양성</li> <li>• 노년 여성 지원</li> <li>• 청년의 저출생·성평등 논의</li> </ul>	

연도	지정공모 분야	자유공모 분야	비고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이버성폭력·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li> <li>성평등 콘텐츠 개발(제작)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li> <li>1020세대를 위한 성평등 활동 참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경제 역량강화</li> <li>일·가정 양립 확대</li> <li>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li> <li>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li> </ul>	

사실 중앙정부의 법과 서울시 근거 조례의 명칭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금명의 차이에서 빚어진 혼란은 정치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게다가 서울시 내부에서도 조례와 기금의 명칭을 둘러싼 논의에서 조사 일관성이 확보되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2016.09.01)<sup>45)</sup>에서는 상위법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여성주간’, ‘여성발전기금’ 등의 명칭을 ‘성평등주간’, ‘성평등기금’ 등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적 범주로서의 젠더 관점에 더 부합하도록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당 용어가 성평등 촉진을 위한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3)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의 변화: 2015~2018년 사업 주제 분석

명칭의 변화는 지향하는 바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개칭한 것은 “여성발전”의 패러다임을 “성평등”관점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장에서는 2016년을 기점으로 기금의 명칭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2016년을 전후 시기에 기금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정공모 분야의 주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지정공모의 주제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45) 2016년 9월 1일,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서 2017년부터는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으로, ‘일·가정 양립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는 2017년부터 ‘일·가정 양립 확대’로 변화하였다. 2016년에는 ‘경제분야’를 신규 주제로 포함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라는 주제로 지속되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 사회 역량강화’라는 주제를 제시하였다. ‘취약계층여성 복지 향상’은 2016년에 ‘취약계층여성 역량강화’로 변경된 후, 2017년부터는 공모 주제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금의 개칭과는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약계층 등 선별적 대상에 대한 보충적 복지지원의 성격이 강한 사업은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홍미영·조한나, 2016). 주제별 사업 지원 단체 수와 지원금액을 중심으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13 | 2015~2018년 기금 사업 세부 주제별 지원 내역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계
실질적 성평등 실현	선정 단체수	8	10	12	9	39
	지원액	113,000	147,100	213,200	191,967	665,267
	평균 지원액	14,125	14,710	17,767	21,330	17,058
	비고	-	-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선정 단체수	9	7	17	8	41
	지원액	118,170	126,700	237,537	153,162	635,569
	평균 지원액	13,130	18,100	13,973	19,145	15,501
일·가정 양립 및 여성 사회 참여 확대	선정 단체수	9 <sup>46)</sup>	6	7	5	27
	지원액	108,000	85,000	91,500	97,284	381,784
	평균 지원액	12,000	14,166	13,071	19,457	14,140
	비고			일·가정 양립 확대		
취약계층 여성복지 향상	선정 단체수	7	10			17
	지원액	91,390	154,000			245,390
	평균 지원액	13,055	15,400			14,435
	비고		취약계층 여성 역량강화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계
경제 분야	선정 단체수		6	3	4	13
	지원액		85,000	45,300	81,031	211,331
	평균 지원액		14,166	15,100	20,258	16,256
	비고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선정 단체수			8	5	13
	지원액			135,700	98,605	234,305
	평균 지원액			16,963	19,721	18,023
지정공모 소계	선정 단체수	33(최종)	39	47	31	150
	지원액	430,560	597,800	723,237	622,049	2,373,646
	평균 지원액	13,047	15,328	15,388	20,066	15,824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지원 총액이 가장 컸던 지정공모 주제는 ‘실질적 성평등실현(체감하는 성평등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로 사업당 평균 지원액도 가장 높다. 또한 가장 많은 수의 단체가 지원받은 주제는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이다. ‘경제분야 및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가 신규 주제로 포함되면서, ‘취약계층여성 복지향상 및 취약계층여성 역량강화’는 제외되었다.

‘취약계층여성 역량강화’ 주제가 제외된 것은 실제 일반 회계 예산의 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름만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로 바뀐 측면이 있다. 2016년 취약계층여성 역량강화 분야로 지원 사업을 운영했던 2개의 복지법인과 2개 사단법인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양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분야로 지원 받은 데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의 대상과 세부 주제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형태로 확대되었다. 2016년도 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여성 역량강화 주제의 사업은 모두 장애인과 북한이탈여성 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국한되어 있다. 그에 반해, 2017년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분야는 대상과 주제 측면에서 훨씬 더 다양해졌다. 선정된 지원 사업에서 초점을 맞춘 집단은 장애인, 북

46) 9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나, 1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하였다.



한이탈여성, 미혼모, 난민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제로는 일본군성노예제 까지 아우르는 등 주제와 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 참여자 구성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실제 “취약계층”을 전면에 내세운 주제에서는 ‘특정집단’ 위주로 참여자가 구성되었던 반해, “다양성 포용” 주제 분야에서는 참여자가 ‘특정집단’과 함께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sup>47)</sup> ‘특정집단’이 주된 사업 참여자인 주제 분야는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일·가정양립’, ‘취약계층여성 및 다양성 포용’ 분야이다. 반면 ‘성평등 실현’ 분야는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자로 구성된 사업의 수가 많았으며, ‘경제분야’도 ‘특정집단’과 ‘일반시민’이 함께 하는 사업을 위주로 지원되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에서 분석한 주제 분야별 참여자 집단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 표 II-14 】 2015~2018년 기금 사업 세부 주제별 지원 사업 참여집단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계
실질적 성평등 실현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일반시민	2	5	2	3	12
	특정집단	3	1	3	-	7
	특정집단+일반시민	2	4	7	4	17
	다양한 집단	1	0	-	2	3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일반시민	2	2	-	1	5
	특정집단	4	1	4	4	13
	특정집단+일반시민	1	1	4	1	7
	다양한 집단	2	3	9	2	16
일·가정 양립 및 여성 사회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확대)	일반시민	4	2	2	1	9
	특정집단	2	3	4	-	9
	특정집단+일반시민	1	1	1	-	3
	다양한 집단	1	0	-	4	5
취약계층 여성복지 향상 (취약계층여성)	일반시민	1	0			1
	특정집단	3	6			9
	특정집단+일반시민	2	3			5

47) 일반시민은 일반시민이 사업참여자의 수가 되는 경우, 특정집단은 하나의 특정집단이 사업 참여자의 수가 되는 경우, 특정집단+일반시민은 특정 집단이 사업 참여의 주된 그룹이 되지만, 일반인의 참여도 있는 경우, 다양한 집단은 특정 집단 여럿이 사업 참여의 수가 되는 경우이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계
<b>역량강화)</b>	다양한 집단	1	1			2
경제 분야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일반시민		2	-	1	3
	특정집단		1	-	2	3
	특정집단+일반시민		3	3	-	6
	다양한 집단		0	-	1	1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일반시민			-	-	0
	특정집단			3	3	6
	특정집단+일반시민			1	1	2
	다양한 집단			4	1	5
지정공모+자유공모 합계	일반시민	14	13	4	7	38
	특정집단	15	14	15	12	56
	특정집단+일반시민	10	13	20	6	49
	다양한 집단	5	4	15	13	37

“성평등기금”이라는 명칭에서 기대되는 바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주제 분야는 ‘성평등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성평등 실현을 주제로 한 분야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 지원 사업은 4개 사업이며,<sup>48)</sup> 사업 참여 단위들은 성평등기금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모두 5회 이상인 단체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 주제 분야별로 볼 때 5회 이상 참여 경험을 가진 단체가 가장 많이 선정된 분야 또한 성평등 실현 분야이다. 더불어 중도 제외된 주제나 신규 주제를 제외하고 신규 선정 단체가 가장 적은 분야 역시 성평등 실현 분야이다.

【 표 II-15 】 2015~2018년 기금 사업 주제별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경험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계
실질적 성평등 실현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5회 이상	2	5	7	7	21
	4회	3	-	2	-	5
	3회	-	-	2	1	3
	2회	2	3	-	1	6
	신규	1	2	1	-	4

48)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사)한국여성연구소,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계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5회 이상	2	2	6	5	15
	4회	2	1	1	-	4
	3회	3	2	2	1	8
	2회	1	-	2	-	3
	신규	1	2	6	2	11
일·가정 양립 및 여성 사회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확대)	5회 이상	-	2	1	1	4
	4회	2	2	1	-	5
	3회	2	1	1	1	5
	2회	1	1	1	-	3
	신규	3	1	3	3	10
취약계층 여성복지 향상 (취약계층여성 역량강화)	5회 이상	-	2			2
	4회	3	3			6
	3회	1	3			4
	2회	2	-			2
	신규	1	2			3
경제 분야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5회 이상		1	1	2	4
	4회		-	-	-	0
	3회		-	-	-	0
	2회		-	1	1	2
	신규		5	1	1	7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5회 이상			3	1	4
	4회			1	-	1
	3회			-	-	0
	2회			1	1	2
	신규			3	3	6
자유공모	5회 이상	1	1	3	3	8
	4회	2	3	-	-	5
	3회	5	-	-	-	5
	2회	3	-	-	3	6
	신규	1	1	4	1	7

반면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일·가정 양립’ 관련 분야는 비교적 신규 참여가 활발히 일어났던 분야이다. 주제에 따른 전문성을 드러난 수치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주제의 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이 다른 주제 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전문성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 수행 참여 경험에 따른 연도별로 지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16】 2015~2018년 기금 사업 지속 참여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계
5회 이상	5	13	21	19	58
4회	12	8	5	-	25
3회	11	6	5	3	25
2회	9	4	5	6	24
신규	7	13	18	10	48

다만 기금에 신규로 참여한 단체가 반드시 신생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년도에 신규로 참여한 단체인 (사)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학회나 성수종합사회복지관, 한국여성의집·연구센터 사람과 사회 등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수년간 사업을 수행해 온 단체라고 볼 수 있으나, 성평등기금에 참여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반면 2018년의 신규 지원단체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단체가 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평등기금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경우이다. 하지만 디지털 성폭력 분야에서는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기금 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단체라 하더라도 단체의 역사나 사업 수행 역량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이제까지 기금의 명칭이 성평등기금으로 개칭된 전후의 사업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금이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성평등 실현을 지향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공모주제가 변화하고 있다.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지는 주제에서 제외되었고, 성평등 실천이나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일·생활 균형 등에 관한 주제들이 공모 주제에 포함되었다. 둘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와 대상이 좀 더 다양해졌다. 이는 장애인, 북한이탈여성, 미혼모, 난민 등을 포괄하는 사업들이 선정된 데에서 확인된다. 셋째, ‘성평등 실천’ 주제 분야에 기금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많거나 전문성이 높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사업이 주제에 맞게 유기적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성 불평등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급, 인종, 민족, 장애, 성적정체성 등 주요한 사회적 모순이 갈등하고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젠더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이나 차별을 경험하는 주체들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금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재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젠더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차별과 모순의 다양한 양상에 주목하면서, 이를 경험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4) 25개 자치구의 관련 기금 현황

서울시의 성평등기금이 중앙정부 양성평등기금과 독자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 각 자치구도 대다수 서울시 성평등기금과는 별도로 자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이 자치구를 포괄하는 기금 개선 방안 도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기금과 중앙정부, 자치구 기금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즉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이 자치구를 공간적 배경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자치구의 기금 현황은 서울시 기금 사업의 방향성과 범주 설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치구 또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기금에 관련된 사안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주요 재원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서울시 자치구의 성평등기금 관련 조례 제정과 성평등기금 조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7 25개 자치구의 성평등기금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자치구명	조례명	제정 시기	기금 조항	기금 설치 시기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04.11.19	×	-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2.10.17	○	2002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03.11.28	○	2003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6.04.06	○	2001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08.03.13	○	2004

자치구명	조례명	제정 시기	기금 조항	기금 설치 시기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04.11.12	○	2005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10.01	○	2004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04.09.13	○	2004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04.09.20	○	2007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3.05.09	○	2001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2.08.09	○	2004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2.08.02	○	2004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3.02.07	○	2005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2012.10.10	○	2006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6.02.05	○	2008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04.09.24	○	2005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2012.12.31	○	2004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04.10.18	○	2000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1.06.20	○	199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03.12.30	○	2006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2.11.07	○	2004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05.07	○	2004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04.10.08	○	2000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5.09.30	○	2004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013.07.25	○	2004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 시점, 기금의 규모는 자치구별로 다르지만,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시행중이다.<sup>49)</sup>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자치구의 조례에 (양)성평등기금 조성과 관련한 조항이 존재하는데, 예외적으로 강남구는 기금 조성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강남구는 관련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예산으로 단위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송파구 조례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이 아닌 ‘노인청소년여성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발견된다. 자치구의 기본 조례에 포함된 (양)성평등기금 용도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49) 조례명은 서대문구와 성북구의 경우에만 성평등 기본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자치구에서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조례들의 제정 연도는 2003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편차를 나타낸다. 강북구가 2003년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어 총 10개 자치구가 2010년 이전에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0년 이후 15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초구와 강서구가 2016년으로 가장 늦게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하였다.

【 표 II-18 】 25개 자치구의 성평등기금 관련 주요 내용 및 특성

기금 명칭	기금 용도의 주요 내용	특성 및 자치구*
(양)성 평등 기금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대부분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촉진 사업	용산구, 중랑구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대부분
	• 양성평등 관련시설,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	관악구, 영등포구, 종로구 / 동작구
	•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의 교육·연수 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사회참여, 여성발전 등 구체적 명시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복지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 다문화 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가족 지원 (성동구)
	• 여성단체의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봉사 (강동구, 광진구)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여성친화도시 (도봉구, 마포구)
노인청소년 여성기금 <sup>50)</sup>	• 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여성 세대주 창업자금 지원, 그 밖에 여성복지 관련 사항	송파구

주: 기금용도의 주요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자치구도 포함함

대다수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와 유사하게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촉진 사업’으로 명시한 지자체도 일부 있다.<sup>51)</sup> 또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도 다수 자치구의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양성평등 관련시설’이나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로 표현한 자치구도 일부 존재

50)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26조 6항에 따른 기금명으로 2016년 1월 18일 통합 신설되었다. 이하 2016년 이래 기금 사용액 및 조성액 등은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의 기금운용계획서 내용에 따라 제시된다.

51) 서울시 조례의 경우 ‘성평등 촉진 사업’으로 명기되어 있다.

한다.<sup>52)</sup>

기금의 용도를 모든 자치구가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sup>53)</sup> 사회 참여와 여성발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복지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봉사활동,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이르기까지 기금 용도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금명이 다른 자치구와 현저히 다른 송파구는 여성관련 용도로 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여성 세대주 창업자금 지원, 그 밖에 여성복지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자치구들은 지역 내 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심사한 뒤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서울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원금 규모는 적게는 5백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다양하다. 저금리로 인한 이자 수익 축소되면서, 지원금 규모마저 줄어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자치구에 따라서는 연도별 기금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2016년에 강동구는 “2014년 2천만 원 가량으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매년 3천만 원 내에서 기금을 활용해왔으나, 기금위원회에서 이자가 충분하지 않아 적립해둘 것을 권고”했고, 당시 이자 수익 대신 구비 1천4백8십6만 원을 들여 관련 사업을 지원했다. 같은 시기 영등포구는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15억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기금 지출을 자제하였으며, 기금으로 9억5천만 원을 모았다. 동대문구(8억7천만 원)와 종로구(4억1천만 원) 등도 기금을 적립하고 있던 실정이다.<sup>54)</sup> 가용 지원금 규모 감소에 따라 구비를 직접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자치구 별 기금의 조성 규모는 다음과 같다.

---

52) 전자는 관악구, 영등포구, 종로구, 후자는 동작구에 해당한다.

53)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의 교육·연수 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다문화 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 망라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54) 임계희 (2016.07.07.), 「서울 자치구 ‘양성평등기금’ 천차만별…마포구 19억2900만 원 ‘으뜸」, 『중앙일보』



표 II-19 서울시 자치구 (양)성평등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강동	조성액	14	10	11	9
	지원액	0	0	0	10
	누계	536	546	547	546
강북	조성액	15	41	18	18
	지원액	22	20	19	25
	누계	959	981	981	973
강서	조성액	30	14	26	26
	지원액	30	13	25	50
	누계	1,400	1,401	1,402	1,378
관악	조성액	53	16	17	16
	지원액	20	16	15	15
	누계	871	871	873	873
광진	조성액	22	11	9	9
	지원액	0	0	0	10
	누계	492	503	512	512
구로	조성액	20	14	14	14
	지원액	13	14	14	16
	누계	525	525	525	521
금천	조성액	10	8	7	7
	지원액	10	5	4	5
	누계	387	390	393	394
노원	조성액	13	10	11	10
	지원액	13	10	12	12
	누계	531	531	530	528
도봉	조성액	21	15	12	12
	지원액	22	21	0	0
	누계	886	879	724	763
동대문	조성액	190	16	166	19
	지원액	0	0	0	32
	누계	868	884	1050	1037
동작	조성액	24	21	18	18
	지원액	19	15	18	18
	누계	1,008	1,014	1,014	1,014
마포	조성액	45	66	145	138
	지원액	45	57	46	38
	누계	1,929	1,938	2,037	2,108
서대문	조성액	28	24	20	23
	지원액	29	25	35	30
	누계	1167	1,166	1,152	1,144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서초	조성액	511	1,022	1,169	55
	지원액	12	30	86	105
	누계	909	1,901	2,983	2,933
성동	조성액	8	7	5	5
	지원액	13	11	6	5
	누계	314	310	310	309
성북	조성액	30	13	14	63
	지원액	0	0	0	22
	누계	727	740	754	794
송파 <sup>55)</sup>	조성액	24	2,362	49	44
	지원액	32	231	333	202
	누계	1,049	2,131	1,847	1,689
양천	조성액	53	749	46	53
	지원액	50	38	25	45
	누계	1,861	2,572	2,593	2,601
영등포 <sup>56)</sup>	조성액	0 <sup>57)</sup>	27	19	13
	지원액	0	0	27	0
	누계	894	1000	992	1,003
용산	조성액	31	15	22	22
	지원액	31	21	20	21
	누계	1,048	1,046	1,044	1,045
은평	조성액	22	17	14	14
	지원액	22	13	11	13
	누계	903	906	909	910
종로	조성액	11	8	8	8
	지원액	0	0	0	0
	누계	412	419	417	435
중구	조성액	36	32	24	52
	지원액	33	25	25	24
	누계	494	501	501	529
중랑	조성액	14	11	9	8
	지원액	49	49	48	49
	누계	563	525	486	445

주: 영등포구 이외에는 2018년, 2019년 금액은 자치구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였으며(백만 원 이하 절사), 2015년-2017년 금액은 자치구 재정공시(결산)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

55) 2016년 회계연도 중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기금을 폐지하고 노인청소년여성기금으로 통합 신설 하였다.

56) 재정공시 결산 자료 상의 현황 제시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2018년 현황을 확인할 자료가 게시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내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영등포구의회 의안 검색([www.ydpc.go.kr/kr/assembly/bill.do](http://www.ydpc.go.kr/kr/assembly/bill.do)) 상의 기금 운용 계획 의결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양)성평등기금 조성 규모는 자치구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 (양)성평등기금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는 서초구이다. 2018년까지 (양)성평등기금의 누계가 20억 원 이상인 자치구 총 3개구이며, 기금의 규모는 서초(2,933백만 원)>양천(2,601백만 원)>마포(2,108백만 원) 순으로 크다. 그 다음으로 2018년까지 (양)성평등기금의 누계가 10억 원 이상 조성된 자치구는 총 7개구이다. 기금의 규모는 송파(1,689백만 원)>강서(1,378백만 원)>서대문(1,144백만 원)>용산(1,045백만 원)>동대문(1,037백만 원)>동작(1,014백만 원)>영등포(1,003백만 원) 순이다. 단, 송파구의 경우는 노인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통합적 기금 성격으로, 다른 자치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 기금 조성 현황을 통해 볼 때 드러나는 문제는 기금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기금의 폐지에 이른 것은 아니나, 기금 통합을 통해 “(양)성평등” 기금으로서 고유한 특성이 퇴색할 우려도 있다. “(양)성평등기금”이 “양성평등기본법” 및 각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는 의미가 보다 분명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중에서도 기초 자치단체의 기금은 중앙에 비해 재정적으로 훨씬 열악한 지역의 풀뿌리 여성단체를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금 운용 과정을 살펴보면, 기금 조성 과정의 정체, 기금 배분 방식의 불투명성, 지방자치단체의 보수화로 인해 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운용 방식 등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조성된 기금이 여성단체의 일부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그쳐, 단체 재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한국여성단체연합, 2018)<sup>58)</sup>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성평등기금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자치구의 기금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57) 백만 원 미만 111,270원으로이므로 절사하였다

58)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강화 및 성주류화전략 추진기반 내실화를 위한 과제로 성평등기금의 실질적 확보를 과제로 제안하였다. 즉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따라 성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를 생각할 때,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자치구 별 기금운용의 편차에 어떠한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2018년까지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에서 자치구나 중앙정부 기금과의 관계 등이 고려되지는 못한 데에는 자치구 기금 운용에 대해 서울시의 개입이 용이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도 분명하다.

### 3. 성평등기금 사업 수행 체계

일반 지방기금과 같이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성평등기금 등도 존재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앞선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sup>59)</sup>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이 폐지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독자적 기금으로 존치되었다는 사실은 기금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성향숙, 2016)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사업 수행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의 구체화에 달려 있다.

#### 1)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 체계

기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이 만들어진 시기부터 명확한 제도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20】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기금 관련 주요 조항 및 내용

조항	내용
제38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59) 그 이유는 첫째, 설치 목적의 중복성, 타기금과 사업내용의 중복성, 예산사업과의 유사성이 있다는 점, 둘째,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조항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8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과 같은 성평등 촉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서울시 내부 자료 참고)” 하에 운영되고 있다. 지원방식은 공고를 통한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및 성평등기금 사업 지원 단체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단체인지의 여부는 서울시 사업 추진 체계상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에서 판단하고 있다. 각 단체들이 성평등기금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지원 사업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지자체의 선행연구에서도 높이 평가되어 왔다(윤연숙·홍미리, 2017).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지원 절차 및 관련 주체는 다음의 [표 II-21]과 같다.

【 표 II-21 】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및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 절차

내용		담당
지원 사업 공고	홈페이지 공고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사업설명회 개최		
↓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 (현장 모니터링)	사업비 교부(2회)	
↓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평가자)
↓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평등기금 사업 공모 시행, 사업설명회 개최와 계획서 접수는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맡고 있다. 이어 사업 심사 및 선정에는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가 관여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과 평가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 서울시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즉 성평등기금 사업에 선정된 여성단체 및 관련 법인의 사업 운영 지원과 평가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업 선정 심사와 평가 관련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사업 선정 심사기준은 사업목적 및 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최근 1년간 여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을 포함한다. 개별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진행되고 있다. 이 때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아래 [표 II-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업 운영의 적절성, 예산관리의 적절성, 사업 효과성, 사업 결과 기여도 등이다. 개별 사업들은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90점 미만), B등급(70점 이상 80점 미만), C등급(60점 이

상 70점 미만), D등급(60점 미만)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D등급에 속하는 단체는 향후 성평등기금 사업 선정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성평등기금은 공모에서 평가까지 구조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 표 II-22 】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평가기준

(단위: 점)

영역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사업운영 과정 (50)	사업 운영의 적절성(30)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15)
		협력적 사업추진(5)
		사업추진의 적극성(10)
	예산관리의 적절성(20)	예산집행의 적절성(10)
		회계의 투명성(10)
사업 성과 (50)	사업 효과성(25)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10)
		사업목표 완수 정도(15)
	사업 결과 기여도(25)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15)
		사업의 지속가능성(10)

문제는 외견 상 갖추어진 체계가 사업 운영의 기준에 맞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현재의 체계에서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과연 현재 체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 장인 서울시 성평등기금 평가와 관련 정책 수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2)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총괄 담당자의 내부평가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매해 기금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 결과 보고서를 통해 기금 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해 왔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시점인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 변화가 일어난 2017년을 전후한 시기에 사업 운영자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23 | 2015~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총괄 담당자의 내부평가

구분	사업 선정 및 평가 개선	단체역량강화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증빙의 간소화 및 명확한 지침 마련</li> <li>- 기금 참여 단체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제출서류로 요구되는 회계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세금신고 등 지출증빙) 및 사업 실행결과물(자료집, 영상, 현수막 사진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및 제출서류 간소화</li> <li>- 회계 증빙 제출 양식 표준화: 단체별 개별 양식으로 제출되는 정산 증빙자료 양식의 표준화</li> <li>• 중간평가 방식 개선</li> <li>- 중간평가 시기까지의 회계 자료 원본 제출로 중간평가로 상반기 회계 평가를 마무리하고, 최종평가를 하반기 평가 성격으로 진행함으로써 평가 관련 업무 최소화</li> <li>• 최종평가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지원사업 수행 기간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사업 참여 단체 실무자의 젠더 감수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방식 개선</li> <li>- 사업 확정 후 워크숍 진행 방식을 사업 개시전 사업 심의와 함께 단체별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젠더감수성 강화 컨설팅으로 개선</li> <li>- 강의 방식의 워크숍을 활발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화</li> <li>- 워크숍 일정 사전 공지 및 단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횟수 조정</li> <li>• 사업 부진 단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li> <li>• 단체 간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활성화 지원</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지침 개선 및 평가 증빙 최소화</li> <li>• 기금 지원 사업 선정과 평가의 연계</li> <li>- 기금사업 선정을 서울시에서, 평가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함으로써 선정과 평가에 괴리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정위원과 평가위원의 상호 교차적 운영, 선정-평가 연계 시스템 구축</li> <li>• 단체 사업 수행 기간 조정</li> <li>- 서울시 회계연도 조정에 따라 단체의 실제 사업 수행 기간 축소(4-9월, 5개월에 불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업 공모를 앞당겨 실시</li> <li>• 중간평가 방식 변경</li> <li>- 평가를 최종평가로 일원화하고 중간평가의 회계 모니터링을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으로 대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사업 단체 인센티브 지원</li> <li>- 우수 사업에 대한 시장 표창 등 고려</li> <li>• 단체 간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li> <li>- 네트워킹 활성화 및 멘토-멘티 선정</li> <li>• 기금 지원 사업 자료 아카이브 구축</li> <li>- 기금 운영 사이트인 WFNGO를 통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오프라인 자료의 보존 계획 수립</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지원 사업 선정과 평가의 연계</li> <li>- 전년도 사업 평가위원이나 지원사업 운영기관 관계자의 사업 선정 참여</li> <li>- 전년도 사업 결과, 평가 지표 등 주요 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세무 신고 중심의 교육 탈피</li> <li>- 젠더 워크숍은 1회에 그치고 있으며, 단체 수요조사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은 세무회계에 머물고 있음</li> </ul>



구분	사업 선정 및 평가 개선	단체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관련 자료를 선정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선정 반영 체계 구축</li> <li>• 기금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 수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설명회 등에서 평가지표 등 공유</li> </ul> </li> <li>• 중간평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사업 수행 기간 7개월 이내임에도 2회의 중간평가 및 최종 평가 실시로 수행 단체의 부담 증가: 중간 평가 폐지 및 신규 참여 단체 중심의 현장 모니터링 실시</li> </ul> </li> <li>• 사업 예산 계획 자부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자부담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전무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지침 개선</li> </ul> </li> <li>• 홍보비, 활동비, 식비/다과비 총액 비율 설정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방식의 다각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개선 필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집행 평가는 2015년 대비 상승, 사업 기여도는 15년 대비 하락함(신규 참여단체 여성단체가 아닌 단체의 경우 특히 낮은 점수 기록): 젠더 교육, 컨설팅 등 강화</li> <li>• 단체 간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사례 공유 활성화</li> <li>- 공통 이슈 사업 진행 단위 간 협업체계 구축</li> </ul> </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선정과 평가의 연계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선정 검토 의견서 양식 개선: 검토 의견서에 젠더 관점 반영 여부 항목 추가,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위원회와 공유</li> </ul> </li> <li>• 예산 집행 지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비 항목 인건비 반영</li> <li>- 자부담 폐지</li> <li>- 강사료 기준 및 회의참석 수당 개선</li> <li>- 홍보비 총액 비율 폐지</li> </ul> </li> <li>• 사업지원체계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 참여 단체와 신규 참여 단체의 분리 선정 및 평가, 장기참여단체의 사업 성격을 고려한 예산 규모, 기간 등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젠더 관점 강화를 위한 강의 확대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실무자 성인지 감수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병행 운영: 성평등기금 온라인 커뮤니티(WFNGO)를 통한 상시 공유</li> </ul> </li> <li>• 기금 지원 사업 운영 프로세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 모니터링 위주의 중간 평가 폐지</li> <li>- 세무신고, 회계 교육 외 사업 수행 단체가 필요로 하는 홍보, 기획, 평가 등 다양한 교육 개설</li> </ul> </li> <li>• 네트워킹 확대를 통한 협업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간 사업 공유 프로그램 활성화</li> </ul> </li> </ul>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자는 사업 평가의 측면과 단체 역량강화 차원의 크게 두 영역에서 사업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해 왔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일한 사안에 대한 개선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먼저, 사업 평가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는 중

간평가 방식의 개선이다. 짧은 사업 수행기간에 비추어 볼 때, 중간평가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 수행기간은 계속해서 감소해 왔다. 2014년에는 2014년 3월에서 2015년 2월까지였으나, 2015년에는 2015년 4월에서 2015년 12월 11일까지로, 2016년에는 2016년 3월에서 2016년 12월 16일까지로 축소되었다. 그에 따라 지원 사업의 종료일 역시 기존에는 10월 31일에서 2015년 이후에는 10월 7일로 변경되었다. 이는 지원 사업의 수행 기간이 해당년도 4월~9월로 단 5개월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중간평가와 최종평가가 이어지면서 사업 자체의 내실화보다는 평가를 위한 회계 업무 등으로 인한 기관의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중간평가 대신 현장 모니터링과 상시적 상담을 통해, 사업진행 사항 검토와 예산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업 운영자의 제언에 따라 개선된 것은 아니다. 2018년 평가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지방 선거로 인한 사업 지체를 고려한 조치였다. 다만, 2019년 사업계획에서 중간평가가 아닌 현장 모니터링과 중간점검(4월~10월), 회계모니터링(10월) 등을 계획<sup>60)</sup>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문제제기에 따른 운영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 총괄 담당자 차원에서도 성평등기금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내용보다는 회계 투명성에 집중되었던 평가체계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재단에서 매년 작성하는 사업 결과보고서가 단순히 사업의 결과를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사업운영 전반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편 사업 결과 보고서에서 제시된 일부 제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제 사업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평가의 측면에서 사업 평가와 선정의 유기성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점이 계속해서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sup>61)</sup>

60) 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내부자료인 『2019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평가 착수보고서』에 따른 서술임을 밝힌다.

61) 이 연구의 착수단계에 참석한 서울시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검토의 의지를

사업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차년도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때 자칫 평가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을 서울시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체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단체 간 네트워킹 강화와 우수사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자료 아카이브 구축 등의 제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단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기금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역량강화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대신 참여하는 단체들 사이의 연결망을 강화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기존의 우수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2019년 시점까지 공모 주제 분야를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분류하고 있을 뿐, 지원 사업 신청 단체가 성평등기금 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 여부에 따른 구분은 선정 단계나 사업 추진단계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다. 2018년의 경우 기금 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단체가 총 73.6%이며 신규 참여단체는 26.3%에 불과하다. 지속 참여 단체의 비율이 높고, 그 중 5년 이상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전체 38개 단체 중 19개로 50%에 이르고 있다. 지속참여인지, 신규참여인지 여부는 사업 수행 능력이나 성평등기금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에 따라 단체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예산 집행 지원이나 세무 회계 교육은 일부 단체에게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성평등기금 사업의 고유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성평등 촉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사업 참여 단위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단체 간 연결망 강화와 사업자료 아카이브 구축 등은 서울시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참여 단체 스스로 변화되어 갈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보였다.

#### 4. 요약 및 시사점

여성발전기금에서 출발한 서울시 성평등기금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93개 단체에 166억 원 가량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총 38개 단체에 9억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 지원액은 9억 원으로 책정하여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사업 운영과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2019년도 이후의 사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는 서울시와 사업 평가기관, 그리고 개별 지원 사업 수행 기관이 함께 고민할 문제이다.

기금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즉 성평등 관점이 부족한 사업이 선정되는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한 지원을 통해 사업의 성격을 성인지적으로 견인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짧은 사업 기간 동안 각종 교육, 모니터링, 중간평가 등 많은 관리체계로 인하여 단체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단체마다 필요한 지원의 형태와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참여와 신규참여 단체를 구분하고,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참여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 사업 지원 및 평가 체계에서는 2018년까지의 사업 평가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표 II-24 】 2018년 대비 2019년의 사업 지원 및 평가 체계 변화

분야	2018년	2019년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관리·평가 (기금의 투명성·효율성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선정단체의 역량 강화·멘토링(기금 목적의 실질적 실현)</li> </ul>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젠더워크숍 1회, 세무신고교육 1회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단체의 특성에 맞게 젠더교육을 기초와 심화로 나누어 2회 진행</li> <li>사업 실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li> <li>세무신고교육 외 사전수요조사(4월 셋째주 예정)를 통해 홍보 등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기획 및 진행</li> </ul>

분야	2018년	2019년
현장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교육 진행</li> <li>• 현장모니터링 요원 1인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교육 및 중간점검 회의 진행</li> <li>• 현장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조사표보고서 개선</li> <li>• 2인 1조 현장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진행</li> <li>• 현장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내용을 단체에게 전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li> </ul>
최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내부 평가단 2인 외부 전문가 평가단 4-5인</li> <li>• 평가지표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기금 선정과 평가의 환류 체계 구축.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 중 1인 이상 성평등기금 평가위원으로 섭외</li> </ul>

출처: 안인숙 (2019), 『2019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평가 착수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 자료).

이와 같이 사업 선정에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는 향후 지원 사업이 “성평등 촉진”이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그에 따라 사업 평가에서 제일 낮은 등급만 선정 제외하는 현재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평가 증빙서류가 복잡하고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금은 일반 예산에 비해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반면, 운용에 대한 통제가 미약할 수도 있다(홍미영·조한나, 2016)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이 지나치게 엄정한 예산 지침이나, 잦은 회계 관리 모니터링 등 기금 지원 사업 참여 단체의 회계 업무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현재의 예산 집행 지침 개선을 통해 보다 유연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표 II-25 】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예산 지침 개선의 과제 (2018년)

구분	개선안
예산 항목 인건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안에 사업 운영 인력의 인건비 반영</li> <li>- 인건비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 활동비(운영비)상향 및 기준 개선</li> </ul>

구분	개선안
자부담 반영 및 홍보비 총액 비율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 10% 반영(권고 사항)폐지</li> <li>• 홍보비 총액 비율을 없애 자유롭게 다양한 홍보 활동 보장</li> </ul>
강사료 기준 및 회의 참석 수당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을 반영한 강사 기준 및 금액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간 금액 차 조정 및 단체 활동가에 대한 기준 마련</li> </ul> </li> <li>• 지나치게 긴 기준 시간 완화</li> </ul>

출처: 문기현·송유정 (2018), 『2018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평가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운영차원의 평가는 매해 사업 종료 시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2019년 시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그러한 평가가 단년도 평가에 머물러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서울시는 양성평등인가, 성평등인가의 논란 속에서 “성평등기금”으로 기금의 명칭을 분명히 하였으나, 그 이름에 걸맞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더불어 서울시 성평등기금은 서울을 배경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양성평등기금, 자치구의 관련 기금과의 관계뿐 아니라 민간의 여성기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관련 사업 등 다양한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다른 기금 사업과의 중복을 문제 삼기보다는, 다른 기금 사업과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를 고려한다면 기금 사업의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운영평가 및 정책 수요 분석

1. 조사 개요
2.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운영평가
3.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4. 요약 및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II

##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운영평가 및 정책 수요 분석

### 1. 조사 개요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운영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목적에서 출발한 이 연구의 앞 장에서는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운영 현황을 문헌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지원 사업 평가 기관 사업 운영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사업의 개선점을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실제 기금 지원 사업 참여자들이 평가하는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성평등 희망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에서 성평등기금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기금 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단체의 사업 담당자를 중심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2019년 현재까지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중 지속 참여 단체, 타 유사기금과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모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단체,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지속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2019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단체의 관련 사업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성평등기금 관련 전문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성평등기금 사업 평가 참여 전문가, 관련 자문회의 참석자,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유사기금 전문가, 여성학 및 성평등정책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본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는 명실상부한 “성평등기금”으로 기능해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고, 중앙정부, 자치구의 관련 기금, 민간의 유사 기금들과 관계 속에서 성평등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 표 III-1 】 조사개요

구분	조사 참여자	조사내용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 면접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 지속참여 단체 사업 담당자</li> <li>-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과 유사 기금 사업수행 경험 단체</li> <li>-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지속 참여 후 중단 경험이 있는 단체</li> <li>• 신규 참여 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장점</li> <li>- 중앙정부, 자치구 및 민간 관련 기금 사업 사이에서 발견되는 단점 및 한계</li> <li>- 기금 사업 운영 과정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li> <li>- 서울시 및 기금 사업 평가 기관과의 관계</li> <li>- 참여 기관 간의 연계 가능성</li> <li>-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참여자 확대 혹은 사업 목적의 구체화 필요성</li> </ul>
전문가 토크이 조사(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 위원</li> <li>• 성평등기금 사업 평가 및 자문 참여 전문가</li> <li>•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li> <li>• 여성학 및 성평등정책 전문가</li> <li>• 유사기금 전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성 검토</li> <li>- 성평등의 가치와 성평등 기금의 역할</li> <li>- 중앙정부 및 자치구 기금과의 관계</li> <li>- 기금 사업의 개선을 위한 제언</li> </ul>

### 1) 조사 참여자의 특성

첫 번째 조사 참여자 집단은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을 담당한 경험이 있거나 향후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총 15명이다. 조사 참여자 중 2019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총 13명이며, 나머지 2명은 2019년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 중 1명은 2018년에 소속 단체에서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을 담당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앞으로 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횟수는 5회 이상인 경우가 5명이고, 5회 미만으로 참여한 경우가 9명, 아직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1명이다.

조사 참여자 중 서울시 성평등기금 외에 유사한 민간기금이나 정부 보조금 사업 등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활동가는 9명이다. 나머지 6명은 직접 유사 기금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 등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2)</sup>

시민단체 활동가 경력은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참여자 중 활동가 경력이 없거나 5년 미만인 경우가 8명, 5년 이상인 경우가 7명이다. 활동가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사 참여자 중 경력이 가장 오래된 경우는 16년이며, 가장 짧은 경우는 4개월이다.

첫 번째 집단에 대한 면접조사는 2019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15명 중 7명은 개별로 만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8명은 총 세 번에 걸쳐 초점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책임자가 직접 해당단체를 방문하여 진행하였으며, 초점집단 면접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에서 진행하였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공하여, 연구책임자와 참여자가 함께 서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면접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녹취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응답자들에 대한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면접 중에 언급된 단체명과 이름은 모두 다른 문자로 대체하였다. 조사 참여자가 면접 중에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62) 조사 참여자들이 참여한 유사 기금은 민간 기금과 정부 기금, 해외 기금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민간 기금은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아름다운재단의 ‘교육영역기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둘째, 정부 기금 및 보조금 사업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행정자치부와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지원 사업’,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녹색서울실천공동사업’, 서울시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등이 있다. 셋째, 해외 기금으로는 오픈소사이어티(Open Society Foundations) 기금, 포드 재단(Ford Foundation)과 환경재단의 ‘포드 환경후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 표 Ⅲ-2 】 기금 사업 담당자 면접 조사 참여자 특성

사례	연령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유사 기금 사업 운용 경험	시민단체 활동가 경력
		2019년	총		
A-1	39	참여	5회 이상	경험	5년 이상
A-2	25	참여	5회 이상	비경험	5년 미만
A-3	35	비참여	5회 이상	경험	5년 이상
A-4	28	참여	5회 미만	경험	5년 미만
A-5	54	참여	5회 이상	경험	5년 이상
A-6	35	참여	5회 미만	경험	5년 이상
A-7	52	참여	5회 미만	경험	5년 이상
A-8	29	참여	5회 미만	비경험	5년 미만
A-9	29	참여	5회 미만	경험	5년 이상
A-10	39	참여	5회 미만	경험	5년 미만
A-11	44	참여	5회 미만	비경험	5년 미만
A-12	29	비참여	없음	비경험	없음 (진입고려)
A-13	42	참여	5회 미만	경험	5년 미만
A-14	32	참여	5회 이상	비경험	5년 미만
A-15	28	참여	5회 미만	비경험	5년 미만

두 번째 조사 참여자 집단은 성평등기금 및 성평등정책 전문가 집단이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3명이다. 먼저,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 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각각 2명과 4명이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2명, 여성학 및 성평등정책 전문가는 5명, 유사기금 전문가는 1명이다. 이 중 1명(사례 B-7)은 현재 서울시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금 사업의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조사는 첫 번째 집단과 마찬가지로 2019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 표 Ⅲ-3 】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여자 특성

사례	구분
B-1	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 위원
B-2	성평등정책 전문가
B-3	성평등정책 전문가
B-4	유사기금 전문가
B-5	성평등위원회 위원
B-6	성평등정책 전문가

사례	구분
B-7	성평등위원회 위원, 사업 평가위원
B-8	사업 평가위원
B-9	성평등위원회 위원
B-10	성평등정책 전문가
B-11	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 위원
B-12	성평등정책 전문가
B-13	성평등위원회 위원

## 2) 주요 조사 내용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담당자들과의 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취하였다. 면접에서는 첫째, 담당하신 경험이 있는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을 담당하신 시기 및 기간, 사업의 목적, 신청과정 및 추진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였다. 둘째,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해 활동가와 단체 차원에서 평가하는 구체적인 성과와 어려운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청취하였다. 넷째, 유사 기금 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비교하여,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섯째,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비구조화된 방식을 활용하였다. 성평등기금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1998년~2019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공모방식 및 평가 기관 현황, 2002년~2019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성평등기금 공모 분야별 주제, 2011년~2018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및 성평등기금 사업 지원 현황, 2017년~2019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선정사업 명단, 2018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평가기준, 재단에서 제작한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동워크숍 자료집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전반적인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분석 내용은 생동감을 주기 위해 참여자들의 ‘언어’를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내용의 맥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불필요한 내용들은 삭제하고 ‘중략’으로 표시하였으며, 내용이 불분명한 지시어의 경우에는 그 지시어가 의미하

는 바를 중괄호( )로 묶어 부가적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 2.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운영평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르면 성평등기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서울시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 사업, ②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③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④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한 단체에서 해당 사업 담당 활동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해당사업을 통한 몇 가지 주요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의 성과에 대해 1) 단체 및 활동가 지원을 통한 성평등 가치 구현, 2)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 강화와 활동영역 확장, 3) 성평등 의식 확산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단체 및 활동가 지원을 통한 성평등 가치 구현

#### □ 사업의 규모와 주제에서 실험적 시도의 가능성 지원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기금 사업에 공모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성평등 증진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례 A-11>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울시 성평등기금은 20여 년간 지원 사업을 지속한 기금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기금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실험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물리적 버팀목이 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여성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기금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효용성이 있다]” <사례 A-2>

“[기금으로] 사업자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사례 A-9>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는 꽤 충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사례 A-8>

“[재정 도움은] 약간 됐죠 뭐. (중략) 많이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좀 그래도 서울사람들을 엮어내는 데는 좀 도움이 되었던거 같아요.” <사례 A-7>

서울시 성평등기금은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2년 동안 중단 없이 매년 지원이 이어져 온 안정적인 운영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여성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매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시도하거나, 소규모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량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사업 기획할 때 기금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제일 큰 거는 항상 재정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끌어오는 돈들이 기금 아니면 후원금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요즘 기업후원금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상황이 현실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기획’을 통해서 이만큼의 기금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 안정성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공신력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성평등기금 사업에 해마다 거의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잘 맞물리면 그렇게 또 고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례 A-13>

“저희는 작은 단체고, 상담사업 외에는 다 모두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매년 공모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중략) 그 중에 하나가 성평등기금, 원래 다른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도 계속 했었고, 저희는 좀 꾸준히 지원을 했었어요.” <사례 A-9>

기금 지원 사업은 참여하는 단체가 사업의 주제나 방식을 직접 결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기획” <사례 A-13>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재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례 A-13>은 기업후원금이나 다른 기금들은 일회성이거나 목적성 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꾸려나가거나, 단체의 기획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

지 않다고 밝혔다. 그에 반해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기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획과 실행을 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는 성평등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참여단체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활동이 단체 내부에 머물지 않고, 서울 전역에 성평등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 사업의 중요한 강점으로 볼 수 있다.

#### □ 새로운 의제 발굴에 기여

여성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는 성평등 활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제를 실험하거나, 저변확대를 위해 뉴미디어(new media)<sup>63)</sup>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고자 할 때에도, 성평등기금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이 사회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시민단체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할 때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digital) 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시민단체에서도 대중과의 접점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뉴미디어와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영상물 제작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단체들에서는 영상물은 확산의 범위가 넓고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진짜 대중 시민”(〈사례 A-2〉)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평등 인식 확산에 매우 유용한 매체로 평가하고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하면서 재밌긴 하거든요.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아젠다(agenda)를 갖고 실험도 하고 그게 데이터가 쌓여서 조직 내에서도 더 심화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사례 A-6>

---

63) 뉴미디어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전달매체(傳達媒體)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전화 등의 기존 대중 매체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매체이다. 고속의 통신망을 중심으로 각 기업 및 가정에 설치된 유무선 디지털 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전달 및 교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신문, 방송 등의 기존의 정보 전달 수단을 대신하여 1980년대부터 일렉트로닉스(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발달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전달 수단을 말한다. 뉴미디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기존의 매체들의 특성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더 편리하고 진보된 기능을 가지는 미디어이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온라인 신문, 블로그, 위키(위키피디아 등),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등) 등의 웹 사이트를 들 수 있다(두산백과, 2019).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podcast)인 <어들의 당나귀 귀> (시즌 3) 역시 2017년 성평등기금의 지원으로 제작되었다.<sup>64)</sup> 그 외에도 서울시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온라인 성평등 교육콘텐츠 애니메이션 제작’, (사)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여성운동, 어디까지 알고 있니?’, 나무여성인권상담소의 ‘<성평등 제작소>의 젠더 콘텐츠’, (사)청소년문화예술센터의 ‘청소년 성평등 교육 채널 <이퀄보이스 방송국> (Equal Voice)’ 등이 기금을 받아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성평등기금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매년 하는 건 아니고, 16년도 쯤에 한번 받았었고, 잠시 쉬었다가 이번에 영상콘텐츠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기금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A-9>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일반적인 활동의 전문성에 더하여 관련 영상물을 제작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영상물 제작에는 성평등 활동과 별도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많은 촬영비와 편집비 등이 들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시민단체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이 때 성평등기금이 성평등을 주제로 한 영상물 제작 등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2019년 기금의 지정공모 주제로 ‘성평등 콘텐츠 개발(제작)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분야가 신설되면서, 영상물 제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민하던 단체들이 이 분야에 응모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 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기여

기금은 재정적인 기반이 없는 신생 모임이나 단체가 성장하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성폭력 문제와 같이 시급성이 높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의제를 다루기 위해 모임이나 단체가 개설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기금은 단체에서 시민들의 수요가 시급한 핵심적인 사업을 이어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64)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어들의 당나귀 귀>의 ‘시즌 1’은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으며, ‘시즌 2’는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다. ‘시즌 3’은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후원을 받았다.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A-4>는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여성과 소수자 인권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평등기금 등의 같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금이 시장이나 정부의 사회정책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영역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년에 참여할 때는 일단 저희 단체가 뭐 오늘내일하는, 자원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받는 게 되게 그 단체 내부적인 자원을 만드는 차원에서 중요했었고요. (중략) 사실 지금의 세상에서 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어, 돈이 어디로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힘을 갖느냐가 되게 결정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과 소수자 이런 인권분야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 분야에서는 자력으로 돈을 가질 수는 없어요. 성평등해지기 위한 것을 어떤 이 시장경제에서 팔 수 없잖아요.” <사례 A-4>

<사례 A-5>가 소속된 단체는 2005년에 동아리 형태로 처음 만들어졌으나, 2009년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가를 받았다. <사례 A-5>는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 성평등기금을 통한 사업들이 단체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해당 단체에서는 2014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을 시작으로 매년 기금신청을 통해서 강사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강사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다. 기금 지원을 통한 강사양성과정에서 배출한 경력단절 여성들은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강사활동을 이어나가거나, 협동조합을 만드는 등 사회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강사양성과정에서 배출한 강사들이 이후에 기금을 받아 진행하는 강사양성과정의 강사로도 참여하고 있다.

#### □ 단체 간 연대 및 연결망을 통한 서울시 성평등 문화 확산의 기반 강화

기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단체와 활동가의 역량이 강화되고 활동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여러 가지 강연이나 토론회, 말하기 대회 등을 통해서 활동가들이 여성문제의 현안을 이해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또한 그동안 여성단체에서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노년층 여성, 비혼 여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경험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고, 교류를 넓혀나가면서 단체와 활동가 차원에서 여성들의 교차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하였다.

“저희 안에서도 [사업에서 다루었던] 대상들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좀 높아진 것도 있고, 그것들이 저희 다른 사업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왜냐면 저희 뭐 이런 비혼 의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 그 뭐 CSW나 이런거 갈 때도 뭐 녹여내기도 하고, 다른 뭐 자유권 협약이나 뭐 이런 거 쓸 때도 그때 만들었던 요구안 같은 것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 요구하는 그런거에 엮어서 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행사하면서 되게 많은 전문가분들도 만나고, 본인 이야기들을 이제 좀 대안적인 삶의 방향을 꾸려나가는 사람들도 우리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람도 많이 남고 내용도 남고 그렇긴 했던 거 같아요.” <사례 A-2>

관점의 확장은 기금 사업뿐만 아니라 단체의 다른 활동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차원에서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도 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들을 서울시나 중앙정부 등에 제안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완전 역량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요. 왜냐면 어, 뭐랄까 저희는 역량강화비용을 책정을 하고 있고 이제 어 뭔가 초청 강사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실무진도 같이 듣죠. 되게 괜찮은 강의도 많이 듣고, (중략) 실무처리 과정에서도 배울게 있으니까. (중략) 성평등적인 관점은 아무래도 역량강화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고, 그리고 포럼 진행할 때도 뭐 어쨌든 여성주의를 베이스로 한 포럼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런 실행단계에서도 참여를 하니까 계속 어떤 성평등 관점을 갖고 계속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확실히 내가 뭔가 성인지적인 무언가에 참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어요.” <사례 A-11>

기금 사업의 과정이 실제로 단체들이 연결망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사례 A-9>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단체의 담당자들과 연결망을 확보하였고, 그 중의 한 단체에서 과거에 <사례 A-9>가 소속된 단체에서 진행했던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여 공유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사례 A-2>는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 방안들이 기금 사업을 꾸려나가는 데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가능하다면 중간점검 이후에도 공모 주제별 모임을 추가로 개설하여,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들과 만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데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공동워크숍에서] 얼굴 뵈고, 서로 어떤 사업하는지 알고, 명함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안면이 터요. 안면을 트고, 저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저희가 무슨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데, ○○에서 몇 년 전에 그 사업을 해서 잘 되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면 트신 분들끼리 나중 가서 연락이 되거든요.” <사례 A-2>

성평등기금 사업을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연결망을 확장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A-3>가 소속된 단체에서는 2018년에 성평등기금으로 개최한 사업을 20여개의 여성 단체들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 연대체에는 최근에 생겨난 소규모 모임도 포함되어 있어, 기금 사업 참여단체뿐만 아니라 신생단체의 연결망 확대에도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활동가는 여러 단체들과 공동개최의 형태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단체의 활동들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연대의식도 성장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 20개 정도? 단위를 모아서 공동주최를 했었거든요. (중략) 요즘 활동하고 있는 여성주의 모임이랑 같이 연대를 해서 행사를 준비했었어요. 그 단체들이 각각 다른 이슈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즐겁고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중략) 저희가 공동주최긴 하지만, 그 분들이 다 자기 역할을 맡아서 같이 축제를 준비한거였거든요. 다들 열심히 해주셨어요.” <사례 A-3>

다른 단체들과의 연결망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나 참여자들과의 연결망 역시 강화되고 있다. 기금 사업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전문가나 강사와의 관계는 해당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단체나 활동가가 다른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망이자 지지기반이 되기도 한다.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는 사회운동은 결국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행사하면서 되게 많은 전문가 분들도 만나고, 본인 이야기들을 이제 좀 대안적인 삶의 방향을 꾸려나가는 사람들도 우리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한테도 사람도 많이 남고, 내용도 남고 그렇긴 했던 거 같아요.” <사례 A-2>

“성과라는 건 어쨌든 교육사업도 다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돈 걱정 안하고 강사 풀도 우리가 또 뭐랄까 한번 강사는 영원한 강사잖아요? 그런 걸 확충하는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죠.” <사례 A-7>

“저도 개인적으로도 네트워크가 더 탄탄해진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사례 A-13>

기금 사업을 통해 단체들 간 연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사업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활동가들은 기금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업을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연결망을 넓히고 연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단에서는 기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기금 사업 지원분야별 그룹모임 및 네트워킹’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분야별로 선정된 단체들의 활동가들이 함께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망을 확대해 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상호 학습 효과 또한 기금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단체들의 역량강화는 개별 단체의 사업에 영향을 미쳐 시민 일반의 성평등 인식 제고로 이어지는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 □ 서울시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활동의 인지도 제고

서울시 성평등기금은 서울시라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제공한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체들에 따라서는 ‘서울시 성평등기금 후원’을 명시하는 것은 단순히 기금의 출처를 명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단체들은 기금 사업을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서울시 성평등기금 후원’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서울시에 공문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까지 활용하고 있었다.

“이 뭔가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뭐뭐뭐’를 가져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면접자: 공신력이 있다.] 그쵸. 그래서 사업을 받을 때도 서울시 타이틀을 가져가는 게 다른 분들한테 설명하거나 참여자를 모집할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단체를 죽이고 서울시를 띄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마을 분들이랑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하면 약간 솔깃하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편이죠.” <사례 A-9>

“아무래도 결과물이 나왔을 때 지원, 후원해가지고 땡땡 지역 했을 때도 사람들이 인식 하는 게 여기서 만의 활동이라고 하겠지만, ‘서울시 성평등기금 후원’이라고 딱 적혀 있으면 그 서울시가 주는 공신력도 있고, 그 기금을 따냈다고 하는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데도 단체에 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사례 A-15>

특히 아직까지 인지도가 높지 않은 단체는 홍보하는 기금 사업이 ‘서울시 성평등기금 후원’ 임을 더 강조함으로써, 단체와 해당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함께하는 사업이다’ 라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단체 이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국가 혹은 시의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라는 것을 표방하는 거니까 그거자체로써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사례 A-13>

기금 사업 참여자들은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참여가 여성주의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었다. 서울시라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지원은 여성주의 활동에 대한 공적인 의미를 (재)확인 하도록 하여 활동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변인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가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조금 더 공식적인 색을 갖춘다 해야 할까? 공적인 이름을 띠고 있기도 하고. 그렇고 좀 더 뭐랄까 사적이기 보다는 공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 아무래도 뭐랄까 자꾸 되게 작은 여성공동체에서만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게 좀 확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넓히고, 서울시와 같이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그거를 조금 조금씩 실현시키는데 기여를 해서 서울시 성평등기금을 신청하신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례 A-11>

소규모의 모임이나 인지도가 낮은 단체들이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을 모으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낮은 인지도로 인한 공신력 부족에 있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부족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생의 관계를 형성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서울시가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작년에 제 룸메이트가 제가 했던 거의 사업 대체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뭔가 반응이 아 서울시에 서도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해주는 구나 이런 거에 좀 신기해했던 거 같고. 그런 성평등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서울 기점으로. 그 사람들이 지지도 주변에 못 받고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쨌든 기금도 지원을 하고 하는게 어쨌든 뭔가 공인된 그런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는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 싶고.” <사례 A-2>

시민들의 성평등 인식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서울시가 성평등 도시로서 위상을 확보해 가는 것은 단지 기금 사업만의 목표는 아니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여러 시민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평등의 가치를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사업 참여를 통한 성평등 의식 강화와 활동의 확장

활동가들은 기금 사업을 통해 참여한 단체 회원이나 일반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 인식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기금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 의식이 강화되었고, 활동가로 활동을 이어나가거나, 성평등 강사 등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등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성교육 마지막 시즌에 서로 소감 같은 거 나누거든요? 그 때 소감 말해주 시는데 자기 경험과 연결시켜서 이런 이런 게 분명히 달라졌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다, 이 교육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내용 중심으로 평이 쪽 나오는데, 물론 그 자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느껴질 때 되게 많이 힘을 받기도 하고, (중략) 또 일상 생활 모니터링에서는 실제 몇 가지를 바꾸는 이런 변화들을 직접 느낄 때, 되게 보람 같은 거를 느껴요. (중략) 실제로 활동들이 아주 작지만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되게 많이 동기부여나 임파워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례 A-8>

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교육과정이나 말하기 대회 등을 통해 참여한 회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가들은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능력이 높아졌으며, 그에 따라 기금 사업에 대한 호응도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고 전했다. 기금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이나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는 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한 보람과 동력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너무도 좋아하세요. (중략) 영화보고, 엄마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아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거를 영화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강좌들을 같이 하기는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되게 예전에 비해서는 트여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얼굴 보이는 것도 이번엔 영상물 제작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자기들 얼굴 오픈 이런 거 안 하세요. 예전에 방송 같은 거 보면, 다 모자이크 처리 이러거든요. 저희는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얼굴을 내놓고 아! (중략) 당당히 밝히시는 거죠. 그만큼 저희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 A-10>

기금 사업에 참여한 후에 시민들은 주변인에게 소개해 함께 기금 사업에 참여하거나, 단체 활동가로 전환하기도 한다. <사례 A-8>은 소속된 단체의 성평등기금 사업에 “시민으로 참여하였다가 활동가가 된” 경우이다. <사례 A-5> 역시 기금 사업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가, 단체의 회계담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사례 A-11>은 사업에 참여한 회원이나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높은 만족도와 더불어 활동가로 활동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가진 회원이나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단체에서 이 사업은 꽤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는데, 담당자는 이번에 제가 처음이에요. 이전에 이 사업에 시민감시단 시민으로 참여하다가 활동가가 되었고, 작년에는 주 담당자는 아니고, 주 담당자랑 같이 참여하다가 이번에 새로 주 담당자가 되었어요.” <사례 A-8>



“규모가 있는 자리에서 되게 한 강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페미니즘 아니고 수업을 많이 들어왔는데, 뭔가 이 포럼은 그런 서울시 뭔가 네임밸류 있는 기금을 갖고도 이제 뭔가, 작은 목소리까지 낼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되게 좋다. 그래서 ‘다음에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뭐랄까 활동가단으로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서 아, 계속 해야 하는 건가. 그런 반응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사례 A-11>

성평등기금이 단체 사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에 공감하는 활동가를 유입하는 경로를 제공하는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민들이 기금 사업에 단순히 참여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통해 삶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 행사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런 단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어, 나 이런 거 받았었다.’ 라고 하면서 일상 속의 대화의 소재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에서 너무나도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 중에서 정말 관심 있는 분이 활동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중략) 실태조사를 현황파악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에 자원 활동가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좀 선순환으로 흘러가서 너무나도 고맙게도 후원자까지 해주시면 제일 최고고” <사례 A-15>

교육사업에 참여한 후에 성평등 강사나 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역사 전문해설가 등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A-5>가 소속된 단체의 경우에는, 기금으로 강사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때부터 면접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이수 후에 실제로 강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참여자로 선정하고 있다. 기금 사업을 통해서 시간제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사회적 기업 인증이 저희는 ‘일자리 제공형’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이 회사를 처음 만든 분들이, 여성인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도 비영리 민간단체가 저희가 일자리 제공형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분들을 위주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인력양성을 거치신 분들은 어쨌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집에 계시던 분들이 다 나와서, 이 비슷한 일을 하던 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던지 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사례 A-5>

일자리 제공형 사업이 성평등기금 사업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sup>65)</sup> 하지만 그렇게 생긴 일자리 역시 사회적 의미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성과 자체를 쉽게 폄훼할 수는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수행되는 사업과 성평등기금에서 제공되는 사업이 어떻게 다른 가치를 지향하고,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성평등 의식의 사회적 확산: 참여와 제안의 활성화

기금 사업에서 개최한 토론회나 말하기대회 등에는 단체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나 말하기대회 등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획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성평등 의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페미니즘 리부트(feminism reboot)’<sup>66)</sup> 움직임 이후로 여성들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례 A-13>이 소속된 단체에서 개최한 강연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참여하였으며, 매 강의마다 평균 7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여성학회에서 기금을 받아 2019년 5월에 개최한 대학생 포럼의 경우에도 총 참석 인원이 160여 명 정도이다. 참석인원도 많고, 논의도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학회에서 기금을 받아 매년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페미니즘 연구-활동가 여름캠프’의 핵심 참여인원도 12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기금 사업이 해당 의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5)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평등기금사업이 일자리 제공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금 평가에 참여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66) 페미니즘 리부트는 2015년을 전후로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에서부터 메르스 갤러리(메깅)의 미러링 스피치(mirroring speech) 운동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러나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흐름의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손희정, 2015: 14).

“작년에는 평균 70명 이상이었던 것 같고요. 그 강의에 오셨던 상황이고. 연령대는 20대부터 30대, 40대 다양하게 오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설문조사 했던 거를 보면 어, 저희가 이걸 기획했던 그 단계에서 얘기했던 단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판 안에서의 여성들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원래도 좁았지만, 거의 더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것을 좀 해결하자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 진행을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걸 좀 더 생생하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평가가 좀 좋았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올해도 연장선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인거고, 그러다 보니 저희 내부에서도 이 기금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해서 하나의 브랜드처럼 해서 진행을 하자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거죠.” <사례 A-13>

<사례 A-4>가 소속된 단체가 2018년 기금을 받아 개최한 토론회에는 약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사례 A-4>는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해당 토론회로 인해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유사한 기획의 다른 토론회가 더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체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면서 계획했던 목표를 “거의 120%”달성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기금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자료집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육현장에서 토론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지침서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들어진 자료집 같은 것들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교육현장에서도 이 자료집을 읽고 토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궁금한 거 있을 때 이 자료집을 봐라 라고 하면 이제 된다던가 라는 식으로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레퍼런스로 많이 쓰이는.” <사례 A-4>

최근에는 영상매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사업을 통해서 성평등 의식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금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영상물이나 팟캐스트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다. <사례 A-2>가 소속된 단체에서 기금을 받아 2018년에 제작한 영상물 역시 최근까지도 댓글이 달리거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확실히 그건 있었어요. 어쨌든 영상물이 남았잖아요. 작년 프로젝트에서. 근데 그게 지금까지 SNS랑 유튜브에 계속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확실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영상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기로 한 것도, 작년에 영상 만들었던 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남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걸 진짜 대중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례 A-2>

<사례 A-11>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기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주민들과의 세미나나 영화제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단체가 위치한 자치구와 서울시에 새로운 성평등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당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 A-2>가 소속된 단체에서는 2018년 기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단체에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상황의 여성들이 어떤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는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책제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요구안’의 형태로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거쳤다. 해당 단체에서는 앞으로도 성평등기금 등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정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특성

기금 사업 참여자들이 평가한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업 진행과정에서 민과 관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둘째, 참여하는 단체의 기획과 고유성을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롭고 선도적인 성평등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소규모 단체의 접근성도 보장된다. 넷째, 참여하는 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한 지원 규모를 갖추고 있다.

## □ 좋은 거버넌스의 예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사례 A-1>은 “제가 경험한 운동의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좋은 예이기도 하고 오래된 예”라고 표현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기금 사업을 지원하는 전담인력과 조직이 배치되어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업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기금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이 여성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둘째, 사업 수행과정에서 단체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사업 내용에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려고 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에 따라 민과 관이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매력은 아까 말한 일단 기금의 규모가 안정적이고, 이런 여성아젠다에 대한 호의적인 이런 게 좋고, (중략)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실행집단에서의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적은거지. 진입장벽이 낮음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략) 신생 조직과 누가 말하는 이룰테면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리고 어쨌든 관리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수용적이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훨씬. (중략)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관리위임을 용역을 받았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최소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의 관점도 검증됐고, 기본적으로 호의적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어떻게 대해야한다 라는 태도 이런 게 좀 잘 갖춰져 있다고 봐요.” <사례 A-1>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진행하잖아요. 회계를 다하잖아요. 그런데 성평등기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계속 일하는 사람들을 이게 워크숍이나 상반기 하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거는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다 반영이 되나 봐요. 그러가지고 되게 많이 다른데 예를 들자면 강의를 했어요. 강의 확인서에 그 분의 인적사항 쓰고, 그 분의 사진 찍고 그거를 다 첨부하고, 다른거 또 원하고 별거 다 원하는데, 여기는 서류가 간단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그거를 조금, 소통을 하면서 조금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사례 A-5>

“저는 다른 기금은 담당해보지 않아서, 운영 상의 비교를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다만 강사로 조정이라던가, 제가 알기로 이번 해에 회의 사진도 첨부하지 않게 변경된 것도, 사실 그 이전 사업에서 평가가 있었고, 그게 제안해서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평가에 대한 반영을 합리적으로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거는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잘 받아들여지는 편이라던가.” <사례 A-8>

둘째, 서울시 성평등기금은 참여하는 여성단체의 기획과 고유성을 보장하는 기금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례 A-6>은 성평등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주제들이 다른 기금이나 보조금 사업에서는 쉽게 선정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면서, 서울시 성평등기금은 선도적인 여성주의 의제에 열려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고, “적어도 실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아직까지 기금 사업에 참여해본 적은 없지만 향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사례 A-12>의 경우에도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기금 규모가 크고, 여성 이슈에 포커싱 되어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그룹에게 호의적인 기금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여기[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가 조금 더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 사업을 많이 본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주는 공문과 사업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분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설명하는 것부터가 사실 난관이거든요. (중략) 확실히 여기가 성인지 감수성이 있고,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건지 설명을 해도 받아들여주고 소통하는 데에 도움을 받죠.” <사례 A-9>

“[저희가 진행한] 행사는 성평등기금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중략) 다른 지원 사업에서 좀 [선정]되기 어려운. 여성주의 페미니즘의 색깔이 짙은 사업들을 주로 성평등기금 사업에 넣고요 하는 거죠. (중략) 성평등기금은 특별하게 지역에 풀뿌리 여성주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성 건강사업이라던가 지역에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기가 훨씬 좋은 기금이거든요.” <사례 A-3>

“어쨌든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은 이거 밖에 없긴 한거 같아요. 다른 데는 카테고리가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별로 없더라고요.” <사례 A-7>

“우리는 거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 사업에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쪽은 그렇게 하면 태클을 걸어요. 왜 강사양성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쓸 거야? 그런데 성평등기금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아 필요하지. 이렇게 달라요. 우리를 대하는 측면이 달라. (중략) 저희 같은 조그만 단체들은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느낌이 있는데, 성평등기금에서는 그렇게 안 봐줘요. 그래서 좋아요.” <사례 A-5>

이와 관련하여 <사례 A-13>은 기금이 아닌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던 여성영화제가 최근에는 문화제로 변경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단체의 기획과 고유성을 지

킬 수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저희가 최근에 지역 여성영화제들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화를 드리고 연락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제면 영화제지 왜 여성영화제냐?’라는 이야기를 정말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얘기되어 오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영화제 같은 경우들은 그냥 문화제 이름으로 여성영화제가 없어지고 문화제 형태로 그렇게 와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있었던 여성영화제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런 기금이 존재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례 A-13>

마지막으로 기금의 규모가 안정적이면서도 소규모 단체의 접근성도 높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중요한 특징이다.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경우, 기금 사업의 신청자격을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정하고 있어, 등록된 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실제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비율 역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보다 높은 편이다.<sup>67)</sup>

“저희는 법인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풀뿌리라서 공고 낼 수 있는 선정기준에 비영리 법인, 등록된 단체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성평등기금의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조금 약해서 편하게 접근하기 좋아요.” <사례 A-9>

“여자가 하는, 여성으로 이루어진 단체에 대해서, 그런 위축감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다 비슷비슷한 데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선정된거 보면 아주 큰 단체들이 있는게 아니라, 다 저희랑 비슷한 단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아니거든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큰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 모르는 아주 조그만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에 그런 데가 많이 기금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좋은 거 같다고 했어요.” <사례 A-5>

67)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 성평등기금과 유사하게 공모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이다. 이 보조금 사업의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의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에 선정되는 단체는 전국단위의 사단법인이 대부분이다(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공모사업 공지사항 [https://wsp.mogef.go.kr:444/wngonet/home/ccb/notice/GCH\\_Notice.do](https://wsp.mogef.go.kr:444/wngonet/home/ccb/notice/GCH_Notice.do) (2019.8.21. 접속)).

##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양)성평등기금과의 비교

사업 참여자들은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에 참여한 이유로 ‘기획의 자율성’과 ‘적당한 규모’를 꼽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과 자치구 단위의 성평등기금과 비교해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례 A-3>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단체협력 공모사업에 대해 “원하는 사업상이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단체에서 추진하려는 사업과 맞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표 III-4 】 2019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사업 계획

주요항목	세부사업내용
가족기능강화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사업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안내 [http://www.mogef.go.kr/io/ind/io\\_ind\\_f037.do](http://www.mogef.go.kr/io/ind/io_ind_f037.do) (2019.8.21. 접속)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은 특정 목적성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의 2019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위의 [표 III-4]),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은 ‘가족기능강화’와 ‘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라는 특정 목적성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한부모·다문화가족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취약계층 여성을 지원하는 시설의 운영비 등에 활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 성평등기금과 유사하게 공모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이다. 2019년의 공모분야는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 ‘여성사회참여확대’, ‘여



성폭력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다. 이 보조금 사업의 2019년 총 예산은 3억6백만 원으로(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규모의 1/3 수준이다. 또한 2019년에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20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전국단위의 사단법인이다.<sup>68)</sup>

<사례 A-1>은 자치구 단위의 성평등기금의 경우에도 지속 참여단체들이 계속해서 선정되는 경향이 있어 신규로 참여하는 단체가 기금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시 차원의 기금은 “구민보다는 넓고 전국민보다는 좁은, 특정 대상이 정해져있고, 그 대상의 범위가 생각보다 꽤 넓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을 기점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시 차원의 예산을 받게 더 사업하기 수월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사례 A-2>).

이에 대해 <사례 A-1>은 “서로 뭉치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이나 정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비용의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성평등기금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대부분 이 사업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인력을 보유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체 사무국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국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역량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 단위의 사업은 사업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딱 서울시가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면에서도 그렇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점에서 딱 그 중간 지점”(<사례 A-15>)에 있는 기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3.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 1) 행정 간소화와 예산 자율성 강화

기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나 단체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부담과 예산 제한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사업 참여자들은

68)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공모사업 공지사항  
[https://wsp.mogef.go.kr:444/wngonet/home/ccb/notice/GCH\\_Notice.do](https://wsp.mogef.go.kr:444/wngonet/home/ccb/notice/GCH_Notice.do) (2019.8.21. 접속)

‘서울시 위드우리(withWoori) 보조금관리 시스템’(이하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통한 행정 처리의 부담이 매우 크고, 예산을 제한하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 행정 간소화: 회계 시스템 개선

사업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증빙서류로 만드는 작업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을 각각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매우 큰 부담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금관리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시스템으로부터 자동 로그아웃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때에는 시스템의 구성 상, 처음부터 새롭게 입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사례 A-8>은 보조금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앞 단계에서 입력한 자료들로 ‘총계정원장’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작성해서 파일을 올리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지출결의서를 한글에서 작성해야하고, 우리은행에서 또 작성해야하고, 그걸 왜 두 번이나 해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례 A-10>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든 성평등기금이든 어쨌든 시스템에 다시 올려야 되니까 두 번 삼사 이삼사중의 이게 있었고 다뤄야 되는 그 각각 증빙해야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이 서류를 챙기다보면 하루가 다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간소화되면 좋겠다 했었고,” <사례 A-6>

“그 영수증빙이요. 하나하나 다 찍어서 올려야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고, 큰.. 모르겠어요 조금 규모가 큰 단체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8명 정도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늘 맡는 담당자가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을 늘 맡지 않아요. 늘 맡을 수 없고, 거의 매년 자기가 맡는 포지션을 바꿔가고, 담당하는 기금처도 바뀌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면 할수록 익숙해져서 전문가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회계, 증빙 같은 것들이. 같은 사람들이 매년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같이 작은 단체들은 그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아요. 각자가 자기회계를 맡는데, 물론 회계 담당해주는 선생님이나 또 계시지만, 매년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새로 배워야하는거고, 그러다보니까 다들 피하죠. 서울시. (중략) 다른 데서는 그냥 영수증을 붙여서 스캔해서 연말에 한번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사례 A-3>

“회계의 복잡성과 행정의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이를테면 좀 안정화되어있고 잘 성숙한 조직들은 이 사업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략) 그 복잡성이 우리 에너지를 너무 소모시키니까 좀 이렇게 성숙한 데는 다 다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사업의 전체 취지에 부합하는 질적인 부분이 하향 평준화되는 부작용? 요게 사실 성평등기금에서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는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저는 완전 체감했거든요?” <사례 A-1>

이러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여성단체들 중에는 정부 과제를 일체 받지 않거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더라도 그 규모를 제한하는 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례 A-1>은 회계와 행정처리가 복잡하고 부담이 높아지면서 체계가 잘 잡힌 단체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신생인 단체들만 기금 사업에 몰려 기금 사업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 □ 예산 규정 현실화와 자율성 강화

기금 사업에서는 예산의 항목을 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사업진행비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 한도액을 지정하고 있다.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이 없지만, 사업을 이끌어가는 담당자의 인건비 책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둘째, 홍보비와 인쇄비, 광고비 등을 포함한 홍보비의 경우에는 사업비 총액의 20%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활동비는 교통비, 초과근무 식대, 단순인건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 총액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진행비는 장소 및 기자제 임차료, 식비, 다과비, 사무용품비, 연구개발비, 숙박비 등의 세부항목에 대해 편성할 수 있다. 식비와 다과비는 두 항목을 합하여 사업비 총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영상 제작비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비는 사업비 총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들은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2019년 예산편성 항목별 지출한도액

비목	세목	지출 한도액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단순인건비	
	통역비	
	번역비	
홍보비	홍보비	사업비 총액의 20% 이내 단, 해당사업 성격에 따라 상향 조정 신청 가능
	인쇄비	
	광고비	
활동비	교통비	사업비 총액의 15% 이내
	초과근무 식대	
	단순인건비	
사업진행비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식비 / 다과비 합하여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
	식비	
	다과비	사업비 총액의 30% 이내
	사무용품비	
	연구개발비	
	숙박비	

### ① 내부 인건비, 단체 운영경비 책정

사업 참여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내부의 인건비와 단체 운영경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sup>69)</sup>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인건비의 경우 사업(행사)의 효율적 준비·진행, 조사를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사업을 담당하는 상근 활동가의 인건비와 단체 운영경비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업 공모 공고에도 ‘예산편성 및 지출 불가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상근직원의 인건비나 단체 운영경비 등 지출 불가항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금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

69) 이봉화·김경화(2006)가 2006년에 실시한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 때, 이러한 규정은 기금 사업을 제약하는 요소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금의 설치 목적이 서울시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성평등관련 사업이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활동가와 단체의 재생산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신생 단체의 기금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활동가나 조직의 역량에 대해서 기금 사업 차원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내부 인건비나 단체 운영경비 등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Ⅲ-6】 예산편성 및 지출 불가 항목

예산편성 및 지출 불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급료, 수당 등)</li> <li>·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li> <li>·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li> <li>· 사무용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li> <li>·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및 유류비, 주차비 등</li> <li>·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시상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등</li> </ul>

출처: 서울특별시 (2019d), 『2019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및 작성요령』.

과거에는 사업비를 내부 인건비나 단체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다른 기금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 등에서 공통적인 요소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민단체의 열악한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점차 완화하는 추세이다. 여성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규모가 크고 이름이 알려진 단체라고 하더라도 재정이 열악해 활동가들의 인건비를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공주, 2013; 김동춘 외, 2013).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라 하더라도 정해진 인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성평등기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활동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한 어려움은 규모가 작은 신생단체의 경우에 더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성평등과 관련해 새로운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신생단체들의 성평등기금 사업에 참여를 막는 구조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한국여성재단이나 아름다운재단 등 국내의 유사 기금 사업과 오픈소사이어티 등 해외 기금 사업에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내부 인건비나 단체 운영경비로 허용하고 있다. 성평등기금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 사회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0%, 관리운영비는 20%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른 펀딩은 사실 인건비나 운영비 측정을 하거든요.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죠. 20%정도? 전체 기금의 20% 정도를 사무국 경상비로 쓸 수 있는데, 서울시의 성평등기금이라던가 서울시에서 운영 하는 사업은 인건비나 경상비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오로지 캠페인 활동을 하는 실비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도 도움이라면 도움이 되지만, 인건비처럼 빠지는 거는 없어요. (중략) 활동을 지속하는데 어쨌든 활동가가 필요한거잖아요. 사업비를 배분. 저희도 사업비 계획을 세울 때 인건비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 A-3>

“인건비 책정이 네, 내부 인건비 책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부인원, 사실 내부인원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데, 내부 인건비를 줄 수 없으니까. (중략)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이제 식비, 다과비랑 내부 인건비 책정이 가능해서 어,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례 A-4>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정말 피땀눈물을 갈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표님은 이만큼 책정되어 있는 비용의 노동을 한참 벗어났는데, 딱 사업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랄까, 안 그래도 처리해야할 서류와 그런 거는 유독 이 기금이 많은데, 막상 노동에 비해서 너무 임금이 적으니까 살짝 힘 빠질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걸 보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A-11>

전문가인 <사례 B-5>와 <사례 B-13>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민간 용역사업이나 민간 위탁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수행자의 인건비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서 사업 담당자의 인건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단체의 자원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사례 B-13〉)이라고 볼 수도 있다

는 것이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신생 단체들이 기금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건비와 단체 운영경비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② 강사료 규정 현실화

강사료 지급 규정 역시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첫째, 박사학위나 ‘4대 보험’으로 증빙이 가능한 직장경력을 중심으로 한 강사 등급표가 시민단체 활동분야의 현실과 맞지 않고, 둘째, ‘일반3급’의 강사료 기준이 낮고 급간에 따른 강사료 기준 금액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사례 A-6>와 <사례 A-8>은 박사학위나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서의 경력 등을 기준으로 강사의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 영역에서의 ‘숙련’ 기준과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sup>70)</sup>

예를 들어 여성단체에서 디지털 성폭력과 같이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의제를 기금 사업에서 다루고자 할 때, 이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의 대표를 강사로 섭외한다고 하더라도 활동경력이 5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도 서울시가 제시한 지급 규정에 따라 ‘일반3급’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 3시간을 강연하더라도 1회 강연료로 15만 원을 넘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강의의 시의성과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기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충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강의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리에 강연자로 참석하는 대부분은 ‘일반3급’ 강사로 분류된다. 강연에 대한 보상수준이 낮아 강연자의 섭외 자체가 쉽지 않고, 섭외가 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강연료가 너무 낮아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사례 A-8>).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프

70) 개정된 ‘2019년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에서는 강사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시민단체 활동경력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특급’,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1급’,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2급’으로 분류되며, 활동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3급’으로 분류된다.

리랜서로 활동하는 강연자의 경우에는 강연료가 곧 생계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3급’에 해당하는 강사들에 대한 보상수준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사례 A-1>은 게다가 이렇게 제시된 강사료 지급 규정이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강사들의 강사료를 책정하는 기준으로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강사들의 생활임금 수준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현실화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숙련이라고 하는 기준을 뭘로 볼거냐 하는 문젠거 같은데, 1급 2급 3급을 나눌 때 증빙들을 하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이룰테면 이 증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 낼 때는 4대보험이 되는 이룰테면 어떤 직급을 가졌거나, 하는 것들로 증빙들을 보통 하게 되는데, 내가 외부에서 프리로서 10년을 살았어. 그럼 10년 동안 나는 이걸 증빙해 낼게 사실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숙련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은 3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울거냐 하는게 있을 거고, 앞으로 더욱 더 우리가 현장에서 모시고 할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정상성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분들을 초빙하려고 할 때 우리는 초빙할 수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사례 A-6>

“저희도 강사 책정할 때 약간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 급수에 따라 차등이 너무 심해서, 한 번 조정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차등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 3급 정도로 갈수록, 예를 들면 두 시간이나 세 시간이라는 시간을 측정할 때 강사료를 너무 조금 밖에 못드리니까 죄송한 면이 있고. 특히 또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 이슈에 대해서 새로 생긴 분야인데, 새롭게 생긴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이 활동하신 분을 불렀는데, 분야 자체가 너무 오래되지 않아서 3년 간당간당하게 채우면, 그런데 그 분이 그 단체의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나 대표급이신데, 드릴 수 있는건 [일반] 3급.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있어서 예외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구요. 신설되는 분야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융통성 가질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 A-8>

“이거[강사료 기준표]를 기준으로 민간의 시장이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이게 요새는 가이드 역할을 하니까 인건비가 계속 싸지는게 있다는거? 그거에 대한 염려? (중략) 프리로 밥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비용이 만나는 부분을 고려해야하고. [이 기금이] 시간이 10년이 지났는데 그 10년 대비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왜냐면 이런 조직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투입되는 사람의 질이 그럼 이거에 맞춰 낮아야 돼? 라고 문제 제기 할 수 있는거야 한 가지는. 하나는 아까 말한대로 이 위계 안에서 이걸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의 취지에서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와야 하는데 이 비용이 너무 작아. 정확하게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이를테면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이 비용 측정이 암튼 나는 맞지 않다. (중략) 지적하고 싶은 건 결국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도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기회가 안정적인 수 있는 현재의 상태냐 나는 점검해줬으면 좋겠다. 20대 중후반의 친구들이 이런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는데 (면 : 맞아요.) 그것을 포착하는 지점에서 이 현재 틀이 맞냐 이걸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례 A-1>

내부 인건비와 강사료 규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 강사료 금지 규정이다. 예산 편성기준에서는 단체 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역시 금지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단체 내부에 있더라도 내부 강사료를 따로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내부 전문가에게 기금 사업의 강연을 요청하는 것은 보상없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형태가 되기 쉽다. 그에 따라 기금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서는 강연자리를 마련할 때 주로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따로 섭외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 섭외 과정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는 강연의 질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강사료 책정 불가 규정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내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역량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만으로도 다 되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그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으니까. “어, 막 해주세요.” 막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다시 외부에 ‘또 누구 없어요?’라고 물어보고 또 그 분의 일정 맞추고, 막 해가지고 억지로 막 해서 다시 또 사업에 대해서 막 설명을 또 드린 다음에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지 나와서 그 프로세스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예, 그만큼의 역량이 과연 그 분들에게도 물론 당연히 있는 분들이시겠지만, 그것을 굳이 그렇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사례 A-13>

■ 표 III-7 ■ 2019년 강사료 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구분	기준	지출 한도액		비고
특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과대학장(급) 교수, 차관(급)</li> <li>◦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li> <li>◦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li> <li>◦ 활동경력 20년 이상 여성,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li> </ul>	1시간 이내	300,000	◦ 기본 1시간+ 초과시간 2시간,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1시간 초과	200,000 (매시간)	

구분	기준	지출 한도액		비고
일반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 정교수 이상</li> <li>○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전문의,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정평가사</li> <li>○ 기초지방의회의원</li> <li>○ 기업, 기관, 단체의 임원이상</li> <li>○ 연구기관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li> <li>○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li> <li>○ 활동경력 10년 이상 여성,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li> </ul>	1시간 이내	2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과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강사료의 50% 편성</li> <li>○ 단체 직원 지급 불가 (컨소시엄 구성단체, 지부 임직원 포함)</li> <li>▶ 위반시 전액 환수 조치</li> </ul>
		1시간 초과	120,000 (매시간)	
일반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 전임강사</li> <li>○ 공공기관 직원, 연구기관 연구원</li> <li>○ 활동경력 5년 이상 여성,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li> </ul>	1시간 이내	120,000	
		1시간 초과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외래 시간 강사	1시간 이내	80,000	
		1시간 초과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보조자	1시간 이내	40,000	
		1시간 초과	40,000	

출처: 서울특별시 (2019d), 『2019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및 작성요령』.

### ③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규정 현실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과 관련한 규정 역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영상 콘텐츠 제작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여성단체에서 영상물에 들어갈 내용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이 ‘연구개발비’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연구개발비는 전체 사업비의 3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제약이 지나치게 커서 질 좋은 영상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 규정에 대해 전문가인 <사례 B-9>는 여성운동을 알고 싶어 하는 20대 페미니스트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성평등의식 확산과 관련하여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때, 영상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예산 규정은 반드시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저희는 진짜 이번에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건데 그 영상 촬영비랑 편집비가 진짜 많이 들잖아요. (중략) 사실 고급 인력들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뭐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근데 지금 촬영비랑 편집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연구개발비인거예요. 근데 연구개발비가 그 프로젝트 전체의 30%를 넘기면 안 돼요. (중략) 너무 콘텐츠 제작이랑 이런 거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인거 같다고 생각했어요.” <사례 A-2>

“저희는 연구개발을 하는 영상제작인데, 그 연구개발비가 한도가 또 있어서, 그런데 그 돈으로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거예요 그 업체에. 이 돈으로 누가 맡아주냐고, 아 안다고, 안다고 죄송하다고. 저희도 원래 총 4종인가 5종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다 없애고 3종도 겨우겨우 만들거든요. 그런 기준이 조금 높아졌으면 하는 아쉬움” <사례 A-9>

#### ④ 홍보비 현실화

홍보비는 인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물론 사업 성격에 따라 상향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하지만 예산 변경 신청 절차 역시 활동가들에게 행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홍보비 예산 집행에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 <사례 B-5>는 성평등기금 사업의 중요한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시민들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비 제한 규정 역시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뭔가 광고를 낸다거나 아니면 진짜 인터넷에서 뭐 배너라도 하나 돌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사실은 책정이 되어 되는데 그 비용이 되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비용을 뭐 항목별로 또 다 나눠져 있어서 그걸 만약에 고친다고 하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승인 될 때 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례 A-13>

포럼이나 토론회의 자료집 인쇄비를 홍보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규모 포럼이나 토론회 등을 기획할 때에는 인쇄비가 그 규모에 따라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예산 규정에서는 자료집의 인쇄비가 포함된 홍보비를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

기 때문에, 포럼과 토론회의 참석자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료집 인쇄같은 것도 인쇄비를 홍보비로 잡아야 되는데 홍보비가 20% 밖에 없잖아요. 아니 학술행사를 하는데 인쇄비를 20% 밖에 못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례 A-14>

그 외에도 원고료와 강사비를 중복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고 집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윤리에 맞지 않고, 원고에 대한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단체의 성장과 해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건비, 강사료, 홍보비,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지출항목과 비율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대한 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거버넌스: 동등한 협력 관계 유지

앞서 기금 사업에 참여한 담당자들은 기금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금 사업을 총괄하는 재단의 담당자가 타 기금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에 비해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훨씬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장점을 유지하고, 서울시를 성평등한 도시로 만드는 데에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는 기금을 전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여러 시민단체들과 동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정립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단의 담당자나 재단에서 파견한 컨설팅단 역시 사업 참여 단체들과 동등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인 <사례 B-13>는 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과 활동가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기금 사업의 수행과정이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성평등 촉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아니라, 때로는 ‘갑을’ 관계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금 사업을 통해 서울시에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사업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행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민과 관의 거버넌스’라는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으며, 활동가들의 의욕을 저하시켜 성평등기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인 <사례 B-13>는 성평등기금 운용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과 관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사업에 참여한 주체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 지지의 대상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는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서울시가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기금 사업을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기금이 개별 사업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 영상물 저작권 및 수익 문제

민과 관의 동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가 저작권의 서울시 귀속 문제이다. 현재는 기금 사업을 위해 제작한 영상 촬영물들의 저작권은 사업이 끝난 후에 서울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해당 촬영물을 활용하여 2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다른 곳에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고 한다.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해당 영상물의 2차 가공을 통해서 단편영화제에 제출하는 방안 등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유튜브(Youtube) 등 영상공유 플랫폼(platform)에 기금으로 제작한 영상물을 공유해 광고수입 등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한 규정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근데 사실 이 앞에 있던 촬영본이나 제작물에 대한 권리가 다 서울시한테 양도되다보니까 저희가 이후에 서울시 성평등기금 이후에 갖게 된 자원 같은 거에 대해서 활용하기가 너무 이후에 어려워지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거지 않나? 그래서 약간 성평등기금이...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뭔가 사업 수행을 돕는 그런 곳으로 단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파트너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그리고 사실 앞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서 수익을 얻거나 성평등기금을 통해 만든 걸로 수익을 얻거나 그럼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례 A-2)

성평등기금 사업이 성평등의식 확산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출처만 정확하게 표기한다면 영상물을 제작한 단체가 영상물에 대한 권리를 서울시와 함께 보유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또, 영상물의 저작권을 서울시가 단순히 보유하는 수준을 넘어, 영상물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기금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물 중에서 성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물은 서울시나 재단이 보유한 다양한 채널(서울시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 서울시와 재단의 홍보채널 활용

사업 담당자들은 기금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로 홍보를 꼽고 있다.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젠더 의제 및 성평등의식 확산 등의 사업 효과가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들을 다양화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재단의 홍보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서울시나 재단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배너 등을 통해서 기금 사업의 주요 행사를 소개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릴 수 있게 되면, 기금의 사업을 홍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서울시

청의 전광판이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A-5>는 서울시의 여성정책담당관으로부터 받은 ‘서울시의 협조공문’만으로도 기금 사업의 홍보 효과가 높아졌으며, 홍보비를 절감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였다.

“기존 교육사업을 하면 확실히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변수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홍보를 좀 돈을 들여서 크게 하다 하면, 몇 백명까지도 오시고 그게 아니면 몇 명 내외로 오시기도 하고. (중략) 저희 예전에 여발기금이었을 때 [면접자: 여성가족기금] 에코젠더사업 같은걸 했었거든요. 가족교육으로 했었는데, 그 때 ‘서울톡톡’인가하는 서울시 뉴스레터를 잠깐 사용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그 때는 참가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교육이고 똑같은 날짜쯤인데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면 열 명 내외로 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홍보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례 A-9>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에 ‘서울시 성평등기금 후원’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활동의 공신력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성평등기금 사업의 홍보를 돕는다면, 활동에 큰 지지가 될 뿐만 아니라 성평등기금 사업이 확산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과 관의 젠더 거버넌스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 3) 질적 평가 강화와 성과의 대중적 확산

성평등기금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을 대중적으로 확산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사업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은 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해 매년 평가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평가체계가 정량적인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내용적으로 우수한 사업 성과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었다. 사업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사업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나 성평등의식의 사회적 확산 등을 평가하는 부분에는 미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사업이다보니까 이게 보고서 작성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치로 나오지 않아요. (중략) 딱 보여지는 게 수치로 밖에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뭐 하나하나 말을 한 거를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보고서 자체가 딱 보여지는데, 정말 말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몇 번 참여했다. 더 많이 왔다. 저희도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런 것 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인권감수성이 이만큼 올랐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거죠.” <사례 A-10>

“그냥 이 기금이 숫자에 연연 안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금들이 숫자라고 하는 실적에 목매게 되고, 뺨뺨... 제안서를 낼 때 뺨뺨해서 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어떤 질적인 것들을 담보하는 게 더 중요한거잖아요. 숫자에 연연 안하게 되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태도를 계속 꾸준히 가졌으면 좋겠다.” <사례 A-6>

[표 III-7]는 기금 사업을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평가지표이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의 평가지표 체계 내에서도 사업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업목표 완수정도’, ‘기금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 등의 항목을 통해서 기금 사업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근거자료 역시 주로 정량적으로 제시될 수 밖에 없으며, 평가결과를 점수화한다는 점에서 사업 성과의 세부적인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표 III-8 】 평가지표별 배점 비교 (2016~2018년)

평가영역	세부평가지표	2018년	2017년	2016년	
사업계획	사업목표 적절성	-	-	5	
	사업계획 충실성	-	-	5	
사업운영 과정 (50)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	15	15	15	
	협력적 사업 추진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5	5	3
		중간평가 지적사항 이행수준	-	5	5
		워크숍 참여	-	-	2
	사업추진의 적극성	10	5	5	
	예산집행 적절성	10	10	10	
	회계 투명성	10	10	10	



평가영역	세부평가지표	2018년	2017년	2016년
사업 성과 (50)	사업목표 완수정도	15	15	10
	참가자 만족도	-	-	5
	사업의 지속가능성	10	10	-
	기금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10	10	10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	15	15	15
	총 합	100	100	100

이에 대해 <사례 B-1>과 <사례 B-6>은 기금 사업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표 등에 대해 제안하기도 하였다. 우선, <사례 B-6>은 기금 사업에서 ① ‘젠더’ 관점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 ② 성평등정책에서의 활용도, ③ 콘텐츠의 환류와 사회적 확산, ④ 성평등 의식의 고양 등을 기준으로 기금 사업을 질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례 B-1>은 위의 [표 III-8]에서와 같이 사업의 평가지표에 대한 제안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기금 사업을 ‘주요 내용’과 ‘참여자(대상)’ 별로 각각 구분하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세부항목으로 ① 개인의 역량 강화(효능감), ② 사회적 인식 고양(페미니즘), ③ 조직강화(지속가능성), ④ 연대, ⑤ 시의성(대응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 표 III-9 ■ <사례 B-1>이 제안한 사업 평가지표

사업내용별 분류 범주	참여자(대상)	효과/평가
말하기	불특정 다수(대중)	개인의 역량 강화(효능감)
교육	단체 회원	사회적 인식 고양(페미니즘)
콘텐츠 직접 생산	초점	조직강화(지속가능)
문화·예술 활동	사회 전체	연대
활동가 양성		시의성(대응력)
복지 욕구 충족		

<사례 A-1>과 <사례 B-2>는 중·장기적인 사업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사례 A-1>는 2018년에 기금 사업으로 개최한 워크숍에 참여했던 기관에서 2019

년부터 일·생활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한 성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행과 같은 단년도 평가에서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사례 B-2>는 기금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참여 단체의 역량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성평등기금 지원을 받은 단체들의 역량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년간 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기금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 냈는지 살펴보고, 신생단체는 기금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생단체에 지원된 금액이 그 단체의 활동을 얼마나 공고히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해서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효과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B-2>

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나타난 의미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현재 매년 사업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결과를 해당 단체에게 알리고, 서울시와 재단의 내부용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다. 전년도 우수사례는 차년도 기금 지원 사업의 공동워크숍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일련의 사업을 저는 선정하고 나면 수행과정에서 중간실사 같은 거를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대중에게 알릴 것이냐 했으면 좋겠는거라고 하는 것에 관한 사업들이 저는 그 해 그 해 있다고 생각해요. (중략) 그리고 그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은 보면 사실 무슨 예산집행이 적절했는지, 회계가 적절했는지, 이런 거까지 다 때려부은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사업을 통해서 이거 홍보해보자. 수행하는 과정이라도 홍보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를 몇 개를 찍어서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중략) 이를테면 이 프로젝트 사업유지 관리하는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례 B-5>

<사례 B-5>는 중간평가 이후에 대중적으로 알릴만한 우수사례를 재단 차원에서 선정하고, 이를 서울시와 재단이 보유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성평등기금 사업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고, 기금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4) 기금 운영의 중장기 계획과 특화사업 지원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 차원의 성평등 기금 운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그러한 계획 하에서 단계별로 특화사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등의 사업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서울시에서 향후 5년 동안 성평등의식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제나 사업 내용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을 2~3년으로 늘리고, 지원규모를 현행 최대 3천만 원보다 더 큰 규모로 늘려 해당 사업이 광역단위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사례 B-5〉)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양성평등 기금 사업보다는 주체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자치구보다는 큰 규모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금의 공모주제 역시 기금 운용의 중·장기계획에 맞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 B-3〉은 현재는 지정공모 분야와 자유공모 분야 간의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유공모 분야에 대해서는 ‘성평등 관련 사업’에 완전히 개방적인 방식을 취할 것을 주문하였다.

“큰 목표는 있는데 이게 단계적인 과정이나 로드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로드맵이 없으니까 그동안 해오던 거 로드맵이 있으면 지금 어느 시기까지의 목표라든지 이걸 좀 끊을 수가 있는데, 기금도 그렇고 전체적인 정책도 그렇지만, 시가 상정하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호는 변해왔지. ‘여행’에서 ‘안심’으로 바뀌어왔는데, 그것에 관한 로드맵을 장기적인 로드맵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어느 시기까지는 주체발굴이 더 중요한 시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든지. 이만큼 주체가 발굴이 되었으면 대중화가 더 필요하든지 아니면 홍보보다 주체발굴이 더 중요한건

지 이런 거가 로드맵에 따라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례 B-5>

<사례 B-9>는 지금까지의 여성운동이 한국사회에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인식 부분”에서는 개선속도가 더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평등기금 사업과 여성운동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활동을 할 것인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기금 사업이 성평등 의식이 일상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 □ 사업 방식 다각화

현재 성평등기금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들도 많고 사업의 내용도 연속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단년도 과제 체제가 아니라, 2~3년 정도의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를 받거나 긴급·수시 지원 사업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업 방식 다각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사업의 목적이 1년 내에 달성하기 어렵거나, 연속적 지원이 의미가 있는 특화사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평등 기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사업기간을 달리 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1-2년 동안에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5년의 장기 사업으로 설계하여 추진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초단기 사업으로 추진해야 또한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장기 사업(3-5년), 중기 사업(1-2년), 단기 사업(6개월-1년), 초단기사업(3개월) 등으로 나눠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례 B-3>

“이게 1월부터 되면 막 세팅이 되고 이게 기금이 3월 초에 들어왔나 중순에 들어왔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팅해서 이렇게 밀린건 데 조금 1월 2월부터 하면 이제 한 4월부터 진짜 실행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중략) 3년차면 제일 좋죠. 3년 동안의 플랜을 짤 수 있을 거 같고요. 그걸 성과물로 어쨌든 좀, 왜냐하면 저희가 좀 1년 할 때도 성과물 내려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만한 자료집 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다 강의로 피피티 찍 복사해서 주는 그런 강의집이 아니라 다 녹취해서 다 풀었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3년차 정도 되면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고, 그 자료집 전에 이제 그런 활동으로 연결되는 얘기가 나오기 쉽죠.” <사례 A-7>

“예를 들면 아까 사업 연속성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연 단위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공모 분야 중에는 연속성 사업이라고 해서 2년이나 3년으로 먼저 처음에 기획을 해서,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례 A-8>

“그냥 4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마감이다 이게 그냥! [면접자: 세팅이 딱] 딱 되어 있어서. 너무 단기 사업이니까 딱 이것 밖에는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사례 A-10>

또한 사업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사업 환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사업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2018년의 미투(MeToo)운동과 같이, 사회적으로 긴급한 젠더 의제에 대해 수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과정에 따른 기금 지원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그리고 음,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 수시로, 뭐 갑자기 어떤 어, 활동이 필요한 경우들이 상당히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막막한 거예요. 이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음... 전체 기금 중에 몇 퍼센트는 수시 지원을 쓰다라고 해서, 그때도 이제 적절한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꼭 해야 할 활동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받아서 활동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주어진다면, 좀 더 사회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적절한, 그 시의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례 B-9>

지원의 기간과 규모를 다각화하게 되면, ‘기금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따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단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단년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1월부터는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공모 및 선정과정을 현행보다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교나 기업체 등을 찾아가 성평등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월이 지난 후에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내기에는 기간

이 짧다는 것이다.

#### □ 참여 주체 확대

성평등은 시대에 따라 구성되는 개념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의제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평등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례 B-13>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다양한 여성주의 신생주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을 기금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참여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오랜 활동 경험과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가진 기존 단체나 기관은 성평등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책영역의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한 가지 방안으로 자조모임 등 단체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신생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분야를 신설하고, 다양한 의제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행능력이 있는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나, 새롭게 도전하는 여성단체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원 요건 및 기준 완화를 통해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대학생, 중·고등학생 및 소규모 모임도 참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사례 B-12>

“엄청 튼튼한 조직 기반이나 그런 게 없을 때 지원을 받는 거는 되게 뭔가 단기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도모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들이 됐던 거 같아가지고, 모임 차원이나 이런데서 지원받는 것들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례 A-2>

“오랜 활동 경험과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가진 기존 단체나 기관은 성평등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책영역의 확장에는 한계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여성정책이슈 발굴을 염두에 둔 기금 활용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공모를 주제만을 지정과 자유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신생 조직들 -현재의 공모 참여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은 주체들을 포함하여- 신생 조직들의 참여가 가능한 실험적 영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B-13>

기금 사업을 통한 거버넌스가 단순히 참여 단체의 재정적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시도로 발전해 갈 가능성은 주제 영역을 어떻게 확장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신생 조직이나 새로운 참여 주체를 통해 더욱 확장해 갈 수 있다. 다만 고려해야 되는 문제는 새로운 단위의 참여를 통한 정책 실험에 뒤따르는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금 사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1020세대의 페미니즘에 대한 접근이 증대하고, 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사업 내용이 성인단체 중심이고, 1020 세대가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위치한 사업 방식이 다수인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B-10>

“대학생이나 여성청년들이 특정 이슈로 모였다가 흩어질 수도 있는데, 계속 가면 좋겠지만 그계 연대, 네트워킹이 되어서 다른 이슈가 생겼을 때 그게 다시 조직화가 되고,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특징들에 부응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중략) 실제 1020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중략) 또한, 1020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그들의 역량과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제안을 하였으나,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그 방식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식으로 해서 가상의 안을 제안해 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B-1>

“조금 다른 모임 작은 모임 형식에도 그들이 성평등기금에 맞는 부합된 일들을 한다면 그들에게 지원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성평등기금을 많이 알려서, 좀 일을 하고 싶는데 돈이 없거나, 그런 평등한 사업을 하고 싶는데 돈이 없거나 그런 단체들이 꽤 있잖아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도 알아서 신청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성평등기금은 진짜 특화된 이 돈은 이런 사업을 하는 돈이야 알 수 있게끔. 두리몽실해서 이거는 어느날 여가부에서도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 말고 성평등기금만은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성평등기금이야. 그렇게 한다면 참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사례 A-5>

참여 주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10~20대 청년, 성소수자,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그동안 기금 사업의 참여가 두드러지지 못했던 주체들이 기금 사업에 참

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여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정공모 분야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조례의 조항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2019년의 공모주제 중에 ‘1020세대를 위한 성평등 활동 참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10~20대 청년이 사업의 대상이 될 뿐 운영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10~20대 청년이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지원 자격을 ‘모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성평등”기금으로서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변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책대상이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복지 수요가 있거나 취약계층이거나 아니면 정책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던 것도 한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주여성이나 마이너리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대상이나 초점이 좀 한정적, 정책대상의 확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대 20대, 그리고 성적소수자는 거의 없지 않았나요?” <사례 B-1>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용도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가 포함되는 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포함된다면 ‘성별을 이유로 차별(여성차별, 남성차별, 성적 소수자 차별)의 철폐’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야 성평등기금과 양성평등기금과의 차별성도 드러내고, 성평등기금의 용도와 대상이 보다 폭넓은 것으로 인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례 B-11>

양성평등 논란 속에서 불거지거나 그동안 가려져 있던 의제들을 드러내는 것은 성평등기금에게만 요구되는 역할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단순히 단어가 아닌, 어떠한 의미나 가치를 지닌 용어인지에 대해 합의하고 정의하려는 노력은 그 이름을 달고 사업을 수행하는 이들 앞에 놓인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 기금의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과 지원

많은 전문가들은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성평등기금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기 위



해서는 기금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성평등기금운용심 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성평등기금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는 단체와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들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대해 공통의 상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들이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를 보증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배분하되, 젠더의식과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춘 사업들이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여성단체가 아닌 ‘여성주의 단체’ 또는 앞으로 여성주의 단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들의 단체는 여전히 팽배해있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을 온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여성주의의 관점,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 및 조직, 그리고 사업의 추진 결과로 여성주의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단체로 지원을 한정해야 성평등 기금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사례 B-3>

“기금사업 수혜 단체 심사 시, 선정과정에 활용되는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의 편차나 선호에 대하여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선정심사기준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B-6>

사업에 참여한 주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현재에는 ‘젠더워크숍’과 ‘실무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젠더감수성 교육과 세무회계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과정을 맞춤형 방식으로 강화해 진행할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기금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생단체나 모임을 대상으로 한 세무회계 교육과 젠더감수성 교육 등은 강화하되, 기금 사업에 다년간 참여한 단체들은 연결망 강화와 동료평가(peer review)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형식으로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공모사업 수행 단위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 수행주체들의 여건과 조건이 매우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수행 단위의 역량과 조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B-13>

기금의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것만으로 서울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금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 못지않게, 사업이 취지에 부합하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행정적 규제나 감시가 아닌, 사업 운영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 현재의 젠더워크숍과 실무역량강화교육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맞춤형 교육은 다년간 사업에 참여해 본 단체와 신규 단체 간의 실무역량 차이, 성평등 실현을 기본 가치로 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사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 요약 및 시사점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한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평가한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단체와 활동가 지원을 통해 서울시에서의 성평등 가치 실현에 이바지했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참여 단체의 기획과 고유성을 보장하는 기금으로, 여성단체와 성평등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성평등 증진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되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주제공모 역시 새롭게 제시하면서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신생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거나 기존의 단체가 새로운 운동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기금 사업을 다른 단체들과 협업해 개최하기도 하고, 기금 지원 사업 차원에서 마련한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단체와 활동가 사이의 연결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서울시라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기금을 통한 사업으로 단체 및 활동의 저변을 넓히고,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했다.

둘째, 기금 사업에 참여한 단체회원과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기금 사업에 직접 참여한 단체의 회원이나 일반 시민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이 강화되었다. 시민들은 기금관련 사업에 참여한 후, 단체의 다른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하기도 하고, 활동가로 전환해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해 활동하도록 하는 등의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으로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다양한 기금 사업 관련 행사나 교육 등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서울시에 성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페미니즘 리부트’ 움직임 이후 기금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기금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자료집이나 영상물 등은 행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현장에서 토론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지침서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치구와 서울시 성평등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다른 유사기금과 구별할 수 있는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과 관이 동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좋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다. 기금이 새롭고 실험적인 여성주의 의제나 성평등 의제를 가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단체 차원에서 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실험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이름이 난 단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단체까지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기금이나 여성가족부의 유사 보조금 사업과는 차별화된 점이다. 그리고 매년 이루어지는 평가와 공동워크숍 등 상호작용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도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와 차별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전문가와 기금 사업 참여자들이 제안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계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의된 바와 같이, 기금 사업 참여자들이 기금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행정처리 업무이다. 특히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관리 시스템은 반응 속도가 느리고 일부 기능은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크다. 따라서 보조금관리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예산에서 주요 항목별 규정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새롭고 참신한 활동 방향을 계속해서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개선요구가 큰 규정은 내부 인건비 책정 금지 규정이다. 기금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기금 사업은 주로 기존 활동가의 추가적인 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체와 활동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들어 유사기금이나 보조금 사업 등에서는 내부 인건비 금지 규정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사료 규정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기금 사업의 강연에 주로 참여하는 강사들은 ‘일반3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3급’의 강연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내부강사료 책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단체 내부에 기금 사업 주제와 관련하여 우수한 강사가 있더라도, 내부 강사에게 강연을 맡기게 되면 보상없는 추가 노동이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른 홍보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단체나 사업의 성격에 맞춰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셋째, 민과 관이 동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담당 공무원과 재단의 담당자의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훨씬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 사업의 내용보다 행정을 더 우선시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영상물이나 저작물 등의 저작권이 서울시 귀속되는 규정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을 제작 단체와 서울시가 함께 공유하여, 2차 가공 등을 통해 기금을 통한 작업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금 사업을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서울시와 재단의 홍보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협력적인 관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성과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강화하고, 대중적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이 더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금 사업 평가체계는 단년도 결과에 대한 양적인 평가에 기초하고 있으며, 성과에 대한 대중적인 확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중적으로 확산할 만한 의미있는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이고 질적인 평가들을 통해 평가하고, 대중적 확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평등기금 사업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고, 기금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목표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차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사업 지원방식의 다각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기금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들이 많은 만큼, 2~3년 정도의 중장기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의제로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 역시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IV

##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 개선방안

1. 기본 운영 방향
2. 행정업무처리 과정 개선 및 예산 자율성 강화
3. 단체 역량강화 지원 개선방안
4. 평가 개선방안 및 우수사례 확산





# IV

##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 개선방안

### 1. 기본 운영 방향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다. 성평등기금의 용도는 관련 조례를 통해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에서 출발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것이 다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 사업”지원으로 변화해 왔다. 성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발전이나 개발을 넘어, 성주류화 등으로 실질적인 성평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성정책에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금의 목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수용하면서 변화해 온 것이다.

1998년 첫 사업 집행을 이후로 지난 20여 년간 서울시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의제를 중심으로 민과 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로 자리잡았다. 기금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도해 사업을 기획하고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는 서울시의 다른 보조금 사업이나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 사업과는 차별성을 지닌다.<sup>71)</sup> 지방보조금사업이나 중앙행정부의 양성평등기금 사업과 같이, 행정

7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은 특정 목적성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2019년에 여성가족

부서가 운영의 주체인 사업 구조 속에서는 새로운 성평등 의제 발굴이나 실현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금은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모 및 지원 방식을 통해서 서울시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핵심적인 축을 담당해 왔다. 선도적이고 새로운 성평등 의제를 제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서 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서울시는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서울 10년 혁명’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금은 민과 관이 협력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서울시를 성평등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핵심 축으로써 민간의 기획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기금 지원 사업은 선도적이고 새로운 성평등 의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성평등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금 사업들이 계속해서 선도적인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성평등 가치 지향성을 강화해 가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의 측면에서 성 불평등의 교차성 문제를 고려하고,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 불평등한 젠더 관계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차에 의해서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나 계층, 인종, 민족, 장애 여부, 성적 지향 등 여러 중요한 사회적 범주가 교차하고 갈등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평등기금이 ‘성평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회적 범주가 교차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등한 젠더관계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의 발굴도 고려해 가야 할 것이다.

---

부의 양성평등기금은 주로 한부모·다문화가족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젠더 폭력 관련 취약계층 여성을 지원하는 시설의 운영비 등에 활용되고 있다.

성평등정책 및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일반회계 보조금 사업 역시 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치구의 보조금 사업 역시 유사한 구조이며, 사업의 분야가 가족이나 보육 분야에 치우쳐 있어서 명시적으로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1)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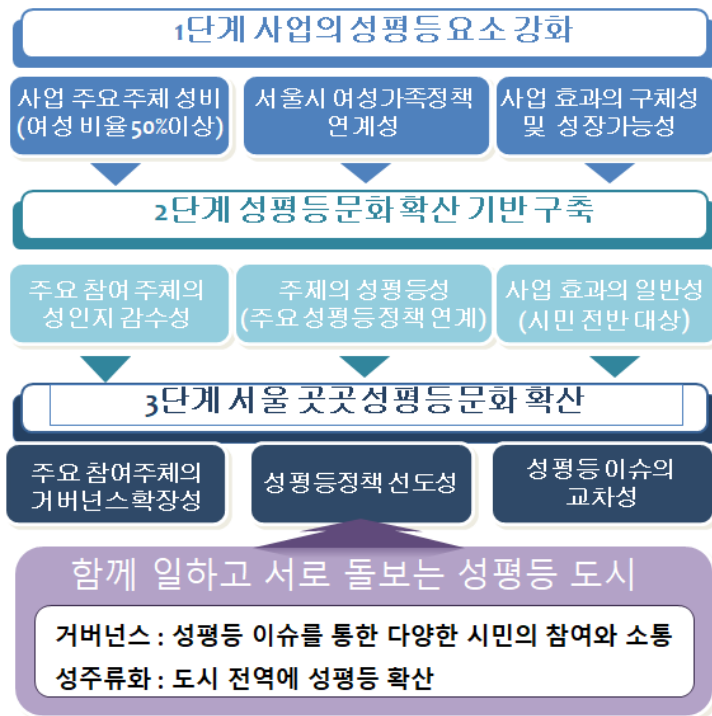
이러한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목표에 맞춰 특화사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 계획은 성평등 도시 서울의 위상제고를 목표로, 젠더와 계급, 인종, 민족, 장애, 성적체성 등 여러 중요한 사회적 범주가 갈등하고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단계별 목표는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정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의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단계별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 의식과 가치를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서울시의 성평등 현황을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조사를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시간사용, 가사분담 등 주요 영역에서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실생활 영역에서 성평등은 어느 정도나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의 표본을 확보해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원칙에 따라 조사를 설계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목표를 설립할 수도 있다. 생성된 조사결과는 기금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성평등정책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을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들과의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조사를 3년 단위로 정례화하거나 패널(panel)을 구축해 실행하는 방안까지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기금 운영의 단계별 목표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본다는 의미에서 ‘가안’을 제시하자면 다음 [그림 IV-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단계별 전략은 참여주체와 성평등 의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금 운영의 1단계는 사업의 성평등 요소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발전기금” 차원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로 볼 수 있다. 2단계는 성평등 문화 확산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개칭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평가해볼 수 있다. 앞으로 지향해야

할 단계는 마지막 3단계이다. 3단계는 서울시 전역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좀 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도모하여 교차성 문제를 고려한 새롭고 선도적인 성평등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성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별과 다양한 사회적 범주가 교차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당사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IV-1 ■ 성평등기금 사업 운영의 3단계 목표 (가안)



## 2) 기획공모 분야 신설 및 중장기 특화사업 지정

단년도 사업에 기획공모 분야를 신설하고, 특화사업 지정을 통한 중장기 사업의 추진을 제안한다. 우선, 단년도 사업인 지정공모의 주제는 매년 새롭게 선정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중장기 계획의 단계별 목표에 맞춰서 선정하거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공모 주제는 참여 단체가 선도적인 의제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하위항목을 따로 제시하기보다는 성평등 의제와 관련하여 완전히 열린 형태로 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72)</sup>

아울러 기획공모 분야를 신설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에는 전국단위의 비영리법인에서부터 풀뿌리 단체, 대학의 성평등관련 동아리나 모임 등 다양한 층위의 단체나 모임들이 위치해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기획공모 분야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기획공모 분야는 매 3년마다 서울시의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가 협의해 신설 혹은 재지정을 결정하도록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기획공모 분야는 크게 3가지 분야이다.

첫 번째로 제안하는 기획공모 분야는 ‘청년 공모’이다. 청년 공모 분야는 기금 사업에 새로운 청년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성평등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10~20대 청년 여성주의 모임이나 성소수자 모임, 대학 내의 성평등관련 동아리 등 새롭게 생겨난 모임이나 기금 사업에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던 단체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청년 공모 분야의 신청자격은 ‘대표자 혹은 신청자 본인이 만39세 이하이며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성평등 의제를 중심으로 3개월 이상 활동한 3명 이상의 모임’으로 확대하고, ‘등록된 법인(단체) 등은 지원 불가 규정’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청년 공모 분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기본 조례」 상의 성평등기금의 지원 자격을 모임이나 동아리, 개인 등으로까지 확대·개정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행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성평등기금의 지원자격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제한하고 있어, 모임이나 동아리 등은 지원자격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3)</sup>

72) 또한 단년도 사업은 공모 과정을 현행보다 앞당겨, 사업기간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7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 ‘성평등기금 용도’ 중 제2항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의 제30조 개정이 필요하다.

즉, “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청년 공모 분야에 선정된 단체는 연간 5개 이내로 제한하고, 최대 지원 규모 역시 연간 5백만 원 정도로 제한하여 광역단위 규모의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모임에서도 큰 부담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사업과 관련하여 증빙하는 서류는 최소화하고, 적용되는 회계규정 역시 완화된다면 분야 신설의 의미가 더욱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 표 IV-1 ■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변경안 (1)

첫 번째 기획공모 분야 적용안

- 사업기간: 매년 1월 ~ 10월
- (※ 사업평가에 따라 '특화사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최대 2년 연장 가능)
- 지원액: 사업별 연간 최대 50백만 원 이내 차등 지원
- 사업분야: 지정공모, 자유공모, **청년 공모**(기획 신설)
-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 수
  - 가. 신청자격
    - ① 지정 및 자유공모: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청년 공모: 대표자 혹은 신청자 본인이 만39세 이하이며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성평등 의제를 중심으로 3개월 이상 활동한 3명 이상의 모임 (※ 등록된 법인(단체) 등은 지원 불가, 최대 5백만 원 이내 지원)
  - 나. 신청사업 수: 단체별 1개 사업(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
- ※ 사업평가에 따라 '특화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특화사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모분야의 응시는 제한함

두 번째로 제안하는 기획공모 분야는 '풀뿌리 연대 공모'이다. 풀뿌리 연대 공모는 기금에 단독으로 지원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풀뿌리 단체나, 단체가 위치한 자치구에서 (양)성평등 기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풀뿌리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단체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소속된 단체들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 (1안)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혹은 → (2안)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시 거주자 1인 이상을 대표로 하는 3인 이상의 모임' 등으로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단체 중 한 단체만 지정 및 자유공모 분야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 경험이 없는 작은 규모의 풀뿌리 단체들도 함께 연대해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풀뿌리 연대 공모는 여러 자치구에 위치한 단체들이 하나의 사업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고, 풀뿌리 단체들 사이의 연대가 강해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표 IV-2】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변경안 (2)

두 번째 기획공모 분야 적용안

- 사업기간: 매년 1월 ~ 10월
- (※ 사업평가에 따라 ‘특화사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최대 2년 연장 가능)
- 지원액: 사업별 연간 최대 50백만 원 이내 차등 지원
- 사업분야: 지정공모, 자유공모, **풀뿌리 연대 공모**(기획 신설)
-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 수
  - 가. 신청자격
    - ① 지정 및 자유공모: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풀뿌리 연대사업 공모: 서울시의 서로 다른 자치구에 위치한 2개 이상의 풀뿌리 단체 연대체 (한 단체만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면 신청가능)
  - 나. 신청사업 수: 단체별 1개 사업(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
- ※ 사업평가에 따라 ‘특화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특화사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모분야의 응시는 제한함

세 번째로 제안하는 기획공모 분야는 ‘함께 공모’이다. 함께 공모는 활동의제를 공유하는 서울시 소재의 역사가 오래된 비영리단체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모임이나 단체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 공모’ 역시 ‘풀뿌리 연대 공모’와 마찬가지로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중 한 단체만 지정 및 자유공모 분야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최근 새로운 운동의 양상으로 자리 잡은 네트워크형 모임까지 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여러 단체나 모임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 활동의 노하우(know-how)를 공유하고, 사업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거나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IV-3】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변경안 (3)

세 번째 기획공모 분야 적용안

- 사업기간: 매년 1월 ~ 10월
- (※ 사업평가에 따라 ‘특화사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최대 2년 연장 가능)
- 지원액: 사업별 연간 최대 50백만 원 이내 차등 지원
- 사업분야: 지정공모, 자유공모, **함께 공모**(기획 신설)
-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 수
  - 가. 신청자격
    - ① 지정 및 자유공모: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함께 공모: 서울시 소재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을 구성 (한 단체만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면 신청가능)**
  - 나. 신청사업 수: 단체별 1개 사업(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
- ※ 사업평가에 따라 ‘특화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특화사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모분야의 응시는 제한함

마지막으로 특화사업 지정을 통해 중장기 사업의 추진을 제안한다. 매년 기금 사업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의 단계별 목표에 맞춰 소수의 ‘특화사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화사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금 사업의 참여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규모 역시 ‘연간 최대 5천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특화사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모분야의 지원은 제한된다. 이렇게 우수한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집중·육성하는 과정을 통해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특화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려 성평등 의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성평등기금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3) 심사기준 보완

2019년 현재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심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다. 2단계에서는 기금운용심



의회 위원의 서면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의위원들의 전문분야 및 심사단체 수를 고려하여 5개의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사업 분야에 대해 심사한다. 3 단계에서 2단계에서 이루어진 서면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미 매우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금의 취지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언급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 ① 성인지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 선정

첫째, 기금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성인지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이 모인 여성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활동이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별분업이나 가부장적인 성역할 규범을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성평등을 핵심가치로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을 수 있다. 반면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거나 여성주의나 성평등을 핵심가치로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더라도, 성역할 규범이나 성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의 활동이나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엄밀하게 검토하고,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여 서울시를 성평등한 도시로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는 공모사업 심사표에 '사업의 성인지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기준 4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30점)를 배정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이다. 여기에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성인지성' 등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공통의 상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보장된다면, 기금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 표 IV-4 】 2019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심사 등급 및 배점 항목

심사 등급 (배분 비율)	등급 별 배 점 항 목				
	합 계	사업의 적정성 (30점)	사업 수행능력 (20점)	사업비 적정성 (20점)	사업의 성인지성 (30점)
S등급 - 탁월 (10%내외)	100	30	20	20	30
A등급 - 우수 (30%내외)	84	25	17	17	25
B등급 - 보통 (30%내외)	68	20	14	14	20
C등급 - 미흡 (30%내외)	52	15	11	11	15

출처: 서울특별시 (2019c), 『2019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심사계획』.

## ② 사업 선정과 평가 사이의 유기성 강화

둘째, 사업 선정과 평가 사이의 유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업 선정과 사업 평가가 일관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업 평가결과가 차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는 사업 선정과 평가의 주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로, 기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사항 중에 하나이다. 사업의 선정은 ‘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사업 평가는 재단에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선정과 평가 사이의 유기성을 강화하는 것은 개별 사업을 내실화하고, 목표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유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연속적으로 기금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강화해 사업 내용의 성장을 견인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이러한 환류과정의 일환으로, 2019년 현재 1차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 전년도 사업에서 D등급을 받은 단체의 사업은 제외하고 있으며, ‘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가 개별사업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의 선정과 평가 사이의 유기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이 사업 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사업의 목적이 사업 과정에서 잘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개별 사업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속 참여단체의 사업은 전년도 사업 평가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선정 평가지표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규 참여단체의 사업에는 전년도 사업 평가의 평균점수를 주도록 해, 신규 참여단체가 불이익을 얻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 혹은 ‘사업 수행능력’ 항목에서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를 세부 평가 지표로 포함하고, 선정 심사 과정에서 해당 점수와 종합평가 요약본을 함께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③ 단계별 평가방식 도입

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단계별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사업의 성격과 단체를 구분하여 앞서 제시한 단계별 기금 사업 운영 전략을 적용한다면, 보다 심화된 수준의 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같은 단체에서 지속 사업을 한다고 해도 지속성이 보장된 한도에서도 매해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 참여 주체가 동일한 인식 수준에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원화된 사업 운영의 기준보다는 단체의 다양성과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금 사업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성평등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없는 단체의 신규 참여 신청에서는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사업 수행 주체의 성비나 사업의 서울시 관련 정책 연계성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사업 효과가 사업 참여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사업은 배제할 것을 제안한다. 성평등 관련 활동을 해 온 단체나 기존 참여단체가 주제 등을 달리하여 지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2단계 혹은 3단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운영의 방향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의 지향점이 보다 명확해지고, 기금 사업이 성평등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더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기금 사업 참여자와 전문가들은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단체와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단체회원 및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주면서, 성평등 의식의 사회적 확산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사업 참여자들이 여성가족부와 자치구의 양성평등과 비교한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사업 진행과정에서 민과 관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기금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공무원과 재단의 담당자들이 여성단체와 비영리민간 단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용적이다. 그에 따라 민과 관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둘째, 참여하는 단체의 기획과 고유성을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해 사업을 기획하는 여타 보조금 사업과는 달리,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참여 단체의 기획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 증진에 필요한 새로운 성평등 의제나 실험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게다가 기금 지원 사업을 통한 새로운 의제 발굴은 향후 서울시 성평등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셋째, 소규모 단체의 접근성도 보장하고 있다. 즉, 지역을 기반으로 한 풀뿌리 단체의 성평등 활동에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력이 있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 성평등기금만의 특성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면서도, 단계별 목표 수립을 통한 기획 분야 신설 및 특화사업 지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독려, 심사과정 보강 등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사회적 의미와 강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 2. 행정업무처리 과정 개선 및 예산 자율성 강화

기금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와 담당 활동가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행

정업무처리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워드우리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통한 행정 처리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사업비를 처리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만들고, 그 내용을 보조금관리 시스템에 다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 정작 중요한 사업의 내용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 1) 행정업무처리 과정 개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사용자의 편의성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보조금 사업의 회계 절차에서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한다면,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사용자가 좀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사례 A-8>은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보조금관리 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스템’)을 비교하면서, 서울시의 보조금관리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도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의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사복시스템 등 다른 행정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종합·검토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 때, 내부 결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단체들의 경우에는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결재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기금 사업 참여 단체들에게 제공한다면 회계업무처리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금 사업 참여 단체가 기금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나 회계 업무처리는 사업 수행단체가 아닌, 세무회계법인 등에서 대리해 처리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 서울시가 세무회계법인과 협약을 맺어 기금 사업의 회계업무를 대리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세무회계법인은 서울시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인 ‘희망기업’<sup>74)</sup>, 즉 사회적경제기업인 중증장애인

74) 희망기업은 사회적 약자기업을 의미한다. 서울시에서는 희망기업의 생산품목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소기업이나, 한국여성세무사회 서울지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예산편성 자율성 강화

기금 사업의 예산은 주요 항목별로 책정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다.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이 없지만 내부 인건비 책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둘째, 홍보비는 홍보비와 인쇄비, 광고비 등을 포함하며 사업비 총액의 20%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활동비는 사업비 총액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진행비에서 식비와 다과비는 두 항목을 합하여 사업비 총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영상 제작비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비는 사업비 총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항목별 예산인 연구개발비나 홍보비 등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제한하게 되면, 기금 사업관련 활동에서 참여 단체의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획일적인 사업들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에게 많은 기금 사업들이 유사한 방식을 답습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원인 중에 하나도 자율적인 예산 책정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청년 페미니스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새롭고 창의적인 의제와 방법으로 여성주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모임이나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기금 사업의 새로운 주체로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디지털 매체가 확산되고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활동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여성주의 활동에서 영상 콘텐츠는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영상 콘텐츠 제작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여성단체에서 영상물에 들어갈 내용을 개발한

---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기업에 대해 구매를 확대하면 매출이 증대하고 수익성이 개선되어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사이클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서울특별시 공공구매 안내, <http://contract.seoul.go.kr/new1/ppviews/main.do>) (2019.08.20. 접속).

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작업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영상 콘텐츠 제작이 ‘연구개발비’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연구개발비는 전체 사업비의 30%로 제한되어 있어, 예산의 한계로 시민의 높아진 문화적 수준이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영상 콘텐츠 제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나 한국여성학회의 ‘차세대 페미니즘 연구-활동가 여름캠프’ 등은 규모가 매우 크고, 시민들의 주목도가 높은 사업이다. 하지만 이렇게 주목도가 높은 사업에서조차 홍보비를 전체 사업비의 20%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고, 수백 명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하더라도 자료집의 인쇄비를 홍보비 항목으로 전체 사업비의 20% 내로 제한하는 것은 기금 사업의 활동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금 사업 안에서 예산 변경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변경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기금 사업에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의한 뒤, WFNGO 협력센터 홈페이지에 통해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공문을 서울시의 소관부처에서 검토하여 사업 계획이나 예산비목 변경 승인을 신청한다. 사업 계획 변경 신청 시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확인을 거친 후에야 변경승인이 가능하다.

현재 기금 사업을 진행하는 실질적인 기간이 4~5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번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금 사업 공모 시에 예산 편성을 사업의 성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예산편성 항목별 지출한도액’은 기금 사업 참여 단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공모사업 심사과정과 실행예산 조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전문가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단체 역량강화 지원 개선방안

기금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기금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도움에 있다. 기금 사업을 통해 단체의 중요한 활동이나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 기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단체에 재정이 충분하다면 기금 사업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여러 활동가들이 ‘아마도 그런 고민을 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더라도, 행정업무처리의 부담으로 참여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기금 사업과 관련한 행정업무처리가 활동가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 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내부 인건비나 단체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단체의 재정 여건 상 기금 사업을 위해 새롭게 활동가를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 사업은 대부분 기존의 활동가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되고 있다. 신생단체의 경우에는 기금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가 무급으로 활동을 이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단체와 활동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금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서울시를 성평등한 도시로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금 지원 사업 차원에서 단체와 활동가의 재생산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 1) 기금 사업 실무책임자 인건비 지급

먼저, 기금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에게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인건비 지급은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표방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꼭 필요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지원 사업이 노동의 가치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노동을 존중하는 시정의 지향



점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다 내실있는 기금 사업 운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새롭게 충원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인건비 마련에 필요한 노력을 기금 사업에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금 사업의 실무책임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위법령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상에는 ‘인건비’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기획재정부(2019)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기금의 “예산편성 시에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ICT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건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표 IV-5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일부 발췌)

제2장 사업비 산정 및 협약

제5조(사업비 산정기준)

- ③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업비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인건비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의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운영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3. 여비 : 국내 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국외교육여비
  4.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및 기관업무비
  5. 연구개발비 : 각급기관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및 개발 경비
  6. 유형자산 : 내용연수 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시설의 설치·구입 및 관련 부대경비
  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 ④ 수행기관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타사업 또는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130%까지 참여율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목별 세부산정기준) ①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일부 발췌)

여충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 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재료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세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성격이 수행기관 운영자금으로 교부되는 사업은 운영비 내 세목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또한 2019년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민관협력 사업에서도 인건비나 활동비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서는 ‘대표제안자 포함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 가능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시 생활임금’과 연동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다음의 [표 IV-5] 참고).

■ 표 IV-6 ■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일부 발췌)

#### 4. 보조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 보조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 가. (일반)활동비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시간당 10,148원(2019 서울시 생활임금)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 (예: 7시간 활동 시 71,036원→71,040원)

출처: 서울특별시 (2019b),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청년청의 ‘세대균형 프로젝트’ 운영규정에서는 사업을 위해 신규채용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다음의 [표 IV-6] 참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금 지원 사업에서도 단체별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단체별 내부 인건비의 규모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과 유사하게 전체 사업비의 10~20%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75)</sup>

【 표 IV-7 】 서울시의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비 구성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비 구성 (일부 발췌)

- 인건비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강사수당, 회의참석비, 자문비, 단순인건비, 신규채용한 프로젝트 전담인력 인건비 등
- 사업진행비 : 프로젝트 수행관련 제반비용
- 홍보비 : 영상, 책자 및 콘텐츠 제작 등
- 사업비 구성시 유의사항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자부담률(5%) 이상을 포함 작성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구성에서 제외

출처: 서울특별시 (2019a), 『세대균형 프로젝트 추진계획』.

## 2) 단체별 맞춤형 지원과 연결망 강화

서울시 기금 사업은 단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워크숍, 젠더워크숍, 실무역량강화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기금 사업 담당자들은 이러한 과정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단체 간 연결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을 강화해 기금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단체나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의 성격을 띠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이 사업의 내용에서 성인지성을 담보하고,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젠더워크숍’은 2019년부터 시행한 바와 같이 ‘기초’와 ‘심화’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초 강좌에서는 젠더관점에 대한 이해, 젠더관점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금 사업의 내용에 젠더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

75) 인건비와 관련하여, 강사의 등급과 강사료 수준 역시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기초 강좌에는 신규 참여단체나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 서비스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사업의 내용에서 성인지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도록 견인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심화 강좌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새로운 성평등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논의하는 자리로 꾸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심화 과정에는 지속 참여단체들 중에서도, 앞서 제시한 단계별 목표에서 2~3단계에 해당하는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워크숍에서 ‘공모분야별 모임’은 현행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모분야별 모임 시간에 개별 사업들을 소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다른 단체의 활동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금 사업 참여 활동가들 사이의 연결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발생한 어려움을 단체 간에 서로 돕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의 질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공모분야별 모임을 중간점검 이 후에 1회 정도 추가하여, 중간점검에서 나온 사안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실무역량강화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보강해야 한다. 우선 세무 회계교육은 신규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실습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좀 더 상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업무처리는 세무회계법인에서 대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계업무처리를 단체에서 직접 할 수 밖에 없다면, 세무회계교육이 가장 필요한 신규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좀 더 상세한 교육을 진행해 업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홍보교육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나 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다른 단체들이 직접 활용한 홍보방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넷째, ‘사전 자문’을 좀 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전 자문은 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내용 및 회계, 사업의 성인지성 등에 대해 자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컨설팅의 형식 역시 서면이나 대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참여단체나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의 단체들의 경우에는 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실행되기 전에, 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대면 컨설팅을 거치도록 해 사업 내용의 충실성과 성인지성을 함께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때 컨설팅은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업의 성인지성을 담보하고 사업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주는 방식에 방점을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sup>76)</sup>

### 3) 기금 사업 홍보 협력 강화

기금 사업 홍보를 위해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홍보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의 홍보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금 사업을 홍보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과 그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위상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재단의 뉴스레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금 사업을 간편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뉴스레터인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나 재단의 뉴스레터인 ‘젠더레터’ 등에 기금 사업이나 행사를 알리는 내용이나 배너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뉴스레터에 들어갈 사업이나 행사는 성평등기금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재단 내 담당자가 참여단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월1회) 취합한 뒤 선별하여, 서울시와 재단의 뉴스레터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서울시나 재단의 홈페이지의 행사안내 게시판에 성평등기금 사업이나 행사를 소개하는 게시판을 추가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재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시민들은 성평등 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게시판을 활성화함으로써 기금의 개별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성평등기금으로 다양한

76) 이와 같이 교육과정과 사전 자료를 내실화하여 기금 사업의 성인지성과 확장성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을 총괄하는 재단의 인력이나 예산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기금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4. 평가 개선방안 및 우수사례 확산

현재 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시행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과정(50점)’과 ‘성과(50점)’로 나누어진다. 과정에 대한 평가는 ‘사업운영의 적절성(30점)’과 ‘예산관리의 적절성(20점)’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효과성(25점)’과 ‘사업 결과 기여도(25점)’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체계적인 평가 틀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 평가 개선방안

현재의 평가틀에서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단체 간 연대와 협업’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소규모 시민모임이나 단체 등과 협업이나 연대활동을 했을 경우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금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연결망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기금 사업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기금 사업에 여러 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기금 사업 경험이 없는 단체들에게 기금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운영 경험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둘째, 기금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의 내용과 사회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업수행 직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그 사업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의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으로 수용되거나, 대중적인 확산을 이루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금 사업이 단체의 역량강화에 미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는 단년도 평가보다는 중·장기적인 평가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 3년 마다 다년간 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기금 사업에 참여한 것이 단체와 담당자에게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 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금 사업이 단체의 조직역량 강화와 서울시의 성평등 실천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2) 우수사례 확산

질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한 기금의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현재 매년 사업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결과는 해당 단체에 먼저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내부용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차년도에 기금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워크숍에서 전년도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에게 기금의 우수사업이나 성과를 소개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기금 사업에 관심있는 여성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와 일반 시민들에게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성평등기금에 대한 관심과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들은 기금 지원 사업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수사례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단체의 활동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기금 사업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기금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기금 사업을 비롯한 여성단체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별 기금 사업에서 마련한 교육이나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수사례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앞서 개별 기금 사업의 홍보 개선 방안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뉴스레터나 홈페이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수사례의 내용과 성과는 일반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당내용

을 사례집의 형태로 만들어 공유하거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짧은 영상물로 구성해 트위터(Twitter)나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Youtube)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여성백서’ 등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수사례를 홍보할 때, 서울시의 성평등기금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함께 포함하여 기금에 대해 알리는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확산 과정을 통해, 시민들 사이에서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성과와 사회적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공선영 외 (2008), 『건국 60년 지방여성정책연구: 지역여성정책의 성과 및 전망』, 여성부.
- 공주 (2013), 「지속 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한 조직점점 연구보고서」, 『2013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수련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 김경희 (2005),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여성학』 21(2): 255-287.
- 김동춘·조현연·김정훈·김형철 (2013),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정책연구과제 연구보고서』,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 김성주 (2018), 『자치분권 강화시대,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서울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세미나.
- 김지옥·윤봉희 (1999), 『서울시 기금 관리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라이, 시린 M. (2014), 『젠더와 발전의 정치경제: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민족주의와 지구화』, 후마니타스.
- 마경희 (2010), 「성평등 전략으로서 성 주류화의 딜레마와 위험들」, 『국가와 젠더: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한울 아카데미.
- 문기현·송유정 (2018), 『2018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평가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 박재규·장정순 (2009),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배은경 (2016),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32(1), 1-45.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6),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 성향숙 (2014), 「부산여성발전기금 운용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여성학연구』 24(2): 7-40.
- 성향숙 (2016),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운용 분석: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354-364.

- 손희정 (2015), 「페미니즘 리부트」, 『문화과학』 83: 14-47.
- 안인숙 (2019), 『2019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평가 착수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 안태운·김람희 (2015),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사업 운영효율화 방안』,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부 (2009), 『2008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자료』
- 유정미 (2010), 「성 주류화와 젠더문제」, 『국가와 젠더: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한울 아카데미.
- 윤연숙·홍미리 (2017), 『인천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인천여성가족재단.
- 이봉화·김경아 (2006), 「여성발전기금의 평가도구 개발 및 지원단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3): 127-144.
- 이진옥 (2018), 「양/성평등 개념의 계보와 대안」,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 자료집 (2018.04.06.)』.
- 이혜경·도영선 (2011), 『2010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 『2018년 제7회 6·13 지방선거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핵심 젠더 정책: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 한국여성민우회 (1996), 『함께 가는 여성』, 1996년 1월호(통권 101호).
- 행정안전부 (2017),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2016년 회계연도)』.
- 홍미영·조한나 (2016), 『부산광역시 양성평등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신문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강창동 (2000.06.20.), 「서울시 예산 방만 운용. 시의회, 초과집행등 부적절 사례 40건 지적」, 『한국경제』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246100> (2019.07.08. 접속).
- 경수현 (2000.02.22.),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44개 사업 확정」, 『한국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229731> (2019.07.08. 접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기획재정부 (2019),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김민혜 (2012.08.06.), 「서울시, 하반기 ‘여성발전기금’ 추가지원한다」, 『은퇴한국』 <http://www.retir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3> (2019.07.25. 접속).
- 두산백과 (2019), 뉴미디어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33684](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33684) (접속일 2019.08.02.).
- 박정연 (2018.04.07.),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대립하는 개념일까: “보수세력의 ‘양성평등’은 기존 양성평등 개념 벗어난 차별과 혐오”」, 『프레스리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92099#09T0> (2019.07.08. 접속).
- 배장현 (2015.08.14), 「양성평등 조례안, 지자체 곳곳서 ‘몸살’」,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814220502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8142205025) (2019.07.08. 접속).
- 서울특별시 (2018),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2019a), 『세대균형 프로젝트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2019b),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 서울특별시 (2019c), 『2019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심사계획』.
- 서울특별시 (2019d), 『2019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및 작성요령』.
- 서울특별시 (2019e), 『2019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현황』.
- 서울특별시 공공구매 안내 <http://contract.seoul.go.kr/new1/ppviews/main.do> (2019.08.20. 접속).
-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8), 『20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계획』.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08. 12. 11.), 「서울시, 2009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

- 모」, 『뉴스와이어』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376304>  
(2019.07.25. 접속).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2. 01. 02.),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2배 이상 확대... 17억  
7천만 원 지원」 [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11375](http://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11375)  
(2019.07.25. 접속).
- 서울특별시 연도별 기금운영계획  
[http://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budget/data\\_budget/data\\_fund\\_b  
udget-n2](http://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budget/data_budget/data_fund_budget-n2) (2019.07.08. 접속).
- 서울특별시장 (1996.05.20.), 『서울시보』 (제1972호)  
[http://www2.seoul.go.kr/snews/data/CN\\_MST/1996-1972.pdf#page=20&view=&  
scrollbar=1&toolbar=1&statusbar=1&messages=1&navpanes=0](http://www2.seoul.go.kr/snews/data/CN_MST/1996-1972.pdf#page=20&view=&scrollbar=1&toolbar=1&statusbar=1&messages=1&navpanes=0) (2019.07.08.  
접속).
- 양준영 (1999.12.08.), 「여성발전기금 지원 공모: 서울시」,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1999120800151> (2019.07.08. 접속).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안내  
[http://www.mogef.go.kr/io/ind/io\\_ind\\_f037.do](http://www.mogef.go.kr/io/ind/io_ind_f037.do) (2019.8.21. 접속)
- 여성가족부 단체협력네트워크 공모사업 공지사항  
[https://wsp.mogef.go.kr:444/wngonet/home/ccb/notice/GCH\\_Notice.do](https://wsp.mogef.go.kr:444/wngonet/home/ccb/notice/GCH_Notice.do)  
(2019.8.21. 접속)
- 유하룡 (1997.06.25.), 「“지금 떠나는 것은 또다른 출발을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home/view/1997/06/37101>  
(2019.07.08. 접속).
- 임재희 (2016.07.07.), 「서울 자치구 ‘양성평등기금’ 천차만별...마포구 19억2900만  
원 ‘ 으뜸」,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0273683> (2019.07.25.  
접속).
- 임현선 (2005.05.13.), 「여성계 “여성발전기금 살리자”」,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00> (2019.07.08.  
접속).
- 이하나 (2016.06.22.), 「[양성평등기본법 1년] “남자 더 뽑으라” 강요가  
양성평등인가」,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111> (2019.07.08.

접속).

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1996.11.16.)

<https://council.jeonju.go.kr/CLRecords/MRetrieval2/index.php?hfile=05A0110130001.html&daesu=5> (2019.07.08. 접속).

한경심 (2011.03.01.), 「인물초대석: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월간중앙』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287491> (2019.07.08. 접속).

[성명서] 대한YWCA 연합회 외, ‘여성발전기금 존치를 위한 여성단체들의 입장’  
(2005.05.01.) <https://www.womengo.org:47875/Archive/729> (2019.06.10. 접속).

[성명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2015.08.13.).

[의견서] 대전여성단체연합 외,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 (2015.08.24.).

[의견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2015.09.04)  
<https://sogilaw.org/58> (2019.07.08. 접속).

## Abstract

# An Operational Assessment and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Gender Equality Fund of Seoul

KONG Ju and KANG Hee-Young

Researcher Fellow,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HOI Yoo-Jung

Researcher,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th the firstly elected mayor, established the Women's Development Fund (WDF) (6 billion won) based on 「Local Government Act」 in 1995. It was ahead of enacting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and establishing WDF by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The first WDF project was executed in 199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ramework Ordinance on Women's Development (SMGFOWD)」 was enacted in 1999, stipulated the provis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WDF.

Although the Fund projects have continued for over 20 years, and the title has changed from WDF to Gender Equality Fund (GEF) in 2006, any comprehensive operational assessment for the Fund projects has not been conducted yet. Therefore, we would like to analyse history and achievements of the projects, and propos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m in this research. Three major research methods are applied. First, we would like to review existing literature on the Fund projects, and describe the history from 1995 to date. Second, with in-depth interviews with 15 participants of the Fund projects, we try to identify achievements and insufficient features of the projects. Third, in-depth interviews with 13 experts on the Fund and gender equality policy are

also conducted in order to deriv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future of the Fund projects.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in 1996, the purpose of the Fund was “to support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welfare.” Later it has changed to “to efficiently facilitate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development” in 「SMGFOWD」. In the revised ordinan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ramework Ordinance on Gender Equality (SMGFOGE)」, the purpose has changed to “to efficiently facilitate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Seoul established ‘the GEF Management Council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reafter ‘the GEF council’) to discuss related issues to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Seoul raised over 10 billion won for WDF by 1999 in the first phase, and 20 billion won by 2007 in the second phase. Since 2007, the year-end funding has maintained more than 20 billion won, but the net amount has not increased. The total amount of annual funding for the Fund projects varies from year to year. It was 650 million won in 2000, but increased to 1.95 billion won in 2012. It has fallen again to 850 million won in 2013, and 950 million won (19 million won per group) in 2018.

There has been several important changes in regard to GEF. First, in 2012, the Ordinance was amended to set the expiration date of the fund. The date was once extended to 2022. Second, while Seoul directly operated the Fund projects in its early years, the operator has changed to a specialized institution, currently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later. Third, the competition field was divided into two fields: Free and designated subjects. Forth, since the title has changed from WDF to GEF in 2016, the themes of and the participants of the Fund projects have been more diversified accordingly.

The Fund projects are operated on clear institutional basis. Participating projects are determined through open competitive

selection process each year. The selection process is undertaken by the GEF Council. There is a set of criteria to select and evaluate projects. Also, an evaluation would be conducted after the expiration of each project. As a feedback process, the evaluation results partly affect the next selection.

According to the in-depth interviews, the achievements of the GEF projec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contributes to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n Seoul by supporting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activists. Second, it help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and to broaden boundaries of organization members and citizens participated in the projects. Third, it contributes to the spread of gender consciousness in society.

In addition, the strengths of the GEF project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a structural system where participants and government can collaborate, configuring gender governance, in the funding process. Second, the projects can be carried out while maintaining the planning and uniqueness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his feature helps to raise new and leading gender equality agendas. Third, access to small organizations is also guaranteed. Fourth, the average amount of funding is fairly adequate to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n order to maintain those achievements and to develop further, improvement strateg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und has to establish mid- to long-term plans and staged goals, by gathering opinions of experts and citizens. In order to help build new and leading gender equality agenda, taking intersectionality into account, new participating agents should be induced to the projects. Moreover, in accordance with the plan, designated subjects should be elaborated. We also propose to set up planning competition fields such as 'youth field', 'grassroots solidarity field' and 'together field', to induce new participants and to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eoul into the projec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o designate



excellent cases as mid- and long-term “specialized projects” and intensively nurture for them. In addition, several selection criteria need to be supplemented in order to encourage to strengthen gender awareness of, connection between selection and evaluation of, and staged evaluation of each project.

Second, we suggest to improve the existing subsidy management system to relieve administrative burdens of, and to strengthen budgetary autonomy of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hird, to help improve the capacity of them, it should be considered to pay minimum wage to one manager of each project, and to offer customized training courses as well as methods to promote programs from each project. Fourth, mid- and long-term evaluation for contents and social impact of each project needs to be established. After the evaluation, Seoul and the institution in charge should put more effort to spread ‘best practices’ by distributing best practices books in public and promoting them through social media.

Key words: Gender Equality Fund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omen’s Development Fund, Operational Assessment, Improvement Strategy



2019 정책연구-07

##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발행인 강정희  
연구자 공 주·강희영·최유정  
발행일 2019년 9월 30일  
인쇄처 (주)행복드림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ISBN 979-11-89763-52-7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www.seoulwomen.or.kr](http://www.seoulwomen.or.kr)

신고자의 신분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